

# 국역 영남 대구 읍사례

대구부사례(大邱府事例)

대구광역시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영남(嶺南) 대구(大邱) 읍사례(邑事例)

## 대구부사례(大邱府事例)

### 해제

이 책은 겉표지에는 『嶺南 大邱 邑事例』로, 속표지에는 『大邱府事例』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경상도 대구부의 읍사례이다. 1책 84장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 대구부의 재정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규정하여 각방(各房)과 각색(各色)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1871년에서 1873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향교(鄕校), 사액서원(賜額書院), 미사액원사(未賜額院祠), 사전(祀典), 봉대(烽臺), 역도(驛道), 방면호구총(坊面戶口總), 성첩(城堞), 결총(結總), 곡총(穀總), 군총(軍總), 향청(鄕廳), 군관청(軍官廳[每年應入上下矯球秩]), 포청(砲廳), 호장(戶長: 常定秩, 例下), 이방(吏房), 호방(戶房), 형방(刑房), 병방(兵房), 예방(禮房), 공방(工房), 공고(工庫), 장염고(場監考), 승발(承發), 대동색(大同色), 호적색(戶籍色), 부창색(府倉色), 어영색(御營色), 금위색(禁衛色), 포보색(砲保色), 속오색(束伍色), 아병색(牙兵色), 군기색(軍器色), 고마색(雇馬色), 관청(官廳)[보역물종(補易物種), 연례생어물(年例生魚物), 상정질(常定秩), 절가질(折價秩), 예하(例下)], 지소(紙所), 외지소(外紙所), 내지소(內紙所)[상정질(常定秩), 절가질(折價秩), 예하(例下)], 의생(醫生)[진상(進上), 절가질(折價秩), 절선소(節扇所)[竹價, 沙玉價, 染價, 式例, 匠手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부에서 고을의 각 관청별 재정 수입과 지출 현황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에 납입하는 재원의 현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대구부에 부임하는 부사 및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참고토록 하였다. 대구부에서는 고을의 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신임 부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대구부 읍사례를 통해 대구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 방법 및 중앙 정부에 납입하는 재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전세 및 군역의 상납과 진상을 하면서 지출경비를 충당했고, 환곡을 활용하고, 백성을 잡역에 동원하고, 이자를 불려 관청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선말기 지방 군현 소속 각 부서의 확대 분화와 색리들의 직능 변동 상황도 살필 수 있다. 조목과 내역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지방 관아의 수입, 지출 실태 및 세금 운영의 실상에 대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 향교(鄕校)

동상면(東上面) 용덕리(龍德里)에 있다.

## 5성위(聖位)<sup>1)</sup>

전내(殿內)에 종향(從享) 16위(位), 동·서무(東·西廡)에 종향(從享) 16위(位)  
교생(校生) 90인, 동몽(童蒙) 20인이 돌아가며 수번(守番, 당번).

## 사액서원(賜額書院)

원생(院生) 20명, 하전(下典) 10명.

## 연경서원(研經書院)

퇴계(退溪) 이선생(李先生) 황(滉), 한강(寒岡) 정선생(鄭先生) 구(逯), 우복(愚伏) 정선생(鄭先生) 경세(經世).

## 하묘(下廟)

계동(溪東) 전선생(全先生) 경창(慶昌), 매암(梅巖) 이선생(李先生) 숙량(叔樑)  
해서촌(解西村) 연경리(研經里)에 있다.

## 표충서원(表忠書院)

장절(壯節) 신공(申公) 숭겸(崇謙), 고려(高麗) 좌상(左相) 김공(金公) 락(樂), 승지(承旨) 신공(申公)  
길원(吉元)  
해서촌(解西村) 지묘리(智妙里)에 있다.

## 낙빈서원(洛濱書院)

박선생(朴先生) 팽년(彭年), 하선생(河先生) 위지(緯地), 류선생(柳先生) 성원(誠源), 성선생(成先生)  
삼문(三問), 이선생(李先生) 개(塏), 유선생(兪先生) 응부(應孚)  
하서면(河西面) 묘동(妙洞)에 있다.

## 미사액(未賜額) 원사(院祠)

원생(院生) 10인, 하전(下典) 5명.

기사년(1869)에 조령(朝令)으로 제물(祭物)을 정지하였고, 다시 예조(禮曹)의 관문(關文)과 읍의 장계(狀啓)에 따라 봉쇄하였고, 신미년(1871)에 조령(朝令)으로 훼손(毀撤)되었다.

## 이강서원(伊江書院)

낙재(樂齋) 서선생(徐先生) 사원(思遠)

---

1) 5성위(聖位) :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孔子) ·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 晏子) · 성국종성공(郕國宗聖公, 曾子) ·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 子思子) · 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 孟子)을 지칭하는 말.

하동면(河東面) 이천리(伊川里)에 있다. 예조(禮曹)의 관문(關文)으로 갑신년(1884)에 봉쇄되었다.

#### 구암서원(龜巖書院)

구계(龜溪) 서선생(徐先生) 침(沈), 사가(四佳) 서선생(徐先生) 거정(居正), 함재(涵齋) 서선생(徐先生) 해(嶮), 약봉(藥峯) 서선생(徐先生) 성(渚) 서상면(西上面) 남산리(南山里)에 있다. 읍의 장계(狀啓)에 따라 곧 봉쇄되었다.

#### 청호서원(靑湖書院)

모당(慕堂) 손선생(孫先生) 처눌(處訥), 격재(格齋) 손선생(孫先生) 조서(肇瑞), 사월당(沙月堂) 류선생(柳先生) 시번(時蕃), 양계(陽溪) 정선생(鄭先生) 호인(好仁) 수북면(守北面) 황청동(黃靑洞)에 있다.

#### 남강서원(南崗書院)

국담(菊潭) 박선생(朴先生) 수춘(壽春), 오졸재(迂拙齋) 박선생(朴先生) 한주(漢柱) 각북면(角北面) 남산리(南山里)에 있다.

#### 상덕사(尙德祠)

일휴당(逸休堂) 이상공(李相公) 숙(翮), 지수재(知守齋) 유상공(兪相公) 척기(拓基), 산수헌(山水軒) 김상공(金相公) 희순(羲淳), 금석재(金石齋) 이상공(李相公) 존수(存秀) 동상면(東上面) 용덕리(龍德里)에 있다. 읍의 장계(狀啓)에 따라 곧 봉쇄되었다.

#### 백원사(百源祠)

전귀당(全歸堂) 서선생(徐先生) 시립(時立) 해동촌(解東村) 도동(道洞)에 있다.

#### 덕동사(德洞祠)

양호당(養浩堂) 우선생(禹先生) 현보(玄寶), 월곡(月谷) 우선생(禹先生) 배선(拜善) 월배면(月背面) 상인리(上仁里)에 있다.

#### 유호사(柳湖祠)

괴헌(槐軒) 곽선생(郭先生) 재겸(再謙) 해서부(鮮西部) 현상리(縣上里)에 있다.

#### 녹동사(鹿洞祠)

모하당(慕夏堂) 김선생(金先生) 충선(忠善) 상수남(上守南) 우록리(友鹿里)에 있다.

#### 금암사(琴巖祠)

임하(林下) 정선생(鄭先生) 사철(師哲), 낙애(洛涯) 정선생(鄭先生) 광천(光天)  
하남면(河南面) 매곡리(梅谷里)에 있다.

#### 용강사(龍岡祠)

상무헌(尙武軒) 허선생(許先生) 득량(得良), 낙암(洛庵) 허선생(許先生) 복량(復良)  
성서면(城西面) 용산리(龍山里)에 있다. 예조(禮曹)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계유년(1873)에  
봉쇄되었다.

#### 오천사(梧川祠)

대봉(大峰) 양선생(楊先生) 희지(稀枝)  
상수서(上守西) 파잠리(巴岑里)에 있다.

#### 청백사(清白祠)

패편당(掛鞭堂) 이선생(李先生) 영(榮), 문절공(文節公) 정선생(鄭先生) 수충(守忠)을 추배(追配)하였다  
가 감영에서 봉쇄하였다.

해북촌(解北村) 백안리(百安里)에 있다.

#### 서산사(西山祠)

송담(松潭) 채선생(蔡先生) 응린(應麟), 다의당(多義堂) 채선생(蔡先生) 귀하(貴河), 양전헌(兩傳軒) 채  
선생(蔡先生) 선견(先見), 달서재(達西齋) 채선생(蔡先生) 선수(先修)

동중면(東中面) 검단리(檢丹里)에 있다.

#### 용호서원(龍湖書院)

양직(養直) 도선생(都先生) 성유(聖俞), 서재(鋤齋) 도선생(都先生) 여유(汝俞), 지암(止巖) 도선생(都先  
생) 신수(愼修)

하동면(河東面) 서재리(鋤齋里)에 있다.

#### 병암사(屏巖祠)

취애(翠厓) 도선생(都先生) 응유(應俞), 낙음(洛陰) 도선생(都先生) 경유(慶俞)

성서면(城西面) 용산리(龍山里)에 있다.

#### 서계사(西溪祠)

공도공(恭度公) 이선생(李先生) 문화(文和), 육휴당(六休堂) 이선생(李先生) 주(軸)

동하면(東下面) 무태리(無怠里)에 있다.

#### 평천사(平川祠)

한천(寒泉) 최선생(崔先生) 인(認), 무대(無台) 최선생(崔先生) 계(誠), 우락재(憂樂齋) 최선생(崔先生)  
동보(東輔)

해서촌(解西村) 지묘리(智妙里)에 있다.

### 옥계사(玉溪祠)

학암(鶴巖) 서선생(徐先生) 균형(均衡), 용계(龍溪) 서선생(徐先生) 변(朴)  
상수남(上守南) 원정리(元亭里)에 있다.

### 한천서원(寒泉書院)

고려(高麗) 태사(太師) 충렬공(忠烈公) 전선생(全先生) 이갑(以甲), 고려(高麗) 태사(太師) 충강공(忠康公) 전선생(全先生) 의갑(義甲)  
하수남(下守南) 행정리(杏亭里)에 있다. 고을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경술년에 봉쇄되었다.

### 봉산서원(鳳山書院)

문탄(聞灘) 손선생(孫先生) 인(隣)  
수현(守縣) 내상동(內上洞)에 있다. 고을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경술년에 봉쇄되었다.

### 계림사(桂林祠)

고운(孤雲) 최선생(崔先生) 치원(致遠)  
해서부(解西部) 지저(枝底)에 있다.

### 화암서원(華巖書院)

선정(禪亭) 백선생(白先生) 인관(仁寬)  
감물천(甘勿川) 건법(建法)에 있다.

### 인흥서원(仁興書院)

회암(晦巖) 추선생(秋先生) 황(篁), 노당(露堂) 추선생(秋先生) 적(適), 세심(洗心) 추선생(秋先生) 수경(水鏡), 운심당(雲心堂) 추선생(秋先生) 유(濡)  
인흥(仁興) 본리(本里)에 있다.

13개 서원(書院)의 제물(祭物)은 해당 서원(書院)에서 갖추어 공급하다가, 갑오년(1834)에 사또[使道] 서희순(徐喜淳, 1793~?)<sup>2)</sup>이 별비전(別備錢) 700냥(兩)을 전변소(錢邊所)에 주고 그 이자 140냥을 배분하고 봉쇄하였다. 무진년(1868)에 조령(朝令)에 따라 사액(賜額)되지 않은 서원은 모두 훼철(毀撤)되고 원생(院生)·하전(下典)들은 군오(軍伍)에 소속되었으며, 별비전(別備錢) 700냥은 신미년(1871) 10월에 감영(監營)에 납부(納付)하였다.

2) 서희순(徐喜淳)은 1833년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부임하였다.

## 사전(祠典)

### 사직단(社稷壇)

신실(神室) 1칸, 전사청(典祀廳) 1칸, 담장 75과(巴)

서중면(西中面) 평리(坪里)에 있다. 계유년에 조령(朝令)에 따라 중건(重建)하고 기와를 바꾸었다.

### 여제단(厲祭壇)

신실(神室) 1칸 반, 숙설소(熟設所) 1칸, 담장 48과(巴)

동중(東中) 침산리(砦山里)에 있다. 계유년에 조령(朝令)에 따라 중건(重建)하고 기와를 바꾸었다.

### 성황제(城隍祭)

담장 57과(巴)

계유년에 조령(朝令)에 따라 중건(重建)하고 기와를 바꾸었다.

## 봉대(烽臺)

### 법이산봉대(法伊山烽臺)

남쪽으로 청도(淸道) 팔조령봉수(八鳥嶺烽燧)와 응하고, 동쪽으로 경산(慶山) 성산봉수(城山烽燧)와 응한다. 수동면(守東面)에 있다.

### 성산봉대(城山烽臺)

서쪽으로 성주(星州) 말릉(抹陵) 덕산봉수(德山烽燧)와 응하고, 북쪽으로 마천산봉수(馬川山烽燧)와 응한다. 화현(花縣) 내면(內面)에 있다.

### 마천산봉대(馬川山烽臺)

남쪽으로 본읍(本邑) 성산봉수(城山烽燧)와 응하고, 서쪽으로 성주(星州) 각산봉수(角山烽燧)와 응한다. 하남면(河南面)에 있다.

## 역도(驛道)

### 범어역(凡於驛)

대마(大馬) 1필(匹), 중마(中馬) 2필(匹), 소마(小馬) 10필(匹). 위토(位土) 66결(結) 95부(負) 4속(束), 복호(復戶)<sup>3)</sup> 127결(結) 15부(負) 6속(束). 수북면(守北面)에 있다.

### 설화역(舌化驛)

대마(大馬) 1필(匹), 중마(中馬) 2필(匹), 소마(小馬) 10필(匹). 위토(位土) 79결(結) 42부(負) 3속(束), 복호(復戶) 185결(結) 14부(負) 3속(束). 화현(花縣) 내면(內面)에 있다.

3) 복호(復戶):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 금천역(琴川驛)

중마(中馬) 2필(匹), 소마(小馬) 6필(匹). 위토(位土) 55결(結) 12부(負) 8속(束). 복호(復戶) 81결(結) 83부(負) 2속(束). 하북면(河北面)에 있다.

### 유천역(幽川驛)

중마(中馬) 2필(匹), 소마(小馬) 8필(匹). 위토(位土) 43결(結) 23부(部) 8속(束). 복호(復戶) 53결(結) 29부(負). 각현(角縣) 내면(內面)에 있다.

## 방면(坊面) 호구(戶口) 총수(總數)

### 동상면(東上面)

읍저(邑底). 소속된 동(洞) 12동(洞), 성내(城內) 5동(洞), 성외(城外) 7동(洞). 인호(人戶) 1,342호(戶). 인구(人口) 4,294구(口).

### 동중면(東中面)

북쪽으로 1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5동(洞). 인호(人戶) 298호. 인구(人口) 1,729구.

### 동하면(東下面)

북쪽으로 2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4동(洞). 인호(人戶) 314호. 인구(人口) 2,222구.

### 해서촌(解西村)

북쪽으로 3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1동(洞). 인호(人戶) 395호. 인구(人口) 1,980구

### 해북촌(解北村)

북쪽으로 4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5동(洞). 인호(人戶) 473호. 인구(人口) 2,942구.

### 해서부(解西部)

북쪽으로 2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1동(洞). 인호(人戶) 436호. 인구(人口) 2,255구.

### 해동촌(解東村)

동쪽으로 2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3동(洞). 인호(人戶) 380호. 인구(人口) 1,990구.



#### 수북면(守北面)

동쪽으로 1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7동(洞). 인호(人戶) 408호, 인구(人口) 1,664구.

#### 수동면(守東面)

동쪽으로 2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7동(洞). 인호(人戶) 295호. 인구(人口) 1,258구.

#### 수현내(守縣內)

동쪽으로 1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0동(洞). 인호(人戶) 373호. 인구(人口) 1,008구.

#### 하수남(下守南)

남쪽으로 4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0(洞). 인호(人戶) 373호. 인구(人口) 1,645구.

#### 상수남(上守南)

남쪽으로 4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7동(洞). 인호(人戶) 277호. 인구(人口) 1,239구.

#### 상수서(上守西)

남쪽으로 3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6동(洞). 인호(人戶) 222호. 인구(人口) 899구.

#### 하수서(下守西)

남쪽으로 1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4동(洞). 인호(人戶) 150호. 인구(人口) 807구.

#### 서상면(西上面)

읍저(邑底) 소속된 동(洞) 11동(洞), 성내(城內) 4동(洞), 성외(城外) 7동(洞). 인호(人戶) 1,781호, 인구(人口) 8,195구.

#### 서중면(西中面)

서쪽으로 1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6동(洞). 인호(人戶) 251호. 인구(人口) 1,619구.

#### 달서면(達西面)

서쪽으로 1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8동(洞). 인호(人戶) 296호. 인구(人口) 1,556구.

#### 성서면(城西面)

서쪽으로 2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4동(洞). 인호(人戶) 325호. 인구(人口) 1,445구.

#### 하동면(河東面)

서쪽으로 3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6동(洞). 인호(人戶) 277호. 인구(人口) 1,137구.

#### 하북면(河北面)

서쪽으로 3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7동(洞). 인호(人戶) 329호. 인구(人口) 1,649구.

#### 하서면(河西面)

서쪽으로 4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0동(洞). 인호(人戶) 288호. 인구(人口) 1,744구.

#### 하남면(河南面)

서쪽으로 3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7동(洞). 인호(人戶) 249호. 인구(人口) 1,209구.

#### 감물천(甘勿川)

서쪽으로 2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6동(洞). 인호(人戶) 289호. 인구(人口) 1,351구.

#### 조암면(租巖面)

서쪽으로 2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2동(洞). 인호(人戶) 217호. 인구(人口) 887구.

#### 월배면(月背面)

남쪽으로 2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7동(洞). 인호(人戶) 214호. 인구(人口) 1,341구.

#### 인흥면(仁興面)

남쪽으로 3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5동(洞). 인호(人戶) 192호. 인구(人口) 779구.

#### 화현내(花縣內)

남쪽으로 3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8동(洞). 인호(人戶) 539호. 인구(人口) 1,968구.

#### 옥포면(玉浦面)

남쪽으로 3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4동(洞). 인호(人戶) 209호. 인구(人口) 872구.

구.

### 법화면(法化面)

남쪽으로 4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5동(洞). 인호(人戶) 301호. 인구(人口) 1,020구.

### 성평곡(省平谷)

남쪽으로 4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5동(洞). 인호(人戶) 246호. 인구(人口) 862구.

### 각북면(角北面)

남쪽으로 6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6동(洞). 인호(人戶) 520호. 인구(人口) 2,393구.

### 각현내(角縣內)

남쪽으로 7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8동(洞). 인호(人戶) 313호. 인구(人口) 1,541구.

### 각이동(角二洞)

남쪽으로 8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2동(洞). 인호(人戶) 467호. 인구(人口) 1,637구(口).<sup>4)</sup>

### 각초동(角初洞)

남쪽으로 80리(里) 떨어져 있다. 소속된 동(洞) 12동(洞). 인호(人戶) 390호. 인구(人口) 1,430구(口).<sup>5)</sup>

이상 방면(坊面)<sup>6)</sup> 34면(面) 소속된 동(洞) 263동(洞). 인호(人戶) 13,499호(戶). 승호(僧戶) 264호(戶). 인구(人口) 60,467구(口) 남자 25,812구(口), 여자 34,655구(口).

## 성첩(城堞)

성첩(城堞) 둘레[周回] 2,122보(步), 높이 10척(尺), 성가퀴[女堞] 955보(堡).

사문(四門)의 문루(門樓)는 병진년(1736)에 관찰사(觀察使) 민응수(閔應洙, 1684~1750)가 재임 중에 세웠다.

표루(標樓) 네 곳과 포막(砲幕) 여덟 곳은 경오년(1870)에 관찰사(觀察使) 김세호(金世鎬, 1806~1884)가 재임 중에 창건하였다.

## 결총(結摠: 田畝의 총면적)

원전답(原田畝) 10,978결(結) 53부(負) 1속(束).

4) 구(口) : 원문(原文)에는 ‘호(戶)’로 기록되었으나 ‘구(口)’로 바로 잡는다.

5) 구(口) : 원문(原文)에는 ‘호(戶)’로 기록되었으나 ‘구(口)’로 바로 잡는다.

6) 방면(坊面) : 원문(原文)의 ‘방면(防面)’을 ‘방면(坊面)’으로 바로 잡는다.

구잡탈(舊雜頭)<sup>7)</sup> 3,718결(結) 22부(負) 6속(束).

실재(實在) 7,262결(結) 30부(負) 5속(束)에 각양 위결(位結) 135결(結), 아록(衙祿) 90결(結), 학위(學位) 10결(結), 관공수위(官公須位) 15결(結), 역공수위(驛公須位)<sup>8)</sup> 20결(結), 경오년 사득결(查得結)<sup>9)</sup> 329결(結) 2부(負) 5속(束)을 더함.

합(合) 7,726결(結) 32부(負) 5속(束)에서 55결(結) 27부(負) 3속(束)이 금번 모래로 덮여 실재(實在) 7,671결(結) 5부(負) 2속(束), 이 원작부(原作夫)<sup>10)</sup>에 30결(結)의 학위(學位) · 공수위(公須位) 전답(田畓) 항목을 제외한 실재(實在) 7,641결(結) 5부(負) 2속(束), 이 전세부(田稅夫)에 학위 · 공수위로 내는 30결(結)을 더함.

합(合) 7,671결(結) 5부(負) 2속(束)에서 582결(結) 21부(負) 3속(束)은 각양(各樣) 복호(復戶) 면부(免賦: 免稅)로서 제외.

실재(實在) 7,088결(結) 83부(負) 9속(束)에다 대동부(大同夫) 582결(結) 21부(負) 3속(束)의 각양(各樣) 복호(復戶), 수어둔(守禦屯) 30결(結) 29복(卜) 2속(束), 이복호(吏卜戶) 100결, 사문역복(沙門驛復) 447결(結) 42복(卜) 1속(束), ■■<sup>11)</sup> 1결(結), 금호(琴湖) 1결(結), 288결(結) 96부(負) 7속(束)의 각위둔(各位屯), 곧 수진궁(壽進宮) 89부(負) 1속(束), 역마위(驛馬位) 239결(結) 74복(卜) 3속(束), 영관둔(營官屯) 48결(結) 32부(負) 6속(束)을 더함.

합결(合結) 7,960결(結) 1(負) 9속(束).

### 곡물 총량[穀摠]

원미(原米) 2,412석(石) 3두(斗) 2도(刀)<sup>12)</sup> 5홉[합] 4사[夕]<sup>13)</sup>.

사환미(社還米) 5,243석(石) 3두(斗).

콩 104석(石) 2두(斗) 8도(刀).

벼 32,288석(石) 1두(斗) 1도(刀) 7홉[합] 8사[夕].

겉보리 1,884석(石) 8두(斗) 8도(刀) 9홉[합] 7사[夕].

### 군사 총수[軍摠]

상번군(上番軍) 227명: 어영(禦營) 91명, 복마(卜馬) 8필(匹). 금위(禁衛) 136명, 복마(卜馬) 13필(匹).

상납군보(上納軍保) 1,550명: 어영 613명, 금위 644명, 포보(砲保) 293명.

하납군보(下納軍保) 3,589명: 수군(水軍) 2,599명, 무학(武學) 751명<sup>14)</sup>, 하납보병(下納步兵) 239명.

7) 구잡탈(舊雜頭): 묵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면세된 전답.

8) 역공수위(驛公須位): 조선시대 지방 각 역(驛)에 떼어준 공수전(公須田).

9) 사득결(查得結): 조사해서 파악한 전답의 결수.

10) 원작부(原作夫): 작부(作夫). 8결(結)을 1부(夫)로 삼고 그 전부(佃夫)들 중에서 한 사람을 호수(戶首)로 삼아 여러 전부로부터 결세를 거두어서 관에 바치게 한 제도로 영조 20년(1744)에 법조문으로 반포하였음. 《續大典》

11) 복호(復戶)의 명세(明細)가 누락되어 있음.

12) 도(刀): 고려시대에 사용하던 무게단위였으나 여기서는 되[升]로 쓰였다.

13) 사[夕]: 용량 측정의 단위로 홉[合]의 1/10. 작(勺)과 통용.

14) 751명(名): 원문(原文)에 ‘七十五十一名’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 잡는다.

순영납군(巡營納軍) 364명: 아병보(牙兵保) 259명, 각색군(各色軍) 105명.  
중영납군(中營納軍) 101명: 수솔(隨率) 8명, 마정(馬丁) 18명, 수미군(需米軍) 75명에서 1명이 병오년에 물에 빠져 죽었으므로 장계(狀啓)를 올린 후에 수를 줄임.  
유황군(硫磺軍) 50명: 좌수영(左水營)에 23명, 통영(統營)에 2명, 부(府)에 25명.  
발군(撥軍) 90명.  
봉군(烽軍) 300명.  
속오군(束伍軍) 1,203명(名): 마군(馬軍) 195명, 보군(步軍) 967명, 수솔(隨率) 40명, 복마군(卜馬軍) 35명.  
각군자보(各軍資保) 1,687명: 어영(御營) 99명, 금위(禁衛) 149명, 속오(束伍) 1,439명.  
각군(各軍) 합(合) 9,161명: 1명(名) 병오년에 감원(減員).  
납포군관(納布軍官) 896인: 선무(選武) 567인에서 원액(元額) 291인, 수첩(守楨) 329인.  
가향소(假鄉所) 80인.  
충순위(忠順衛) · 충찬위(忠贊衛) · 유청군(有廳軍): 213명에서 여군(餘軍) 20명.  
부잡속군보(府雜屬軍保): 인리보(人吏保), 소동보(小童保), 사령보(使令保)의 매인(每人) 2명(名)과 가소동보(假小童保) 20명(名)은 안전(案前)<sup>15)</sup> 정시용(鄭時容)이 재임 중에 사정(查正)할 때 함께 허물어 버리고 군보(軍保)에 편입.  
취수보(吹手保) · 조창보(調唱保) · 책장보(冊匠保)는 원군(元軍)을 각 2명씩,  
군뢰보(軍牢保)는 원군(元軍)을 각 2명씩 혁파(革罷).  
채약군(採藥軍) 50명.  
간망군(看望軍) 58명.  
교군(轎軍) 15명.

### 향청(鄉廳)

좌수(座首) 1원(員).  
별감(別監) 3원(員).  
소소동(所小童)  
소사령(所使令)  
소리(所吏)  
둔전답(屯田畝) 131마지기[斗落只] 밭 76마지기, 논 55마지기.  
야장(冶匠) 7명(名). 매달 마철(馬鐵) 1부(部)를 1년간 거둬.  
무녀(巫女) 4명(名). 매명(每名) 세(稅) 3냥[兩] 5전(錢)을 해마다 거둬.  
초석(草席) 25일[立]을 소속된 제보(堤洑) 각처(各處)에서 봄가을로 나누어 청방(廳房)에 포진(鋪陳)함.  
가향소(假鄉所)<sup>16)</sup> : 80인(人). 상번군(上番軍)이 데리고 갈 때, 별성(別星)<sup>17)</sup>이 행차

15) 안전(案前) : 하리(下吏)가 상관(上官)을 존칭(尊稱)하는 2인칭 대명사. 여기서는 대구부사를 가리킴.

16) 가향소(假鄉所) : 향소(鄉所)의 소임(所任)들이 영문(營門)에서 향소를 추론(推論)하여 죄주자, 이를 수치스러워하여 부유한 백성들을 뽑아 임시로 만든 것.

17) 별성(別星) : 봉명사신(奉命使臣)의 별칭(別稱).

(行次)할 때 출참(出站)<sup>18)</sup>의 절차를 함께 가향소(假鄕所)에서 대행(代行)함. 청기마(廳騎馬) 2필(匹)은 폐사(廢死)하는 대로 다시 마련함.

### 군관청(軍官廳)

행수군관(行首軍官) 1원(員).

병방군관(兵房軍官) 2원(員).

장무군관(掌務軍官) 2원(員).

군기감관(軍器監官) 1원(員).

출사군관(出使軍官) 150인(人) 등은 신역(身役)을 담당함.

선무군관(選武軍官) 691인(人). 매명(每名) 번포대(番布代) 2냥과 후전(後錢)<sup>19)</sup> 3전(錢)씩 가을에 거둬.

291인(人)의 원액(元額) 상납(上納) 가운데, 38인(人)이 해마다 상탈(喪頤)<sup>20)</sup>되어 253인의 506냥을 순영(巡營)의 구획(區劃)에 따라 상납(上納)하거나 하납(下納)함. 상납은 짐값[駄價] 내에서 제하고 하납(下納)은 짐값[駄價]이 없음. 실재(實在) 400인의 포전(布錢) 800냥을 관청에 납부하였으나, 부사 박봉하(朴鳳夏)가 임기 중에 궤액(闕額)을 바치기 어렵다고 여겨 250냥을 특별히 감액(減額)하였지만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다고 근심하였다. 부사 송태진(宋泰鎭)이 임기 중에 원생(院生) 충원을 그만 둔 후에 567인(人)을 그대로 원액(元額)으로 정하게 되자, 신미년 호포(戶布) 후에 예전 액수를 복구하였다. 추가 절목(節目)에 자세히 보인다.

수첩군관(守堞軍官) 1,000인. 계해년에 부사 박수형(朴壽亨)의 임기 중에 정액(定額)이 150인이었는데, 경진년에 부사 정시용(鄭是容)의 임기 중에 1,250인으로 더해지고, 100인은 기해년에 부사 정시용(鄭始容)의 임기 중 사정(査定)할 때 군보(軍保)로 태정(汰定)<sup>21)</sup>하여, 실재(實在) 1,050인으로 매명(每名) 번포(番布)<sup>22)</sup> 비용 2냥 3전씩을 봄가을로 나누어 거두고 후전(後錢)은 선무(選武)의 예(例)에 따랐다.

24냥 백총장(百總將) 10인, 동서훈장(東西訓將) 2인에게 감포(減布).

108냥 서문(西門) 및 동서암문수문장(東西暗門守門將) 3인 삭료(朔料)로 매달 3냥씩.

288냥 식료군관(食料軍官) 4원(員) 삭료(朔料)로 매달 6냥씩 지급.

20냥 네 향소(鄕所) 및 유리(由吏)<sup>23)</sup>의 옷값으로 각각 4냥씩 봄가을로 나누어 줌.

300냥 절선소(節扇所) 무역본가(貿易本價)로 경진년에 추가로 정함, 병술년에 감액(減額).

돈 1,360냥 : 매달 113냥 3전 3푼씩 관청에 납부하다가, 점점 허액(虛額)이 생겨

18) 출참(出站) : 사신이나 감사를 영접할 때 전곡(錢穀)과 역마(驛馬)를 제공하기 위해 숙박하는 가까운 역(驛)에서 인부를 보내는 것.

19) 후전(後錢) : 군포 등을 납부할 때 정리로 더 내던 돈.

20) 상탈(喪頤) : 상을 당해 세금이 면제됨.

21) 태정(汰定) : 시가에 떨어진 선비를 도태시켜 군사에 소속시키는 것.

22) 번포(番布) : 군정(軍丁)이 번(番)을 서는 대신으로 바치는 베.

23) 유리(由吏) : 각 고을의 이방 아전.

해당 관리가 백징(白徵)<sup>24</sup>하기에 이르자, 부사 박봉하(朴鳳夏)가 임기 중에 150냥을 특별히 줄이고, 부사 송태진(宋泰鎭)이 임기 중에 그 허명(虛名)을 면제해주고 시존(時存, 현재)만을 취하여 329인을 원액(元額)으로 영구히 정했다가, 신미년 호포(戶布) 후에 곧 구례(舊例)로 복구하였음.

화병(火兵) 30명. 매명(每名) 1냥씩 봄가을로 나누어 받음. 군관(軍官) 출사시(出使時)에 마정(馬丁) 및 수솔(隨率)에게 부과하였음.

## 매년 응입(應入) 차하(上下)<sup>25</sup> 교정 항목[矯掇秩]

돈 755냥 수포전(收布錢) 중에서 가져와서 봄가을로 나눔.

30냥 화병번진(火兵番錢)<sup>26</sup>에서 가져옴.

70냥 무학번진(武學番錢)에서 가져옴.

100냥 지전세(紙錢稅)에서 가져와서 봄가을로 나눔.

50냥 자장전(資裝錢)에서 가져와서 봄에 나눔.

60냥 전변색(錢邊色) 200냥의 불어난 이자(利子)에서 가져옴. 140냥은 전변색(錢邊色)의 불어난 이자, 60냥은 형리(刑吏)의 불어난 이자.

10냥 토포장(討捕將) 교구(矯掇)<sup>27</sup> 어전세(魚塵稅) 중에서 가져옴. 160냥 중에 150냥은 토포장(討捕將) 4인의 삭료(朔料, 봉급)로 떼어줌.

306냥 전변색(錢邊色) 1,020냥의 불어난 아자에서 가져옴. 계유년 부사 임철수(林徹洙)가 임기 중에 결잉전(結剩錢)<sup>28</sup>에서 교구(矯掇)함.

합전(合錢) 1,381냥.

69냥 서문(西門) · 동서 암문(東西暗門)의 문장료(門將料)로 봄가을로 나눔.

50냥 염본가(染本價)의 관납(官納)으로 봄에 부과.

120냥 지소색(紙所色)에게 배삭(排朔)<sup>29</sup>하되, 봄가을로 나눔.

20냥 4향소(鄉所) · 유리(由吏, 吏房)의 옷값으로 봄가을로 나눔.

84냥 수교(首校)의 요포(料布)<sup>30</sup>로 매달 7냥씩 지급.

360냥 병교(兵校) 2원(員), 장무군관(掌務軍官) 2원(員), 군기감관(軍器監官) 1원(員)의 요포(料布) 매달 6냥씩.

72냥 집사(執事) 2원(員) 요포(料布)로 매달 3냥.

48냥 수교(首校) 1원(員)의 요미(料米)로 4석(石) 12두, 매달 6두.

36냥 수교(首校) 찬가(饌價)로 매달 3냥.

24) 백징(白徵) : 조세(租稅)가 면제된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

25) 차하[上下] : 관아(官衙)에서 돈이나 물품(物品)을 내어 주는 일.

26) 번진(番錢) : 번을 서는 대신에 군정(軍丁)들이 바치던 돈.

27) 교구(矯掇) :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

28) 결잉전(結剩錢) : 결잉(각종 명목으로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어들인 結米 가운데 중앙으로 실어 가고 남은 쌀)에 대한 돈.

29) 배삭(排朔) : 한 달에 얼마씩 여러 달에 걸쳐 나눔.

30) 요포(料布) : 관리들에게 급료로 주는 베.

- 72냥 입직군관(入直軍官) 2원(員)의 찬가(饌價).
- 30냥 장청(將廳) 고지기[庫子]의 첨보(添補).
- 47냥 3전 집사(執事) 요미로 4석(石) 12두의 대금(代金).
- 5냥 7전 집사(執事)의 6개월 점심료미(點心料米) 9두 대금.
- 36냥 집사(執事)의 찬가(饌價).
- 12냥 장청(將廳)의 매달 지필묵가(紙筆墨價).
- 30냥 선무(選武)의 개장일(開場日)에 예하(例下).
- 13냥 출사(出使)할 때 군관(軍官)의 첨보(添補).
- 20냥 장청(將廳) 아기수(兒旗手)에게 예하(例下).
- 25냥 형구전(刑具錢)으로 봄가을로 나눔.
- 25냥 과녁[貫革] 본가(本價).

합하전(合下錢) 1,381냥의 절목(節目)을 2건의 첩(帖)으로 작성하여 이교청(吏校廳)에 나누어 비치함.

고취수(鼓吹手) 10명. 신미년에 홍순형(洪淳迥)이 재임할 때 신설하여 돈 200냥을 관청에서 변통하여 전변(錢邊)<sup>31)</sup>에다 부치고 3할의 이자 60냥 중 12냥은 행수군관(行首軍官)의 요포(料布)에 첨보(添補)하고, 돈 48냥은 매달 4냥씩 요포(料布)로 마련.

### 포청(砲廳)

- 포장(砲將) 2원(員).
- 포수(砲手) 30명(名).

### 요포(料布) 마련(磨鍊)

- 돈 207냥 3전 선무(選武) 691인(人)의 후전(後錢)에서 마련.
- 60냥 금전세(錦塵稅) · 100냥 저전세(苧塵稅)에서 봄가을로 나눔.
- 30냥 죽물전세(竹物塵稅)에서 마련. 20냥은 봄, 10냥은 가을
- 2,100냥 각면(各面) 백골교구전(白骨矯球錢)<sup>32)</sup> 이자에서 8월(月) 일(日)에 마련.
- 46냥 2전 범어동(泛魚洞) 백골교구전(白骨矯球錢)으로 전변색(錢邊色)<sup>33)</sup>이 불린 이자에서 마련.
- 150냥 계유년에 부사 임철수(林徹洙)가 임기 중에 돈 500냥을 관청에서 변통하여 전변(錢邊, 이자)에 부치고 3할의 이자에서 마련하여 삭사(朔射:朔日 활쏘기)할 때 반상(頒賞)에 보충 사용[補用].
- 144냥 우전세(牛塵稅)에서 마련, 계유년에 부사 임철수(林徹洙)가 임기 중에 신설한 것으로, 1년세(年稅) 172냥을 포청(砲廳)에 주고 그 중 144냥을 삭포(朔砲:삭일

---

31) 전변(錢邊) : 빚을 놓아 받는 돈의 변리[邊利: 이자].  
 32) 백골교구전:白骨微布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해둔 돈.  
 33) 전변색(錢邊色) : 변리 불리기를 담당하는 아전.



포쏘기에 상을 줄 때 보충 사용.

합전(合錢) 2,837냥 5전.

100냥 포장(砲將)의 요포(料布)로 매달 5냥씩 지급.

30냥 포장(砲將)의 직소(直所: 당직하는 곳)의 시유가(柴油價)로 봄가을로 나눔.

6냥 포장(砲將)의 매달 지필묵(紙筆墨)의 값.

1,800냥 포수(砲手) 30명(名) 요포(料布)로 매달 5냥씩 지급, 약환가(藥丸價) 1냥과 함께 지급.

120냥 포수(砲手) 30명(名)의 옷값으로 매명(每名) 4냥씩.

30냥 포수직소(砲手直所)의 시유가(柴油價)로 봄가을로 나눔.

276냥 삭포(朔砲)할 때 상으로 줌.

294냥 이교작대(吏校作隊)<sup>34</sup>에게 상을 줄 때 매달 24냥 5전씩.

30냥 포청(砲廳) 고지기[庫子] 요포(料布)로 봄가을로 나눔.

돈 131냥 5전: 2년치를 합하여 윤삭년(閏朔: 윤년)에 쓰고 용하(用下, 비용)를 성첩(成貼)하여 후일에 살피도록 함.

### 매삭(每朔) 사포(射砲)의 입격(入格) · 반상(頒賞)의 구별(區別)

이교작대(吏校作隊)

1등(等) 1인, 돈 4냥.

2등(等) 1인, 돈 3냥.

3등(等) 8인, 돈 16냥.

차비도중(差備都中) 돈 1냥.

서기(書記) 돈 5전.

포수(砲手)

1등(等) 1인, 돈 4냥.

2등(等) 1인, 돈 3냥.

3등(等) 8인, 돈 16냥.

### 장청(將廳) 교구(矯擧)

수성창검(守城鎗劍) 568자루[柄].

대소기(大小旗) 86면(面).

영기(領旗) 3쌍(雙).

소고(小鼓) 8좌(坐)

---

34) 이교작대(吏校作隊): 아전과 장교의 무리들.

## 쟁(錚) 3좌(坐)

장막(帳幕) 5부(浮)

재동(齋洞)의 부사 김로(金魯)가 임기 중에 별도로 갖춘 것에 돈 200냥을 출연(出捐)한 후 이자를 불리고 훼손되면 수보(修補)하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였음. 신축년에 방채(防債)한 후에 해마다 바치는 것의 1할을 내어주고 공해(公廩)의 수리(修理)와 기계(器械)의 수보(修補)는 수첩번전(守堞番錢)<sup>35)</sup> 중에서 가져옴.

## 호장(戶長)

관노(官奴) 기생(妓生) 수급비(水汲婢)

관둔전답(官屯田畓) 29결(結) 40부(負) 9속(束). 밭 21결(結) 14복(卜) 9속(束), 논 8결(結) 26부(負).

3결(結) 81복(卜) 6속(束) 진잡탈(陳雜畓), 집터.

5결(結) 23부(負) 9속(束) 집터와 밭. 2결(結) 76부(負) 1속(束)은 동면(東面)과 서면(西面) 몫으로 신유년부터 탕감(蕩減). 2결(結) 47부(負) 8속(束)은 매원(每員) 1전씩 거두어 관청(官廳)·지소(紙所)의 증유고가(汁油雇價)<sup>36)</sup>로 내어줌.

1결(結) 35부(負) 3속(束) 하수서(下守西)의 관기전(官基田). 매원(每員) 1전씩 거두어 관청(官廳)으로 이송(移送).

12부(負) 5속(束) 고마(雇馬)<sup>37)</sup> 둔답(屯畓) 3마지기.

41부(負) 6속(束) 악공(樂工)에게 떼어준 논 9마지기.

2결(結) 75부(負) 5속(束) 원도한(園徒漢)에게 쪼개준 밭 89마지기 논 40마지기,

93부(負) 6속(束) 염비(染婢)에게 쪼개준 밭 17마지기, 논 7마지기.

실전답(實田畓) 14결(結) 76부(負) 9속(束). 밭 506두 4되지기[刀落只], 답 156마지기. 신해년 둔안(屯案) 총수.

대전(垞田) 35마지기. 세전(稅錢)으로 4냥 2전 2푼을 거둠. 매원(每員) 1전씩 관청(官廳)·지소(紙所)의 증유고가(汁油雇價)로 내어줌.

둔감고(屯監考) 나누어준 밭[割給] 4마지기.

교장직(教場直) 나누어준 밭 14마지기.

울전직(栗田直) 나누어준 밭 8 마지기. 울전(栗田)을 폐기한 후 병신년에 부사 조석현(曹錫玄)이 임기 중에 헐값으로 팔아 해창(解倉)의 수리(修理)에 보탬[添補].

신해년 이후 잡탈(雜畓)<sup>38)</sup> 396두(斗) 4되지기. 밭 249두(斗) 9되지기, 논 109두(斗) 5되지기.

둔전(屯田) 205마지기[斗落]. 밭 95두(斗) 5되지기, 논 109두(斗) 5되지기. 곡식을 과중하고 결실을 자세히 살핀 뒤에 목화(木花)를 공고(工庫)에 바치고, 모조(牟租, 토종벼)

35) 수첩번전: 성을 지키는 當番에게 드는 돈.

36) 증유고가(汁油雇價) : 기름 짜는 값.

37) 고마 : 고을 관아에서 민간으로부터 징발하던 말.

38) 잡탈 : 여러 가지 탈이 생긴 전답.

는 관청(官廳)에서 올렸는데, 해마다 각각 같지 않음. 목화(木花)는 기해년부터 받아 폐기된 뒤로 결실하지 못하였음.

소목(燒木)<sup>39)</sup> 이전에는 매부(每夫) 9단(丹)<sup>40)</sup>씩 삼등(三等)으로 나누어 바쳤으나, 그중 200부(夫)에 한정하여, 매부(每夫) 시고초(柴藁草)의 감급대(減給代)로 4냥씩을 거두어 진상(進上)의 첨가(添價) 및 각양(各樣) 응용(應用)의 바탕으로 삼았음, 임진년 임기 중에 돈 3,662냥 1전을 출연(出捐)하여, 800냥은 당년의 복호(復戶) 200부(夫)의 값으로 방급(防給)하고, 45냥 1전은 각방(各房) 소목(燒木)의 대금으로 지급하였음.

돈 2,817냥은 3할의 이자를 취하여 연례(年例)로 방급(防給)하였는데, 신축년에 방채(放債)<sup>41)</sup> 후 해마다 바치는 것[歲捧]의 1할을 방역전(防役錢) 이자로 옹기고 같은 이자돈 845냥 1전을 전례대로 지급하였음. 이 해부터 임진년 뒤로는 매부(每夫) 나무 6단씩만 봄가을로 나누어 바쳤으며, 각사면(角四面)은 이로부터 감영에 납부하였으므로 매년 탄시대(炭柴代) 4냥씩을 부수(夫數)에 따라 마련하여 봄가을로 나누어 보전고(補棧庫)로 이송(移送)하였음. 경오년에 정승(政丞) 대감(大監) 정만석(鄭晩錫)이 임기 중에 돈 2,000냥을 출연(出捐)하여 각면(各面)에 나누어 주고, 그 3할의 이자돈 600냥을 가을 소목(燒木) 중 줄인 수량(數量)에 따라 일체를 방급(防給)하였음. 신사년에 부사 이장현(李章顯)이 임기 중에 또 돈 465냥을 출연(出捐)하여 일체(一體)의 이자를 취하고, 이자를 합한 돈 739냥 5전으로 가을 소목(燒木)을 방급(防給)하였음. 병신년에 판서(判書) 대감(大監) 조병현(趙秉鉉)이 임기 중에 돈 2,400냥을 출연(出捐)하였고, 을해년에 정승 대감(大監) 권돈인(權敦仁)이 임기 중에 돈 2,010냥을 출연(出捐)하였고, 신축년에 사또 홍재철(洪在喆)이 임기 중에 또 돈 3,488냥 5전을 출연하여 3할의 이자로 봄과 가을의 소목(燒木) 전액(全額)을 방급(防給)하였음.

동서상(東西上) 소목방급전(燒木防給錢) 220냥 갑신년에 사또[使道] 김응순(金應淳)이 임기 중에 감영의 겸제고(兼濟庫) 둔전세(屯田稅) 중에서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돈 220냥을 연례(年例)대로 거두고 그 안에서 114냥을 관청(官廳)에 이송(移送)하여 쓰고, 15냥은 후포조[後木條]로 고지기[庫子]에게 내주고, 봄가을로 봉상하는 후포[後木]<sup>42)</sup>은 매단(每丹) 1전 1푼 2리씩. 75냥은 각방(各房) 소목(燒木)의 대금으로 예하(例下)하고, 16냥은 분양마에 대한 세금으로 관청에 납부하였음.

진영(鎭營) 소목방급전(燒木防給錢) 1,500냥 무인년 사또 조운규(趙雲逵)가 임기 중에 3할의 이자를 취하여 별도로 갖춰 매년(每年) 이송(移送)하였는데, 신축년에 방채(放債)한 후 해마다 바치는 것의 3할을 방역전(防役錢) 이자로 옹기고 같은 이자돈 315냥을 전례에 따라 찬가(饌價)로 수납(輸納)하고, 돈 120냥을 또한 방역전(防役錢) 이자 중에서 매달 10냥씩 내어 윤삭년(閏朔年)에 시복호(柴復戶)<sup>43)</sup>에 더해주

39) 소목: 잘게 쪼갠 참나무 장작.

40) 단(丹) : 땔나무 묶음을 세는 단위, 우리말 '단'의 차자표기(借字表記).

41) 방채(放債) :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42) 후포: 군포 등을 납부할 때 내는 수송비나 서류 처리 비용 등의 수수료.

고 그 값을 납부하였음.

숯 100석(石) 본가(本價) 210냥 기사년에 정승 대감(大監) 민백상(閔百祥, 1711~1761)이 임기 중에 출연(出捐)하여 1푼 9리로 불린 이자돈 40냥으로 진부(鎭府)에 소용되는 숯값을 방급(防給)<sup>44)</sup>하였는데, 신축년 방채(放債) 후 해마다 바치는 것 가운데 1할을 방역전(防役錢) 이자로 옮기고 같은 이자돈 63냥에서 숯 31석(石) 값 12냥 4전을 진영(鎭營)으로 이송(移送)하고, 숯 69석 값 27냥 6전을 본부(本府)에 배분하였음. 돈 23냥은 그 이자의 나머지로 교구소(矯球所)에 이송(移送)하였음.

동서상(東西上) 고초(藁草) 임진년 임기 중에 매부(每夫) 75근(斤)씩 줄여 25근(斤)만 납부하였는데, 경오년 이후 소목(燒木)을 방급(防給)할 때 함께 방급하고 3분의 1을 관납(官納)으로 돌렸음. 부수(夫數)와 전수(錢數)는 해마다 각각 다름.

고초(藁草) 매부(每夫) 100근(斤)씩 9월 9일에 시작하여 바쳤고[捧上], 각사면(角四面)<sup>45)</sup>은 길이 조금 멀어서 초대조(草代條)로 1석(石) 1두(斗)씩 각창(角倉, 각사면의 창고)에 바쳤음.[관청(官廳) 배삭(排朔)] 정해년(1827)에 정승 대감(大監)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임기 중에 돈 2,600냥을 출연(出捐)하고, 또 남창(南倉)에 서돈 1,000냥을 빌려 각면(各面)에 나누어 주고, 3할로 불린 이자돈 1,000냥을 각면(各面)에 나누어 주었다. 3할로 불린 이자돈 1,080냥과 겸제고(兼濟庫) 청초가(靑草價)에서 옮겨온 125냥, 곧 돈 1,205냥 내에서 1,025냥을 영부(營府)에 소용되는 초가(草價)로 마련하여 방급(防給)하였음. 남은 돈 180냥을 원전(元錢)에 첨부(添付)하여 차차 1,000냥을 불렸음. 정유년에 남창(南倉)의 돈을 모두 갚았고, 남은 본리전(本利錢) 12,400냥을 그대로 무술년에 모두 논을 사들여 겸제고(兼濟庫)에 부치고 치계돈(稚鷄屯)의 예(例)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답세전(答稅錢) 992냥이 되었음.

#### 고초방급전(藁草防給錢) 1,025냥 가운데

200냥 : 각사면(角四面) 벗짚 대금으로 관청에 이송(移送)하여 분배하여 씬[排用].

200냥 : 임시로 줄인 복호의 벗짚 대금. 87냥 3전은 관봉(官封)의 복호(復戶) 99부(夫)의 조(條), 18냥 가운데 8냥 1전은 가게[店]의 복호조(復戶條)로 견역소(鑿役所)<sup>46)</sup>에서 복호조(復戶條)로 이송(移送), 86냥 6전은 각양(各樣) 복호조(復戶條).

21냥 사복시(司僕寺) 상납조(上納條). 분양마초(分養馬草) 2,100근(斤)을 매년 관청에 내렸으나 지금은 대전(代錢)으로 어영색(御營色)에게 바로 지급하여 전례에 따라 상납(上納)함.

80냥 각방(各房) 소목(燒木)의 대금. 초(草) 11,160근(斤)의 소목대(燒木代)를 예하(例下)<sup>47)</sup>하였으나, 지금은 다만 80냥으로 각방(各房)에 예하(例下)함.

140냥 영문(營門)에 소용되는 초가(草價). 초둔(草菴) 등 감영의 각종 쓰임을 아울러 모두 관청에 내렸으나, 지금은 감영(監營)의 각 창고에서 전담하여 사서 씬.

43) 시복호(柴復戶) : 땔나무를 바치고 여타의 부역을 면제받은 호(戶).

44) 방급(防給) : 중간에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

45) 각사면(角四面) : 角北面, 角縣內, 角二同. 角初同.

46) 견역소(鑿役所) : 역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

47) 예하(例下) : 상급자나 상급 관청에서 정례(定例)대로 내려주는 것.

70냥 진영(鎭營)에 소용되는 초가(草價). 초(草) 60근(斤)을 전례에 따라 부근의 면(面)에서 수납(輸納)하였으나, 지금은 대전(代錢) 60냥을 이송(移送)하고, 돈 10냥은 진색리(鎭色吏)의 첨보조(添補條)로 아울러 내어줌.

21냥 향장청(鄉將廳) 마초가(馬草價).

173냥 호장(戶長) 첨보조(添補條). 3냥은 지필묵가(紙筆墨價).

돈 120냥 본부(本府)에 소용되는 초가(草價). 마료(馬料) 9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지급함. 입대마(立待馬) · 중영마(中營馬) · 심검마(審檢馬)는 이미 방급(防給)한 중영(中營)의 비용에 들었으므로 다시 관하(官下)의 삭례(朔例)에서 거론하지 않음.

빙정전(氷丁錢) 1,300냥 병자년에 사또 이익보(李益輔)가 임기 중에 불린 3할의 이자를 별도로 갖추었다가 보내주었음. 신축년에 방채(放債)한 후에 해마다 마치는 것의 1할을 방역전(防役錢) 이자로 옮겨주고, 같은 이자돈 390냥 가운데서 120냥을 각사면(角四面)에 이송(移送)하여 관청에 나누어 주고, 80냥은 얼음을 저장할 때 가산진(架山鎭)에 내어주고, 돈 190냥은 배삭(排朔)에 넣어 5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일(每日) 1짐[駄]씩 짐값으로 지급한 후 관청에 납부하였음.

정조(正朝) 호장(戶長)이 상경(上京)할 때 예목(禮木) 8냥, 필채(筆債) 12냥을 관청에 내려줌. 이조(吏曹) 2냥, 예조(禮曹) 2냥, 사헌부(司憲府) 2냥, 승정원(承政院) 2냥, 비변사(備邊司) 2냥, 이조(吏曹) 2냥, 정원(政院) 2냥, 옥당(玉堂) 2냥, 내각(內閣) 2냥, 사헌부(司憲府) 2냥.

영부(營府) 말먹이[馬料] 청초(靑草)는 민부(民夫)가 스스로 납부하였는데, 을유년에 정승 대감 정존겸(鄭存謙)이 임기 중에 영마초(營馬草)는 겸제고(兼濟庫)에서 지급하고, 관마초(官馬草)는 돈 2,650냥을 본부(本府)에 보내어 2푼 2리의 이자로 불려 그 이자돈 583냥으로 사서 사용하였음. 그러다가 신축년에 방채(放債)한 후에는 다만 2,123냥을 그대로 본전(本錢)으로 하여 방역전(防役錢) 이자로 옮겨주고 같은 이자돈 636냥 9전 내에서, 62냥은 진영마초가(鎭營馬草價)로 이송하고, 120냥은 각사면(角四面) 조(條)로 관청(官廳)에 나누어 쓰고, 24냥은 관청에 내려준 마초가(馬草價)를 먼저 채하고 관용(官用)하였음. 24냥은 해당 관리의 요전(料錢: 給料)으로 지급하고, 53냥 9전은 남은 이자로 교구소(矯球所)에 이송(移送)하였음. 돈 353냥은 청초(靑草) 1,412단을 만들어 5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마료(馬料)로 지급한 후 쓰고 남은 것은 다시 관납(官納)하였음.

### 상정질(常定秩)<sup>48)</sup>

소목(燒木) 매단(每丹)을 5속(束)으로 만든다. 매속가(每束價)는 5푼[分]. 동서상(東西上) · 각사면(角四面) 민부(民夫)와 각양 복호(復戶)는 함께 계상(計上)에서 제외한 후 들어온 것에 따라 나눔.

숫 봄에 30석(石) 매달 5석, 가을에 39석(石) 매달 6석(石) 7두(斗) 5되[刀], 매석가(每石價) 4

48) 상정질 : 일정하게 정해진 항목

전, 합전(合錢) 27냥 6전.

벗짚[藁草] 12,000근(斤). 9월에서 4월까지 매달 1,500근(斤), 매근가(每斤價) 1푼, 합전(合錢) 120냥.

빙정전(氷丁錢) 190냥.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47냥 5전, 매태(每駄) 태가(駄價) 5전.

청초(靑草) 1,412단(丹).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353단(丹), 매단(每丹)을 4속(束)으로 함. 매속가(每束價) 6푼 2리 5호(戶), 합전(合錢) 350냥을 장무서원(掌務書員)이 차지(次知)하고 기록하며, 환작(還作)할 때 매단가(每丹價)에 1푼씩을 감급(減給)하여 영부(營府)의 마조판(馬槽板)에 충당토록 함.

동거(東炬) 매 자루[柄]) 나무 2속(束) 반.

큰 거적[大芑] 매잎[每立] 초(草) 10근(斤). 중(中) 8근(斤), 소(小) 6근(斤).

동근 자리[斗應自里] 매좌(每坐) 초(草) 10개(介).

### 예하(例下)<sup>49)</sup>

목(木) 360속(束) 매달 30속(束)을 입대마(立待馬) 1필(匹)에 지급.

목(木) 1,800속(束) 매달 150속(束)을 객사색(客舍色)에게 지급.

목(木) 32속(束) 매달 3속(束)을 장비(醬婢)에게 지급.

목(木) 24속(束) 매달 삭망(朔望)에 각각 1속(束)씩 아무녀(衙巫女), 세답비(洗踏婢)에게 지급.

목 57속 반(半) · 탄목(炭木) 7두(斗) 6승(升) 향교(鄉校) 향례시(享禮時) 봄가을로 같이 지급. 삼사전(三祀典) · 독제제향(蠶祭祭享)할 때 탄목(炭木)을 전례에 따라 지급.

숫 27두(斗) 본진(本鎭) · 9읍(邑)의 요패(腰牌) 낙인(烙印)에 매식(每式) 매읍(每邑)에 3두(斗)씩 지급.

### 이방(吏房)

인리복호(人吏復戶) 100결(結): 60결(結)은 관청(官廳) 보역물종가(補易物種價)에 충급(充給), 40결(結)은 이청(吏廳)의 용하(用下)<sup>50)</sup>.

이조서리(吏曹書吏) 당참채(堂參債)<sup>51)</sup> 100냥: 40냥 관비(官備)<sup>52)</sup>, 4냥 사령방(使令房), 40냥 교구소(矯球所) 신납(新納), 12냥 이청(吏廳), 4냥 관노방(官奴房)에 지급.

도임장(到任狀) 작목(作木)<sup>53)</sup> 3필(疋): 대전(代錢) 6냥 5전. 5전은 진성채(陳省債)<sup>54)</sup>로 이조(吏曹)에 납부하는 관비(官備).

49) 예하(例下) : 상급(上級) 관청에서 물품 등을 정례(定例)로 지급하는 것.

50) 용하 : 잡용으로 쓸 돈이나 물품.

51) 당참채(堂參債) : 조선 시대, 수령 또는 진장 등의 지방관이 부임한 직후 이조나 병조의 관원에게 상납하던 금품.

52) 관비 : 관아에서 준비함.

53) 작목 : 세금을 무명[木]으로 환산하여 받음.

54) 진성채 : 진성장(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 중앙관아로 올리는 공물관계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에 필요한 금품.

해유<sup>55)</sup> 마감채(解由磨勘債) 100냥.

잡물대(雜物代) 5냥은 체등(遞等)<sup>56)</sup>할 때의 관비(官備). 10달 미만 60냥, 100일 미만 30냥.

신묘년에 새로 정한 원유채(原由債), 순병영(巡兵營) 감채(勘債)<sup>57)</sup> 29냥 또한 체등(遞等)할 때의 관비(官備).

제호탕(醜翻湯)의 청밀(淸蜜) 대금 9냥 · 진성채(陳省債) 1냥 5전: 3냥 5전 기로소(耆老所), 4냥 5전 의정부(議政府), 2냥 5전 중추부(中樞府). 관비(官備)로 4월에 납부.

기별채(奇別債) 2냥 중추부(中樞府).

납약채(臘藥債) 9냥 · 진성채(陳省債) 1냥 5전 3냥 5전 기로소(耆老所), 4냥 5전 의정부(議政府), 2냥 5전 중추부(中樞府) ·

필채(筆債) 2냥 5전 5전은 진성채(陳省債)로 비변사(備邊司)의 관비(官備)로 10월에 납부.

순사도[巡使道] 생신(生辰) 예단(禮單) 관비(官備).

관대(冠帶) 차림 여름에는 분홍사(粉紅紗) 2필(疋), 겨울에는 분홍화주(粉紅禾紬)<sup>58)</sup> 2필(疋), 내공청운사(內工靑雲紗) 2필(疋), 내공람대경광주(內工藍大輕光紬)<sup>59)</sup> 2필(疋).

도복(道服) 차림 황저포(黃苧布) 1필(疋), 진홍소광대대(眞紅小廣大帶)<sup>60)</sup> 1거리(巨里),<sup>61)</sup>

창의(斃衣) 차림 백화주(白禾紬) 2필(疋), 녹피화자(鹿皮靴子)<sup>62)</sup> 1부(部).

포립(布笠)<sup>63)</sup> 1정(頂). 갓의 보자기는 남색 명주[綿紬]. 농(籠) 1태(駄)는 놋쇠[豆錫]장식(粧飾)에 자물쇠를 갖춘 것.

고배상(高排床) 2좌(坐). 사도(使道) 1상(床), 내아(內衙) 1상(床). 대부인(大夫人)이 행차하면 1상(床) 더 준비.

대부인(大夫人) · 차부인(次夫人) 마누라[抹樓]의 생신 상(床)만 차려 올리고 예단(禮單)은 거론하지 않음.

본부(本府)의 생신(生辰) 순영(巡營)에서 내려오는 예단(禮單)의 대금은 48냥, 상(床)은 영문(營門)의 생신상(生辰床)의 예(例)에 따름.

읍선생 부의(邑先生賻儀) 관비(官備). 부고(訃告)를 듣는 즉시 인리(人吏) · 사령(使令)을 따로 정하고 단자(單子)를 작성하여 6부(付)<sup>64)</sup>를 보냄.

55) 해유: 해유채. 관원이 벼슬에서 물러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넘기고 호조에 보고할 때 드러난 전임자의 채무.

56) 체등: 새로 임명된 관리와 전임 관리가 서로 교대함

57) 감채: 어떤 일을 마감하는 데에 요구하는 수수료.

58) 분홍화주: 분홍색으로 된 품질이 좋은 비단.

59) 내공람대경광주: 안감이 남색으로 된 아주 가벼운 비단

60) 진홍소광대대: 진홍색으로 된 약간 넓은 큰 띠

61) 거리(巨里): 길이를 헤아리는 10발 단위의 양수사(量數詞).

62) 녹피화자: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

63) 포립: 베로 싸개를 한 갓.

64) 부(付): 지방 관아의 각방(各房)에서 돌려보던 통문(通文)의 단위.

유둔(油芻)<sup>65</sup> 1번(番) 값 5냥 8전 8푼.  
 장유지(壯油紙) 1속(束) 값 2냥 2전 1푼.  
 외후백(外厚白) 3속 값 3냥 6전 6푼.  
 외별백(外別白) 2속 값 3냥 1전 8푼.  
 황촉(黃燭) 2쌍(雙) 값 2전.  
 정목(正木)<sup>66</sup> 2필(疋) 값 4냥.  
 참깨[眞荳] 3두(斗) 값 1냥 2전.  
 청(淸) 3승(升) 값 1냥 8전.  
 돈 5냥.  
 합전(合錢) 27냥 1전 3푼.

내상(內喪) 4부(付)를 보낸다.

유둔(油芻) 1번(番) 3냥 9전 8푼.  
 장유지(壯油紙)<sup>67</sup> 1속(束) 값 2냥 2전 1푼.  
 외후백(外厚白) 3속(束) 값 3냥 6전 6푼.  
 외별백(外別白) 2속(束) 값 3냥 3전 8푼.  
 황촉(黃燭) 2쌍(雙) 값 2전.  
 청(淸) 3승(升) 값 1냥 8전.  
 돈 3냥.

합전(合錢) 18냥 3푼. 내외상(內外喪)은 모두 관비(官備)였으나 지금은 민간(民間)에 지급함.

경영주인(京營主人) 역가(役價) 조(租) 115석(石). 경(京) 100석(石), 동래(東萊) 10석, 병(兵) 5석.

하납 색채가(下納色菜價) 조(租) 40석(石). 하납미(下納米) 매석(每石) 2도(刀) 5홉[합]씩. 합조(合租) 155석(石). 이전부터 민부(民夫)가 출역(出役)하였으나, 갑술년(1814)에 사또 김노응(金魯應, 1757~1824)이 재임 중에 돈 620냥을 출연(出捐)하여 이청(吏廳)에 주고 불린 3할의 이자돈 186냥을 매석(每石) 대금으로 1냥 2전씩 작조(作租)<sup>68</sup>하여 나누어 준 뒤 가을을 기다려 시가(時價)로 작전(作錢)한 것을 연례(年例)대로 내어줌. 그 중 동래주인(東萊主人)은 기사년 순영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40석(石)을 추가로 정하였으므로 5석(石)을 전례에 따라 관청에 내려 실재(實在) 35석(石)이고, 방역전(防役錢) 이자 중 지급한 몫 12냥 및 수조소(收租所) 예복가(例卜價) 30냥을 합한 돈 42냥 가운데서 매석(每石) 대금으로 1냥씩 작조(作租)하여 나누어 원역가(原役價)를 따라 내어주고 나머지 돈 7냥 역시 내어 주었음.

65) 유둔지. 질긴 종이를 두껍고 넓게 붙여서 기름을 먹여 물이 배지 않게 한 종이

66) 정목(正木) : 품질이 뛰어난 무명.

67) 유둔(油芻) : 들기름이 흠뻑 밴 두꺼운 종이

68) 작조(作租) : 벼로 환산함.



경주인(京主人)에게 지급하는 조복채(朝服債) 조(租) 48석(石)은 매삭(每朔) 4냥씩 상정례(常定例)에 따라 관청에서 내리고, 복호조(復戶條) 44냥은 방역전(防役錢) 이자에서 지급하고, 예복(例卜) 14결(結) 값 140냥은 수조소(收租所)에서 구처(區處)<sup>69)</sup>하였음.

도시의 과거 비용 본전(都試科費本錢) 기사년에 감리(減利)한 후부터 궁색하여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 경오년에 남창(南倉)에 대여(貸與)한 돈 2,000냥을 취식(取殖)하여 수용(需用)하였는데, 임신 10월 조관(朝關)에 따라 환납(還納)하고, 익년(翌年) 계유 9월에 다시 청득(請得)하여 영전(營錢) 2,000냥을 먼저 제(除)하고 십사(什四)의 이전(利錢) 571냥으로 당년의 도시(都試)<sup>70)</sup>에 수용(需用)하였다. 재전(在錢) 1,429냥을 곧장 이교청(吏校廳)에 급부하고 취식(取殖)하여 그 이전(利錢) 571냥으로 매년 도시(都試)의 거행(舉行)에 충당하고, 정지(停止)하는 해에는 이전(利錢)을 유치(留置)하여 익년(翌年)에 합하여 도시(都試)할 때 첨용(添用)토록 하였다. 취식(取殖)하던 돈은 해가 오랏수록 폐단이 생겨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어 매년 배용(排用)에 근심하였다. 채안(債案)을 탕척(蕩斥)하려 2할의 이전(利錢)으로 전색(錢色)을 제부(除付)하고, 3할이 이자로 배분하여 본전에 충당하고 그 잉여(剩餘)로 곧장 본전(本錢)을 만들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점한(店漢)이 당납(當納)하는 역(役) 본래부터 다기(多岐)하여 점차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으므로, 갑신년 정승대감(政丞大監) 이병모(李秉模)가 임기 중에 전(錢) 150냥을 체하(帖下)하자, 그들이 자체로 마련한 전(錢) 100냥과 합하여 전(錢) 250냥을 장점(長點)을 따라 취식(取殖)하여 그 역(役)에 첨보(添補)토록 하였다. 무진(1808년)에 사도(使道) 윤광안(尹光顔, 1757~1815)이 임기 중에 전(錢) 250냥을 출연하여 전변(錢邊)에 급부(給付)하고 동(同) 이전(利錢) 75냥과 예급시복호(例給柴復戶) 중의 9부가전(夫價錢)을 함께 견역소(鑄役所)에 이송(移送)하여 각양(各樣)의 점역(店役)을 의례(依例)대로 용하(用下)하였다. 갑진년 체하전(帖下錢) 150냥을 환추(還推)하여 또 전변(錢邊)에 맡겨 함께 방역복호조(防役復戶條)와 더불어 54냥을 년례(年例)로 출급(出給)하여 곤목(棍木)에 당납(當納)토록 하였다. 이어 기축(1829년)에 사도(使道) 정기선(鄭基善, 1784~1839)이 임기 중에 300냥을 출연(出捐)하여 전변(錢邊)에 맡겨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점한(店漢)들의 구폐(救弊)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참처(站處)의 지공(支供) 민인배(民人輩)가 예(例)에 따라 자신들이 담당(擔當)하였는데, 무진(1808년)에 사도(使道) 윤광안(尹光顔)이 임기 중에 전(錢) 1,250냥을 별비(別備)하여 남창(南倉)에서 대여(貸與)받은 전(錢) 1,500냥과 합한 전(錢) 2,750냥을 참(站)이 있는 면면(面)에 분표(分俵)하고 무인(1818년)까지 3할의 이자를 합한 본리전(本利錢) 11,000냥 내에서 6,750냥을 기사(1809년) 이후 참비(站費)로 방급(防給)하고, 1,500냥을 남창전(南倉錢)에 환보(還報)하고, 잉여(剩餘) 500냥을 영납(營納)

69) 변동하여 처리함.

70) 도시(都試) : 조선시대 매년 봄가을에 시행하던 무과(武科) 시험의 일종.

하였다. 재전(在錢) 2,250냥을 곧 본전(本錢)으로 만들어 취식(取殖)하고 동(同) 이 전(利錢) 675냥을 매년 참면(站面)에 출급(出給)하였다. 또 기축년 사도(使道) 정기선(鄭基善)이 임기 중에 서중면(西中面) 원대리(院垞里)의 민장(民狀)에 따라 50냥을 출연(出捐)하여 일체(一體)를 이자로 불리고 그 이자돈 15냥을 방역(防役)에 첩보(添補)하였다. 계묘년에 사도(使道) 이경재(李景在)가 임기 중에 전(錢) 300냥을 오동원(梧桐院) 삼산동(三山洞)에 출연(出捐)하여 참(站)을 지공(支供)토록 하였다.

수북참(守北站) 99냥 5전 내(內) 지계참조(枝界站條) 39냥 9전을 민원(民願)에 따라 이청(吏廳)에 이부(移付)하고 이청(吏廳)에서 참(站)을 지공(支供)토록 하였다.

하수남(下守南) 94냥.

서중(西中) 90냥 내 윤촌참조(輪村站條) 30냥 · 용천참조(龍泉站條) 30냥 · 원대참조(院岱站條) 15냥을 지계(枝界)의 예(例)에 따라 이청(吏廳)에 급부(給付)하고, 나뢰(羅牢)에 맡겨 스스로 참(站)을 지공(支供)토록 하였다.

하서참(河西站) 20냥 1푼.

하창(河倉) 180냥.

법화참(法化站) 60냥 3푼.

성평곡참(省平谷站) 60냥 3푼.

화참(花站) 180냥 3푼.

나뢰구폐전(羅牢救弊錢) 기축년에 사도(使道) 정기선(鄭基善)이 임기 중에 면주인(面主人)의 동령(動鈴)을<sup>71)</sup> 견감(鑷減)하고, 또 그 후 일어날 폐단을 염려하여 남창(南倉)에 대하(貸下)하여 전(錢) 1,000냥을 전변소(錢邊所)에 급부(給付)하고 취식(取殖)하였다. 대개 전변(錢邊)은 십이(什二)인데, 이 전(錢)은 3항이어서 본디 혼동(混同)할 수 없고, 또 반박(班駁)할 수도 없으므로 전변(錢邊) 중 관청색(官廳色)에 대하(貸下)한 600냥은 전례대로 되돌려 결역(結役)에 방급(防給)하고, 이 1,000냥으로 관청색(官廳色)에 분배하여 매년 이조(利條) 300냥 내에서 100냥씩 10년을 기한으로 기해년에 이르러 남창전(南倉錢)을 필보(畢報)하고, 200냥은 나뢰(羅牢)에 출급(出給)하여 잡비(雜費)에 첩보(添補)토록 하였으며, 경자년 이후에는 동(同) 이전(利錢) 300냥을 전부 구폐(掇弊)에 귀속시킬 뜻으로 함께 절목(節目)을 작성하고, 그들의 등장(等狀)<sup>72)</sup>에 따라 동(同) 전(錢) 1,000냥을 뇌영청(牢令廳)에 출부(出付)하였다.

배지전(陪持錢) 200냥은 병오년에 순영(巡營)에서 하래(下來)하였으므로 이청(吏廳)에 급부(給付)하여 4할의 이자로 불린 같은 이자돈[利錢] 80냥을 매년(每年) 10월에 배지청(陪持廳)에 수납(輸納)하였다.

## 정미(丁未) 안전(案前) 김기현(金箕絢)의 각양(各樣) 교구조건(矯掇條)

71) 동령(動鈴) : 동량(動糧). 동냥. 구걸. 지방 고을의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착취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빚대어 이르는 말.

72) 등장(等狀) :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관청에 소장(訴狀)을 올리는 것.

件)

속오(束伍) 도노(迺老)하였으므로 수봉(收捧)하는 군민(軍民)을 감채(勘債)<sup>73</sup>하여, 정미당년조(丁未當年條) 12냥 6전을 관청(官廳)에서 당급(當給)하고, 또 전(錢) 50냥을 별비(別備)하여 병방색(兵房色)에 급부(給付)하여 3할의 이자로 불려 영구히 방급(防給)한다. 정미(丁未) 6월(月) 일(日).

경포수(京砲手) 6년에 1차례 초상차(抄上次) 자장전(資裝錢)을 군민(軍民)에게 수렴(收斂)하였는데, 전(錢) 1,343냥 6전 8푼을 별비(別備)하여 각면(各面)에 분배[分俵]하고 3할의 이자로 불려 승호(陞戶)하는 해에 이조(利條)로 자장(資裝)을 방급(防給)하고, 승호(陞戶)가 없는 해는 동족징포(洞族徵布)에 방급(防給)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한다. 정미(丁未) 7월(月) 일(日).

마병과(馬兵科) 부거(赴舉)하는 노신(路驢)을 군민(軍民)에게 수렴(收斂)하였는데, 정미당년조(丁未當年條) 5냥을 관청(官廳)에서 당급(當給)하고, 또 전(錢) 17냥을 출연(出捐)하여 병방색(兵房色)에게 급부(給付)하고 3할의 이자로 불려 영구히 방급(防給)한다. 정미(丁未) 9월(月) 일(日).

년례 송정(年例松丁)의 초석대(草席代) 수동(守東) 13냥 2전, 하수남(下守南) 17냥 6전, 옥포(玉浦) 14냥 3전 7푼, 해서촌(解西村) 11냥을 관청(官廳)에서 방급(防給)한다. 무신(戊申) 4월(月) 일(日).

남창(南倉)의 수리(修理) 수현내(守縣內)에서 예(例)에 따라 당례(當例) 7냥 7전을 관청(官廳)에서 방급(防給)한다. 무신(戊申) 4월(月) 일(日).

영납곡 태가(營納穀馱價) 상수남(上守南) 13냥 2전, 상수서(上守西) 8냥 8전, 화현내(花縣內) 28냥 9전 7푼, 법화(法化) 19냥 3전 6푼, 성평곡(省平谷) 17냥 3전을 관청(官廳)에서 방급(防給)한다. 무신(戊申) 4월(月) 일(日).

인흥백토 수운태가(仁興白土輸運馱價) 전(錢) 13냥 2전을 관청(官廳)에서 방급(防給)한다. 무신(戊申) 4월(月) 일(日).

각사면(角四面) 연역(烟役)<sup>74</sup> 년조(年條)를 민호(民戶)에서 수봉(收捧)하였으나, 전(錢) 750냥을 별비(別備)하여 각사면(角四面)에 분표(分俵)하고 이조(利條) 225냥으로 기유년을 시점(始點)으로 방급(防給)한다. 무신(戊申) 4월(月) 일(日).

객사 동서 창유생(客舍東西唱儒生) 오랜 기간[長時] 등대(等待)할 때는 연역(煙役)을 자비(自備)하였으나, 전(錢) 200냥을 별비(別備)하여 6창(倉)의 고지기에게 분표(分俵)하고 3할의 이자로 불려 이조(利條) 60냥으로 기유년을 시점으로 요미(料米)를 지급[上下]한다.

어영봉군 산거마감(御營烽軍刪去磨勘) 매(每) 10년마다 거행(舉行)하며 소입(所入)되는 정비(情費)는 군민(軍民)에게 수봉(收捧)하였으나, 전(錢) 48냥 2푼을 별비(別備)하여 각면(各面)에 분표(分俵)하고 7년 이자로 불린 301냥 1전으로 영구히 방급(防給)한다. 무신(戊申) 8월(月) 일(日).

73) 감채(勘債) : 빚을 매겨 정하는 것.

74) 연역(烟役) : 연호역(煙戶役), 집집마다 시키는 부역.

각군 개안감채(各軍改案勘債) 식년(式年)마다 시행하며 민간에 수봉(收捧)하였는데, 전(錢) 956냥 3전 2푼을 이무(移貿)하여 십삼(什三)으로 취식(取殖)하고, 기유 적채전(籍債錢) 이조(利條) 257냥과 함께 원전(原錢)으로 만들어 임자년을 시점으로 방급(防給)한다. 무신(戊申) 8월(月) 일(日).

금호진(琴湖津) 조선(造船)하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전(錢) 100냥을 별비(別備)하여 호방(戶房)에 주고 3할의 이자로 불려, 그 이조(利條)로 때에 따라 보용(補用)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한다. 기유(己酉) 3월(月) 일(日).

검정진(檢汀津) 조선(造船) 자금으로 전에 급부(給付)한 20냥에 별비(別備)한 전(錢) 30냥을 효목동(孝睦洞)에 급부(給付)하고 합작(合作)한 50냥을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그 이조(利條)로 때에 따라 보용(補用)토록 한다. 기유(己酉) 3월(月) 일(日).

양사재(養士齋) 거접(居接)하는 유생(儒生)의 예하조(例下條) 15석(石)을 매년(每年) 거접할(居接) 때 지급[上下]하고 만약 거접(居接)하지 않는 해가 있을 때는 익년(翌年)에 함께 양년조(兩年條)를 합하여 지급한다. 기유(己酉) 5월(月) 일(日).

금어상번군(禁御上番軍) 자장전(資裝錢)은 군민(軍民)의 가장 큰 고막(苦瘼)이므로, 전(錢) 2,000냥을 별비(別備)하여 각면(各面)에 분표(分俵)하고 3할의 이자로 불려 그 4년의 이조(利條) 2,400냥으로 자장전(資裝錢)에 첨보(添補)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作成)한다. 기유(己酉) 5월(月) 일(日).

형옥(刑獄) 수리할 때 성저(城底)의 백성들이 수시(隨時)로 부역(賦役)하는 것은 실로 궁민(矜悶)한 일이므로, 전(錢) 100냥을 별비(別備)하여 형리청(刑吏廳)에 급부(給付)하고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임자년을 시작으로 그 이조(利條)로 고가(雇價)를 충당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한다. 기유(己酉) 6월(月) 일(日).

각사(各寺)에서 소납(所納)하는 차왜유둔(差倭油屯) 기사년 안전 송태진(宋泰鎭)이 임기 중에 승도(僧徒)들을 염려하여, 전 700냥을 출연(出捐)하여 이자에 부치고 3할의 이자로 불려 신미년을 시작으로 영구히 방급(防給)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여 비치(備置)한다.

## 호방(戶房)

제언(堤堰) 103고(庫), 저수몽리(貯水蒙利).

천방(川防) 49고(庫), 수축몽리(修築蒙利).

농형(農形) 10일 간격으로 우택(雨澤)의 소득(所得)에 따라 춘분일(春分日)을 시작으로 상강일(霜降日) 까지 순영(巡營)에 보고한다.

무녀(巫女) 18명(名). 세전(稅錢) 63냥, 매석(每石) 3냥 5전의 57냥 8전 3푼을 5전진성채(陳省債) 3월삭(月朔)에 호조납(戶曹納). 아무녀(衙巫女) 3냥 5전을 세감(稅減)한 재전(在錢) 1냥 6전 7푼을 관납(官納).

선세전(船稅錢) 7냥 5전 사문진(沙門津) 3냥, 무태진(無台津) 2냥, 5진농선(五津農船) 각 5전씩 6냥 7전 5푼을 3월삭(月朔)에 균청납(均廳納). 재전(在錢) 7전 5푼 십일조(什一條) 관납(官納).

금호진(琴湖津) 발로선(撥路船) 1척(隻)은 세(稅)가 없었는데 10년에 1차(次) 개조가(改造價) 미(米) 6석(石) 6두(斗), 1차 개삭가(改梁價) 미(米) 2석(石)이 함께 당한(當限)<sup>75</sup>하여 회감(會減)<sup>76</sup>하다. 기유 식전(己酉殖錢)의 첩보(添補)는 이방장(吏房掌)에 보인다. 방천(防川) 길이 3,558보(步), 높이 24척(尺) 혹(或) 15척(尺), 넓이[廣] 30척(尺) 혹(或) 20척(尺). 관둔전(官屯田) 14마지기, 기간전(起墾田) 19마지기, 답 8마지기는 방천직(防川直) 3명이 차지(次知)하여 경식(耕食).

신천(新川) 부(府)의 동쪽 5리쯤에 있다. 무술년 안전 이서(李澈)가 임기 중에 읍기(邑基)의 수해(水害)를 염려하여, 일경(一境)의 승민(僧民)에게 방축(防築)토록 한 후 전(錢) 250냥을 출연(出捐)하고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수축(修築)할 때 보용(補用)하였으나, 신축년 방채(放債) 후 세봉(歲捧)의 십일(什一)을 동서상(東西上) 각동(各洞)에 출부(出付)하여 일후(日後) 역군(役軍)의 요기(饒氣)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 형방(刑房)

흙홀전칙(欽恤典則) 1권(卷).

대전통편(大典通編) 5권(卷).

대명률(大明律) 3권(卷).

무원록(無冤錄) 1권(卷).

신증무원록구언해(新增無冤錄具諺解) 1권(卷).

유척(楡尺) 2.

형혈(刑穴) 1.

은차(銀釵) 2.

내옥(內獄) 6칸[間] · 외옥(外獄) 6칸[間] · 보관청(保管廳) 3칸[間] 등의 수리(修理) 등절(等節)은 수용(需用)에 따라 관하(官下)하고, 재목(材木)은 남북산(南北山) 및 사양산(私養山)에서 작취(斫取)한다. 수직(守直)은 각면(各面)의 토포(討捕) · 기찰(譏察)에게 매명(每名) 번전(番錢)으로 3전씩 염급(斂給)한다. 동서도기찰(東西都譏察) · 토포장(討捕將) 4인이 체번(替番)하여 수직(守直)토록 한다.

곤목(楸木) 해북촌(解北村) 점한(店漢)이 예(例)에 따라 자작(自斫)하여 납봉하였는데, 처음으로 방역전(防役錢) 중 99냥 5전을 년례(年例)로 출급(出給)하여 첩보(添補)토록 한다.

가판목(枷板木) 남북산 및 사양산(私養山)에서 작취(斫取)하여 연군(烟軍)에게 운반(運搬)토록 하였으나, 임진년 안전 조진민(趙鎭敏)이 임기 중에 구폐전(救弊錢)을 퇴한(退限)<sup>77</sup>하고 이조(利條) 중에서 남은 170냥을 동화사(桐華寺)와 남북(南北) 지장사(地藏寺)에 분표(分俵)하고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함께 관혁목(貫革木)을 무용(貿用)토록 하고 작목(斫木) 1관(款)은 영구히 혁과(革罷)하였다.

75) 당한(當限) : 기한이 도래한 것.

76) 회감(會減) : 주고받을 것을 제하고 잔금(殘金)을 계상(計上)하는 것.

77) 퇴한(退限) : 정한 기한을 물리는 것.

장태(杖笞) 매(每) 5일 1태(駄)씩 북산(北山) 도산(都山)에 직납(直納), 신장(訊杖) 매삭(每朔) 매면(每面)에서 1단(丹)씩 주인(主人)이나 부장(部長)에게 납봉(納捧) 등은 3영 신연(三營新延) 때와 어사도(御使道) 행차 때 및 습조(習操)할 때는 별등(別等)으로 봉용(捧用)한다.

과거 나장채(過去羅將債) 각면(各面) 부장처(部將處)에 각(各) 2전씩 봉급(捧給)하거나 본부(本府)에 직도(直到)하며, 넉넉하게 봉급(捧給)한다.

경수막(警守幕) 함정고(陷井庫) 수(數)는 성책(成冊)되어 매년 7월에 각면(各面) 토포(討捕) · 임장처(任掌處)에게 수봉(收捧)한 뒤 1건(件)은 병영(兵營)에 보고하고 1건은 진영(鎭營)에 보고하며, 감채(勘債)는 대면(大面) 1냥, 중면(中面) 7전, 소면(小面) 5전씩 수봉(收捧)한다.

토포장(討捕將) 2인(人), 기찰장(讒察將) 2인(人)이 항상 사역(使役)에 대기하지만 요뢰(料賴)가 전몰(全沒)하므로, 기축년 사도(使道) 정기선(鄭基善)이 임기 중에 전(錢) 500냥을 별비(別備)하여 장창(將廳)에 급부(給付)하고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매삭(每朔)의 요전(料錢)으로 각각 3냥씩 차하[上下]한다.

각면(各面)에 간혹(間或) 있는 병든 소[牛] 죽게 되면 정장(呈狀)하고 가죽 · 힘줄 · 뿔을 공고(工庫)에 이송(移送)한다.

## 병방(兵房)

수군(水軍) 2,599명(名). 10년에 한 차례 유포(留布)한다.

무학(武學) 751명(名). 1년 방포(防布)하고, 1년 유포한다. 방포간(防布間) 6삭(朔), 유포간(留布間) 18삭(朔).

하납보병(下納步兵) 239명(名).

합(合) 3,589명(名). 매명(每名) 1필(疋), 후전(後錢) 3전씩. 합목(合木) 71동(同) 39필(疋) 내에서 12동(同) 영(零) 해마다 각각 같지 않음. 순영유포조(巡營留布條)에 후전(後錢)의 봉상(捧上)이 없어 사군목(射軍木)<sup>78</sup>에 가록(加錄)하여 관문(關文)의 구획區劃에 따라 출급(出給)한다.

실재(實在) 59동(同) 영(零)을 한결같이 방안(方案)의 소부(所付)에 따라 다달이 각진포(鎭浦)에 수납(輸納)한다. 안골(安骨) · 옥포(玉浦) · 천성(天城) · 개운(開雲) · 조라(助羅) · 부산(釜山) · 가덕(加德) 태가(駄價) · 부비(浮費)는 후전(後錢) 중에 전책(專責)시켰으나, 임술년에 방안(防案)을 고쳐 처음으로 전목(錢木)으로 절반(折半)을 충당(充當)하였다.

순영납(巡營納) 각군(各軍) 327명(名), 중영납(中營納) 수솔군(隨率軍) 8명(名), 수미군(需米軍) 75명(名) 등은 매년(每年) 모두 후전(後錢) 2냥 3전씩의 수봉(收捧) 내에서 2냥 2전 4푼은 영납(營納) 6푼은 잡비(雜費).

마정군(馬丁軍) 18명(名). 매명(每名) 2냥 3전씩의 수봉(收捧) 내에서 2냥은 영납(營

78) 사군목(射軍木) : 삼수병(三手兵) 중 사수(射手)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무명.

納) 3전은 잡비(雜費).

통영납(統營納) 유황군(硫磺軍) 2명(名). 매명(每名) 2냥 3전씩의 수봉 내 1냥 1전은 영납(營納), 1냥 2전은 식년 개안채(式年改案債).

각군보(各軍保) 물고입안(物故立案) 성출(成出)할 때 입안채(立案債) 1냥을 관납(官納)하고, 백지(白紙) 1속(束)과 통인(通引) · 급창(吸唱) · 나뢰(羅牢) 등의 예급(例給) 2전은 탈군(頃軍)이 담당(擔當)하였으나. 관납(官納)과 백지(白紙)는 재동(齋洞) 김(金) 안전(案前)이 임기 중에 혁과(革罷)하였고, 잡탈대(雜頃代)는 정(丁) 사주(使住)<sup>79</sup>가 면리(面里)에 소속(所屬)시켜 모자라는 대로 보고토록 하였으며, 어금보(御禁保) · 승호(陞戶)는 원군(元軍)이 자득(自得)하여 망납(望納)하고, 자보(資保)는 매명(每名) 목(木) 1필대(疋代) 2냥씩을 정군(正軍)에 보용(補用)하고, 복마보(卜馬保)는 속오(束伍) · 아병(牙兵) · 마군(馬軍)의 예(例)에 따라 각 2명(名)을 얻게 하였다.

식년(式年)의 개도안(改都案)<sup>80</sup> 지지(紙地) 및 정비(情費)는 전부터 고마고(雇馬庫)에서 차하[上下]하였으나 고저(庫儲)가 탕잔(蕩殘)되어 계묘년을 시점으로 각 해당 군민처(軍民處)에서 매명(每名) 1전씩 수봉(收捧)하고, 수군(水軍)은 10년에 한 차례 개안(改案)하고 개안채(改案債)는 1전 7푼으로 규정(規定)하였다. 신묘년에 군포(軍布)의 제감(除減)이 조령(朝令)에 당년(當年)뿐이고 감봉(減捧)은 2푼이었으므로, 각군(各軍)의 강년채(降年債)<sup>81</sup>는 병오년 안전 이병두(李炳斗)가 임기 중에 전(錢)을 출연(出捐)하여 방급(防給)하였다. 개안채(改案債)는 무신년 안전 김기현(金基絢)이 임기 중에 전(錢)을 출연(出捐)하여 방급(防給)하였다.

무학(武學) 751명(名). 매명(每名) 봄가을의 번전(番錢)으로 각 3전씩 수봉(收捧) 내에서 절반(折半)은 유서(諭書) 배마세조(陪馬貫條)로 도훈도(都訓導)가 차지(次知)하고, 봉수(烽燧)의 거행(舉行), 연봉(延逢) 등절(等節)도 역시 거행(舉行). 절반(折半)은 독제(蠹祭)할 때 잡물조(雜物條)로 무학당(武學堂) 고지기[庫子]가 차지(次知)한다. 그 중 50냥은 장무군관(掌務軍官)이 교구차(矯掾次) 장청(將廳)에 이송(移送)한다.

#### 읍참(邑站)

파발감관(擺撥監官) 2인(人).

발군(撥軍) 30명(名). 보(保) 15명(名).

속역(屬驛) 설화(舌化) · 금천(琴川) · 경산(慶山) · 압량(押梁).

#### 오동원참(梧桐院站)

파발감관(擺撥監官) 2인(人).

발군(發軍) 30명(名).

속역(屬驛) 유산(幽山) · 영산(靈山) · 일문(一門) · 현풍(玄風) · 쌍산(雙山)

감관(監官) 4인(人)은 물론 원군(元軍)과 보인(保人)도 매명(每名) 2냥씩 봄가을로

79) 사주(使住) : 사주(使主)의 오기(誤記)인 듯. 사주(使主)는 관찰사의 별칭.

80) 도안(都案) : 병조(兵曹)의 도안청(都案廳)에서 군적(軍籍)의 변동 사항을 등록하였던 대장(臺帳).

81) 강년채(降年債) : 병역(兵役)을 마쳐야 할 사람의 나이를 낮춰 부담시키던 군포(軍布).

분봉(分捧)한다. 말마채(撥馬債)는 각 속역(屬驛)에서 매삭(每朔) 3냥씩 돌아가며 수봉(收捧)한다. 1년을 통틀어 매역(每驛) 12냥씩. 5영(營) 장계(狀啓) 및 범간(凡干)의 공사(公事)와 급세(給費)를 전치(傳致)하면서 만약 발군(撥軍)에게 탈(頃)이 있게 되면 감관(監官)이 자득(自得)하여 망납(望納)한다.

간망군(看望軍) 58인. 봉수(烽燧) 및 사성행차(使星行次)에 돌아가며 간망(看望)하였으나, 이전 영(營)의 관문(關文)에 따라 도훈도(都訓導)가 체당(替當)하여 거행(舉行)하며, 매명(每名) 번전(番錢) 2냥씩을 봄가을로 나누어 봉용(捧用)한다. 탐리(探吏)의 수종(隨從)은 경유(經由)하는 면(面)의 수군(水軍) 중 1명씩을 예(例)에 따라 정송(定送)한다.

순영(巡營)에 기부(記付)된 구사목(舊射木) 10동(同) 47필(疋) 4척(尺) 9촌(寸) 6푼[分] 5리(里) 내(內)에서, 10동(同) 46필(疋) 24척(尺) 1촌(寸) 9푼[分] 5리(里)는 년구(年久)하여 부상(腐傷)으로 논보(論報),<sup>82)</sup> 남은 무명[在木] 20척(尺) 7촌(寸) 7푼[分] 대전(代錢) 1냥 4푼.

군목(軍木) 40동(同) 43필(疋) 7척(尺)<sup>83)</sup> 1촌(寸) 2푼[分] 내(內)의 40동 42필(疋) 29척(尺) 1촌(寸) 2푼[分]이 년구(年久)하여 부상(腐傷)으로 논보(論報), 재목(在木) 13척(尺) 대전(代錢) 6전 5푼.

구량(舊良)의 여목(餘木) 36동(同) 23필(疋) 21척(尺) 2촌(寸) 9푼[分]에서 31동(同) 23필(疋) 21척(尺) 2촌(寸) 9푼[分]은 년구(年久)하여 미봉(未捧)으로 논보(論報). 재목(在木) 5동(同).

## 예방(禮房)

객사(客舍) · 의장(儀仗) 등물(等物)이 훼손되면 수보(修補)하고, 영문(營門)의 신연(新延) 때는 일신(一新)하여 개비(改備)한다. 유생(儒生)은 교생(校生) 중에서 3일에 한(限)하여 교체(交替)로 수번(守番)토록 하며 연명(延命) 때 거행(舉行)한다. 개독유생(開讀儒生) 4인(人), 동서창유생(東西唱儒生) 24인(人)은 무신(戊申) 식전(殖錢)에서 정료(定料)한다. 이방장(吏房掌)에 보인다.<sup>84)</sup>

교원(校院)의 사전(祀典) 봄가을에 행한다. 향제물(享祭物)은 예(例)에 따라 관봉(官封)하고 그 중 주(酒) · 반(飯) · 미(米) · 폐(幣) · 축(燭) · 우포(牛脯) · 필묵(筆墨)은 아울러 회감(會減)하여 차하[上下]한다. 미사액(未賜額)은 관봉(官封). 석존제(釋尊祭) · 독제(蠶祭)에 소봉(所封)되는 토해대(兔醢代) · 백계가(白鷄價)는 견역소(鑷役所)에서 차하[上下]한다.

수자노인(受資老人) 중 100세 이상은 세찬미(歲饌米) 5두(斗), 대구(大口) 3미(尾),

82) 논보(論報)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의견을 보고하는 것.

83) 7척(尺) : 원문에는 푼[分]으로 기록되었으나 문맥상(文脈上) 척(尺)으로 해석한다.

84) 이방장(吏房掌) 중 '정미(丁未) 안전(案前) 김기현(金箕絢)의 각양(各樣) 교구조건(矯掾條件)'의 '객사동서창유생(客舍東西唱儒生)' 조(條)의 내용을 지칭. 이 조항에는 시행일자(施行일자)의 기록이 없으나, 전조(前條) '인흥백토 수운태가(仁興白土輸運駄價)'에 '무신(戊申) 4월(月)'이란 일자가 기술되어 있다.



염(鹽) 3두(斗)씩 관청(官廳)에서 지급[上下]한 후 원회곡(元會穀)<sup>85)</sup> 중에서 회감(會減)한다. 80~90세 이상은 영(營)에 보고(報告)하고 수자(受資)토록 한다.

과시(過時) 미혼(未婚), 과기(過期) 부장(不葬) 조령(朝令)에 따라 매(每) 세말(歲末)에 탐보(探報)하지 않을 수 없다. 미혼(未婚)은 백목(白木) 1필(疋)을 조급(助給)하고, 미장(未葬)은 정조(正租) 10두(斗), 점석(簾席) 2일[立], 공석(空石) 20일[立]씩 관청(官廳)에서 차하[上下]한다.

사서(四書) 4질(秩), 삼경(三經) 1질(秩), 『소학(小學)』 1질(秩)을 신유년에 별비(別備)하여 유포고(留布庫)에 비치하였고, 그 외 『자휼전칙(字恤典則)』 · 『오례의(五禮儀)』 등의 책자(冊子)는 파손(破損)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양사재(養士齋) 을유년 안전 김로(金魯)가 임기 중에 창건하여 매년(每年) 백일장(白日場)을 베풀고 유생(儒生) 15인(人)을 초선(抄選)하여 40일을 기한(期限)으로 거접(居接)토록 하며 영문(營門)에서 조(租) 10석(石)을 체하(帖下)하고, 본부(本府)에서 조(租) 15석을 체하(帖下)하여 함께 지공(支供)에 첨보(添補)하였다. 기유식전(己酉殖錢)에서 첨보(添補)한 것이 이방장(吏房掌)에<sup>86)</sup> 보인다.

복시(覆試) 백일장(白日場) 설행(設行)하였을 때 호중상(呼中床)<sup>87)</sup>은 본부(本府)에서 거행(舉行)하며 상가(床價)는 미(米) 19석(石)을 복시(覆試) 4석(石), 백일장(白日場) 15석(石) 따로 회중(會中)에 차하[上下]하고, 입격유생(入格儒生)의 별방(別榜)에는 영고(營庫)에서 배상(排床)한다.

동지사(冬至使) 구청(求請) 잡물(雜物) 각사(各寺) 및 각장수처(各匠手處)에서 의례(依例)대로 본색(本色)을 상송(上送)하였는데, 근래 경관(京關)에 따라 모두 절가(折價)한 후 상사택(上使宅) 33냥 2전, 부사택(副使宅) 25냥 4전, 서장관택(書狀官宅) 16냥 3전, 합전(合錢) 74냥 9전을 매년 8월 수봉(輸捧)토록 인리(人吏) · 사령(使令)을 정하여 각택(各宅)에 수납(輸納)한다. 건량청가(乾糧廳價) 미(米) 10석(石), 태가(馱價) 미(米) 3석 10두(斗) 8도(刀)를 회감(會減)하여 차하[上下]하였으며 영관(營關)에 따라 병오년을 시점으로 3월에 수납(輸納)한다.

지지가(紙地價) 49냥 5전 각사납(各寺納).

선자가(扇子價) 17냥 5전 선장납(扇匠納).

연죽가(煙竹價) 2냥 2전 두석장납(豆錫匠納).

화철도자가(火鐵刀子價) 5냥 4푼 야장납(冶匠納).

청초가(靑靱價) 6전 4푼 초자장납(靱子匠納).

태가(馱價) 6냥 마부장무납(馬夫掌務納)

동래납(東萊納) 생저(生豬) 4구가(口) 대전(代錢) 20냥 각창(各倉) 창직처(倉直處) 수봉(收捧) 2월삭(月朔), 사영주인(使營主人) 수납가(輸納價) 미(米) 1석(石) 7두(斗)

85) 원회곡(元會穀) : 환곡(還穀) 1석(石)에 모곡(耗穀) 1두(斗) 5승(升)을 받고, 1승 5홉을 호조(戶曹)에 바치던 환곡제도(還穀制度).

86) 객사동서창유생(客舍東西唱儒生)에게 별비(別備)한 200냥의 이조(利條) 60냥으로 기유년을 시점으로 요미(料米)를 차하[上下]한 사실.

87) 호중상(呼中床) : 합격자를 불러 음식을 차린 상(床).

5도(刀)를 회감(會減)하여 차하한다.

향교(鄕校) 둔전답(屯田畝) 이전에 교임(校任)이 사사롭게 천매(擅賣)한 전(田)이 45마지기이고, 답(畝)이 52마지기였으므로 병술(1826년)에 사도(使道) 조인영(曹寅永, 1782~1850)이 임기 중에 전(錢) 600냥을 출연(出捐)하고, 안진 조종순(趙鍾淳)이 임기 중에 전(錢) 207냥을 별비(別備)하고, 교중(校中)에서도 봉면(捧免)한 강례진(講禮錢) 200냥을 합한 전(合錢) 1,007냥를 본가(本價)에 준(準)하여 환퇴(還退)한 후에 전재(前在)하였던 전답(田畝)과 함께 둔안(屯案)을 고쳐 작성하였다.

### 공방(工房)

황필(黃筆) 200병(柄) 매삭(每朔) 16병(柄) 나머지 8병(柄) 매병가(每柄價) 7푼.

백필(白筆) 100병(柄) 매삭(每朔) 8병(柄) 나머지 4병(柄) 매병가(每柄價) 5푼. 본가(本價)는 유청지지가(油淸紙地價)로 미(米) 4석(石)을 출급(出給)하며 필공(筆工)이 년례(年例)로 봉용(捧用)한다.

진묵(眞墨) 12동(同) 매삭(每朔) 1동(同), 매정가(每丁價) 4푼. 본가(本價)는 유청지지가(油淸紙地價)로 미(米) 2석을 출급(出給)하며, 경주(慶州) · 의성(義城) 영주인(營主人)이 년례(年例)로 봉용(捧用)하고 윤삭년(閏朔年)은 1동(同)을 가봉(加捧)한다.

마철(馬鐵) 60(部) 매삭(每朔) 5부(部) 매부가(每部價) 3전, 야장(冶匠)이 예납(例納)한다.

정철(正鐵) 60근(斤) 매삭(每朔) 5근(斤) 매근가(每斤價) 1전 2푼, 야장(冶匠)이 예납(例納)한다.

초석(草席) 204입[立] 봄 202입[立], 가을 202입[立] 매삭(每朔) 17입[立], 매입가[(每立價)] 3전, 각제보(各堤洑)의 임장(任掌)이 예납(例納)한다.

송판(松板) 관자전(板子塵)에서 매삭(每朔) 1입[立]씩 예납(例納)하였으나, 지금은 관청(官廳)에서 무용(貿用)하며, 매입가[每立價] 2전 5푼씩.

점석(簞席) 석전인처(席塵人處)에서 무용(貿用)하며 매입가[每立價] 1전 5푼씩.

추자(箒子) 해안(解顔) · 백안(百安) 2장[兩場]의 감고처(監考處)에서 매삭(每朔) 각 6병(柄)씩 봉용(捧用)하고 하기(下記)하지 않았는데, 별성행차(別星行次) 때 소용(所用)되는 남초(南草)는 절초전인처(折草塵人處)에서 별봉(別封)으로 진배(進排)한다.

영부장원(營府牆垣) 개복(蓋覆)하는 송정(松丁)은 20면(面) 송정감고처(松丁監考處)에서 각(各) 2태대(駟代) 6전씩을 봄가을로 수봉(收捧)하고 영부(營府)의 신연(新延) 때는 별봉(別捧)한다.

행보석(行步席) 3봉대(烽臺) 감고처(監考處)에서 각(各) 100과(把)씩 객사도방자(客舍都房子)가 봄가을로 분봉(分捧)한다.

### 상정질(常定秩)

청서필(靑鼠筆) 백필(白筆)과 서로 대체(代替)한다. 청서습자필(靑鼠習字筆)은 황필(黃筆)과 서로 대체(代替)한다.

황삼동필(黃三同筆) 매병(每柄) 황필(黃筆) 2병(柄)씩으로 한다. 습자필(習字筆) · 계필(啓筆)도 같다.

백삼동필(白三同筆) 매병(每柄) 백필(白筆) 2병(柄)으로 한다.

파필(破筆) 매병가(每柄價) 3푼 5리.

파묵(破墨) 매정가(每丁價) 2푼.

촉룡(燭籠) 1쌍(雙) 청문사(靑紋紗) 1척(尺), 홍문사(紅紋紗) 1척. 매척가(每尺價) 6전.

면석(面席) 1건(件) 선면주(縑綿紬) 5척(尺), 단석(單席) 1건 선면주(縑綿紬) 2척(尺)<sup>88)</sup> 5촌(寸), 면주(綿紬) 매척가(每尺價) 1전, 백목(白木) 매척가(每尺價) 5푼.

독석(篤席) 1건 선면주(縑綿紬), 백목(白木) 2척(尺) 5촌(寸)<sup>89)</sup>, 방석(方席) 1건 선면주(縑綿紬), 백목(白木) 1척(尺) 5촌(寸). 단목(丹木) · 백반(白礬) 매근가(每斤價) 8전 입염차(入染次).

안식(案息) 1좌(坐) 외공다홍대단(外工多紅大緞) 4척(尺) 매척가(每尺價) 1냥 5전 내공백목(內工白木) 4척(尺). 각(各) 해당(該當) 전인처(塵人處)에서 무용(貿用)하며 공사(公事)가 아니면 본가(本價)를 책봉(責捧)할 수 없다.

화면석(花面席) 3건(件) 매잇가[每立價] 4전, 화단석(花單席) 3건(件), 화독(花篤) 3건(件) 매잇가[每立價] 5전, 화방석(花方席) 3건(件) 매잇가 3전 5푼, 백문석(白紋席) 13일 매잇가[每立價] 3전 등은 신연(新延) 때 포지(鋪陳)하며 합가 10냥 3전 5푼을 인리(人吏) · 사령(使令)에게 출급(出給)하여 무납(貿納)토록 하고 첨가전(添價錢) 10냥은 이청(吏廳)에서 담당(擔當)한다.

화면석(花面席) 2일 매잇가[每立價] 5전.

화단석(花單席) 2일 매잇가[每立價] 8전.

화독석(花篤席) 2일 매잇가[每立價] 7전.

화방석(花方席) 2일 매잇가[每立價] 4전.

대완골석(大莞骨席) 45일[立] 객사대청(客舍大廳) 지의가(地衣價) 미(米) 3석(石)을 돛자리 만드는 읍[席産邑]에 출급(出給)하고 영주인(營主人)이 30읍(邑) 무납(貿納)토록 관하(官下)한다.

화문석(花紋席) · 세완골석(細莞骨席) · 대완골석(大莞骨席)은 신연(新延) · 도시(都試) · 습조(習操)가 아니면 모두 시가(時價)에 따라 무용(貿用)하고, 각양 철물(鐵物)은 대소(大小)를 따지지 않고 4분의 1탄합(炭合), 3분의 1탄합(炭合) 혹은 절반탄합(折半炭合)으로 철(鐵) 매근(每斤) 탄(炭) 3두(斗) 정철(正鐵)의 근량(斤兩)을 입하(入下)하였는데, 근래 야장(冶匠)의 등장(等狀)에 따라 일체(一體)를 절반(折半)으로 차하[上下]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한다.

5촌정(寸釘) 매단가(每丹價) 4전 4촌정(寸釘) 3전 5푼, 2촌정(寸釘) 1전, 1촌정(寸釘) 3푼.

88) 2척(尺) : 원문(原文)에는 ‘촌(寸)’으로 기재 되었으나 ‘척(尺)’으로 해석한다.

89) 5촌(寸) : 원문(原文)에는 ‘척(尺)’으로 기재 되었으나 ‘촌(寸)’으로 해석한다.

축전자(燭剪子) 매개가(每介價) 1전 5푼.  
 환(環) 매개가(每箇價) 4푼 소(小) 3푼.  
 동환(同環) 5푼 소(小) 4푼.  
 축각지(燭角之) 매개(每介) 5푼.  
 돌작구(扠作九) 매개가(每箇價) 2푼 대(大) 3푼, 소(小) 1푼.  
 족철(足鐵) 매개(每介) 3푼.  
 식도(食刀) 매병개가(每柄箇價) 1전 대(大) 2전, 중(中) 1전 5푼.  
 족철통(足鐵桶) 매개(每介) 5푼.  
 필연도(筆硯刀) 매병가(每柄價) 2전 5푼 소(小) 2전.  
 통철(通鐵) 매개(每介) 1전.  
 화철(火鐵) 매개가(每箇價) 1전.  
 마안선후거리(馬鞍先後巨里) 매부(每部) 4냥.  
 화시저(火匙箸) 매우가(每偶價) 2전.  
 등자두갑철(鎧子頭甲鐵) 매쌍가(每雙價) 4전.  
 시촉(矢鏃) 매개가(每箇價) 2푼 후(鏃) 3푼, 촉(鏃) 2전.  
 철침(鐵枕) 매좌가(每坐價) 8전.  
 농장식(籠粧飾) 매태가(每駄價) 1냥 장롱(粧籠) 1냥 5전, 소농(小籠) 8전.  
 소거(小鉅) 매병가(每柄價) 3전.  
 부담기장식(扶擔機粧飾) 매좌가(每坐價) 1냥.  
 소집계(小執械) 매병가(每柄價) 2전 5푼.  
 거촉롱장식(舉燭籠裝飾) 매병가(每柄價) 7푼.  
 소작구(小斫九) 매병가(每柄價) 2전 5푼 가구(加具) 5전.  
 사우설합(四隅舌盒) 매좌가(每坐價) 8전 월설합(月舌盒) 6전.  
 대갈마치(代葛磨治) 매쌍가(每雙價) 2전 5푼.  
 축대화로(燭坵火爐) 회판(灰板)과 함께 4푼.  
 탄합(炭合) 외 타철(他鐵)의 물량(物量)을 마땅히 마련(磨鍊)하고 첨철(尖鐵)은 절반탄합(折半炭合)으로 시행(施行)한다.

### 예하(例下)

순영납(巡營納) 고모(羔毛) 4냥 10월삭(月朔).  
 병영납(兵營納) 고모(羔毛) 2냥 5전 2월삭(月朔).  
 장생전납(長生殿納) 고수대(羔鬚代) 1냥 9전 5전 진성채(陳省債).  
 호조납(戶曹納) 고모대(羔毛代) 2냥 5전.  
 세폐초석(歲幣草席) 6잇대[立代] 1냥 8전 각창(各倉) 고자납가조(庫子納價租) 회감(會減) 3월삭(月朔).  
 방물결과초석(方物結裏草席) 3잇[立] 9전 관하(官下) 3월삭(月朔).  
 상납별등숙마(上納別等熟麻) 매근(每斤) 정비전(每斤情費錢) 1전과 진성채(陳省債) 5

전은 근수(斤數)대로 3분의 1은 용연사(龍淵寺) 당납(當納), 3분의 2조(條) 및 정전(情錢)은 동화사(桐華寺) 당납(當納).

3영(營) 신연(新延) 때 용입(用入)하는 철물(鐵物) 등가(等價)는 견역소(鑄役所)에서 차하(上下)하여 예(例)대로 거행(舉行)토록 하고, 진영(鎭營) 신연(新延)은 도배지(塗褙紙) 10속(束)을 각사(各寺)에서 비대(備待)하고 포진가(鋪陳價) 20냥 4전은 12읍(邑) 영주인(營主人)이 당납(當納)한 후 가미(加米)와 함께 회감(會減)한다.

영문각처수리(營門各處修理) 성내(城內)의 민인(民人)이 거행(舉行)하였으나, 임오년 정승대감 김상철(金尙哲)이 임기 중에 모군(募軍) 30명(名)을 설치하고 매명(每名) 매삭(每朔) 2냥씩 영(營)에서 겸제고(兼濟庫)에 차하[上下]하여 거행(舉行)토록 하고, 민역(民役)은 영구히 혁파(革罷)하였다.

금호진(琴湖津) 조교미(造橋米) 8석(石) 6두(斗) 2도(刀) 2홉[습] 5샤[夕] 내에서 병인(1806년)에 사도(使道) 김희순(金羲淳, 1757~1821)이 임기 중에 미(米) 84석(石) 2두(斗) 영(零)을 별비(別備)하여 칠곡부(漆谷府)에 급부(給付)하고 전체를 취모(取耗)하여 매년(每年) 서중(西中) 민인(民人)에게 출급(出給)하여 목교부비(木橋浮費)에 충당토록 하였다. 또 기축년에 사도(使道) 정기선(鄭基善)이 임기 중에 민장(民狀)에 따라 본읍(本邑) 소재(所在)의 별회(別會)의 피모(皮牟) 중 18석(石) 14두(斗) 4도(刀) 3홉[습] 7샤[夕]를 식년례(式年例)로 가급(加給)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作成)하였다.

### 신연수리색(新延修理色)

화면석(花面席) 9건 매일가[每立價] 4전.

화단석(花單席) 9일 매일가[每立價] 5전.

화독석(花篤席) 7일 매일가[每立價] 5전, 화방석(花方席) 15일[立] 매일가[每立價] 3전 5푼, 백문석(白紋席) 18일[立] 매일가[每立價] 3전, 화안식(花案息) 4좌(坐) 매좌가(每坐價) 2전, 세완골(細莞骨) 40일[立] 매일가[每立價] 4전 등의 아구(衙具) 포진(鋪陳) 합가(合價) 40냥 9전을 인리(人吏) · 사령(使令)에게 출급(出給)하여 무납(貿納)토록 하고, 첨가전(添價錢) 20냥은 이청(吏廳)에서 당납(當納)한다. 세목(細木) · 입염(入染)의 등물(等物)은 각(各) 전인처(塵人處)에서 무용(貿用)한다.

초석(草席) 204일[立]은 각(各) 제보(堤洑)의 임장처(任掌處)에서 별등(別等)으로 봉상(捧上)하고, 남은 수량은 공고(工庫)로 이송(移送)한다. 매일[每立] 4전씩 대봉(代捧)한다.

행보석(行步席) 300과(把)는 3봉대(烽台) 감고처(監考處)에서 별등(別等) 봉용(捧用)하고 대봉(代捧)한 고삭(藁索)은 수리(修理)에 입용(入用)토록 한다.

내아(內衙) 상철화로(上鐵火爐) 1좌(坐), 오자(鑿子) 1병(柄) 등은 각북(角北) 무쇠점[水鐵店] 호수(戶首)가 예납(例納)하였으나 쇠점[鐵店]이 그만둔 뒤로는 시행하지 않는다.

마석(磨石) 1좌(坐), 세답(洗踏) 1좌(坐)는 도석수(都石手)가 예납(例納)한다.

유사(柳筥) 1부(部), 행담(行擔) 1부(部), 고리(古里) 1부(部), 사자(篩子) 1부(部), 유기(柳箕) 1부(部) 등은 유기장(柳器匠)이 예납(例納)한다.

인도(引導) 1병(柄), 전도(剪刀) 1부(部), 식도(食刀) 1병(柄), 구철(灸鐵) 1거리(巨里), 화시저(火匙箸) 1우(隅), 진금(鎭金) 4부(部), 부자(釜子) 1병(柄), 검자(鎌子) 1병(柄), 서자(鋤子) 1병(柄), 작도(斫刀) 1병(柄), 광이[光伊] 1병(柄), 소가라(小加羅) 1병(柄), 살피[沙乙皮] 1병(柄), 동헌상화시(東軒上火匙) 1우(隅), 진금(鎭金) 2부, 책방상화시저(冊房上火匙箸) 1우(隅), 진금(鎭金) 1부 등의 합철가(合鐵價) 조(租) 3석(石) 5두(斗)를 예(例)에 따라 조납(造納)토록 야장(冶匠)에게 출급(出給)한다.

아사수리(衙舍修理) 신연(新延)의 품목(稟目)에 따라 제송(題送)<sup>90</sup>하고 수의(隨宜) 거행하며 지미(地尾) · 급목(及木) · 철정(鐵釘) 등 잡물(雜物)은 소입(所入)에 따라 무용(貿用)한 후 하기(下記)한다. 토역(土役)은 모군(募軍)으로 거행한다.

내아행랑(內衙行廊) 10칸의 연주목(椽柱木) 70개가(箇價) 5냥, 차양(遮陽) 8잇가[立價] 2냥 4전은 견역소(鑄役所)에서 차하하고 평시 해마다의 수보(修補)는 공고(工庫)에서 거행하며 관하(官下)한다.

마골(麻骨) 6태(駄), 세승(細繩) 105사리(沙里), 산마(山麻) 32근(斤), 숙조소(熟條所) 6거리(巨里) 등은 각사(各寺)에서 예납(例納)한다.

대소식정(大小食鼎) · 사기(沙器) 등물(等物)은 공고자(工庫子)가 비납(備納) 후 하기(下記)한다.

## 공고(工庫)

읍장(邑場) 2월부터 7월 까지 매장(每場) 각 1냥 5전 매삭(每朔) 18냥.

화장(花場) 8월부터 정월까지 매장(每場) 각 2냥 매삭(每朔) 24냥.

합세전(合稅錢) 252냥을 양장(兩場)의 감고(監考)가 예납(例納)하고, 만약 비가 내려 정시(停市)하였고 보고하면 첨량(忝量)하여 감급(減給)한다.

풍각장(豐角場) 기축년 민원(民願)에 따라 중설(重設)하고 3년이 지난 임진년을 시점으로 매장(每場) 세전(稅錢)을 2전씩 수봉(收捧)하였으나, 경자년 청도(淸道) 대전장(大田場)이 대설(對設)된 뒤 동(同) 세전(稅錢)을 감급(減給)하였다.

황밀(黃蜜) 2월부터 7월까지 매삭(每朔) 1근(斤), 8월에서 정월까지 매삭(每朔) 4근(斤). 합 30근(斤) 매근가(每斤價) 8전을 지묵감돌전(紙墨甘咄塵)에서 예납(例納)하며, 이전에는 42근을 봉상(捧上)하였으나 경진년의 정장(呈狀)에 따라 감급(減給)한다.

남초(南草) 90근(斤). 매삭(每朔) 7근 8냥 매근가(每斤價) 2전 5푼을 절초장(折草匠)이 예납(例納)한다.

연죽(煙竹) 12개(箇). 매삭(每朔) 1개 매개가(每箇價) 1전을 두석장(豆錫匠)이 예납한다.

마혜(麻鞋) 12부(部). 매삭(每朔) 1부(部) 매부가(每部價) 1전, 초혜(草鞋) 60부(部)

90) 제송(題送) : 제사(題辭)를 보내는 것.

매삭(每朔) 5부(部) 매부가(每部價) 3푼, 세승(細繩) 120사리(沙里) 매삭(每朔) 10사리(沙里) 매사리가(每沙里價) 3푼 30파(巴)로 만든 것 등을 용연사(龍淵寺)가 예납한다. 각사(各寺) 예납고조소(例納藁條所)에서 매삭(每朔) 20사리씩은 하기(下記)하지 않았으나, 축상자(燭箱子) 매부가(每部價) 3푼은 마조소(麻條所)에서 매거리가(每巨里價) 2전을 봉용(捧用)하고, 절선(節扇) · 세찬(歲饌)을 봉과(封裹)할 때는 농상자(籠箱子) · 세승(細繩) 등물(等物)을 소입(所入)에 따라 봉용하고 만약 가하(加下)되면 본가(本價)로 지급[上下]한다. 무신년을 시점으로 동화사(桐華寺)는 수릉(綏陵)의 속사(屬寺)이므로 모두 견감(蠲減)하여 다시 절목(節目)을 작성한다.

농(籠) 매부가(每部價) 6전.

상자(箱子) 매부가(每部價) 2전 5푼.

축상자(燭箱子) 매부가(每部價) 1전 2푼.

무지상자(無地箱子) 매부가(每部價) 8푼 대(大) 1전 2푼.

고리(古里) 24부(部) 매삭(每朔) 2부(部).

행담(行擔) 24부(部) 매삭(每朔) 2부(部). 유기장(柳器匠)이 예납(例納)한다.

사자(篩子) 12부(部) 매삭(每朔) 1부(部) 상자(箱子) · 유기(柳器) 서로 대체(相替代)하며 유기장(柳器匠)이 예납(例納)한다.

이상 세전(稅錢) 및 각종(各種)은 윤삭년(閏朔年)이면 1삭(朔)을 가봉(加捧)한다.

대정(大鼎) 2좌(坐) 봄 1좌(坐), 가을 1좌(坐) 매좌가(每坐價) 5냥.

소정(小鼎) 2좌(坐) 봄 1좌(坐), 가을 1좌(坐) 매좌가(每坐價) 3냥.

지초(芝草) 2두(斗) 봄 1두(斗), 가을 1두(斗) 매두가(每斗價) 5두(斗), 북촌(北村)의 점한(店漢)이 예납하고 만약 가하(加下)되면 매두가(每斗價)의 절반을 보급(補給)한다.

홍화(紅花) 2두(斗) 봄 1두(斗), 가을 1두(斗) 매두가(每斗價) 5냥, 무녀장무(巫女掌務)가 예납(例納).

우피(牛皮) 4영(令) 봄 2영(令), 가을 2영(令) 매령가(每令價) 1냥, 대동(大同) 고지기[庫子]가 괘포(掛脯)할 때 예납. 피장처(皮匠處)에서 봉용(捧用)하게 되면 매령가(每令價) 1냥 5전.

목화(木花) 40근(斤) 영(零). 관둔전(官屯田) 수세(收稅)할 때. 해마다 같지 않음. 기해년 전폐(田廢) 후로는 결화(結禾)하지 않음.

사병단지(沙瓶丹之) 300개(箇) 매삭(每朔) 25개(箇) 매개(每箇) 3푼, 읍장(邑場)의 감고(監考)가 예납(例納)한다.

### 상정질(常定秩)

목화(木花) 매근(每斤) 씨를 제거하여[作去核] 4냥을 무녀장무(巫女掌務)가 작납(作納).

유우피(油牛皮) 매령(每令)에 참기름[眞油] 2되[升]를 바른 작입조(作入條).

달애피(達愛皮) 매령(每令)에 참기름[眞油] 3되[升]를 바른 것. 동유차(凍油次) 들기름[法油] 3되[升].

두석장식(豆錫粧飾) 매개가(每介價) 2냥 3전, 매냥중가(每兩重價) 1전 4푼 4리. 근

례(近例)는 매근 2냥 8전 8푼, 병(并) 탄합(炭合).

자물쇠[鎖金] 매근중가(每斤重價) 1냥 9전 8푼, 매냥중가(每兩重價) 1전 2푼 4리.

정철마련(正鐵磨鍊成器) 매근중가(每斤重價) 8전, 매냥가(每兩價) 5푼 4푼 탄합(炭合),

근례(近例) 매근(每斤) 2냥 4전 병(并) 탄합(炭合).

마련장식(磨鍊粧飾) 매근중가(每斤重價) 6전 매냥중가(每兩重價) 3푼 8리 3분의 1은 탄합(炭合).

구례(舊例)의 각양(各樣) 장식(粧飾)은 정가(定價)가 있었으나 근례 장수(匠手)의 정장(呈狀)에 따라 대소근냥(大小斤兩)을 따지지 않고 유철(鑰鐵) 매근(每斤) 성기공가(成器工價)와 주기공가(鑄器工價)를 차하[上下]한다. 배상(排床)에 소용(所用)되는 대 · 중 · 소반(大中小盤), 백사기(白沙器) 등물가(等物價) 전(錢) 34냥 9전 5푼을 신연(新延) 초(初)에 호고자(戶庫子)에게 출급(出給)하고 임기 중에 제한하여 무용(費用)토록 한다. 화기(花器) 14냥 6전 5푼은 매번 영문신연(營門新延) 때 또한 차하[上下]한다. 교구(矯球)에서 40냥을 매년(每年) 첨보(添補)한다.

### 절가질(折價秩)

칠(漆) 매합가[每合價] 1냥 3전. 황칠(黃漆)은 시가(時價)를 따른다.

당사(唐絲) 매사리가(每沙里價) 1전.

두석(豆錫) 매근가(每斤價)<sup>91)</sup> 1냥 6전.

명주실[眞絲] 매냥가 8전.

삶은 명주실[熟絲] 1냥 8전,

동철(銅鐵) 매근가(每斤價) 1냥 6전.

승사(繩絲) 매냥가(每兩價) 7푼.

유철(鑰鐵) 매근가(每斤價) 1냥 8전.

생사(生絲) 매냥가(每兩價) 3전.

천은(天銀) 시가(時價)를 따른다.

세초대(細綃帶) 매거리(每巨里) 1냥 5전.

오동(烏銅) 매냥가(每兩價) 4냥. 시가(時價)를 따르기도 한다.

자지광대(紫芝廣帶) 1거리(巨里) 4냥.

백동(白銅) 매냥가(每兩價) 3전.

자지편대(紫芝片帶) 3냥.

유랍(鑰鐵) 매냥가(每兩價) 2전.

백소중대(白小中帶) 매거리(每巨里) 술이 있으면[有鬚] 1냥 5전, 술이 없으면[無鬚]<sup>92)</sup> 1냥 2전.

백동오동수복연죽(白銅烏銅壽福煙竹) 매개(每箇) 8전.

91) 매근가(每斤價) : 원문은 매척가(每斥價)로 기재되었으나 ‘척(斥)’이 ‘근(斤)’의 형와(形訛)로 간주(看做)하고 근(斤)으로 바꾼다. 아래의 동철(銅鐵) · 유철(鑰鐵) 조(條)도 이와 같다.

92) 술이 없으면[無鬚] : 원문에는 ‘無須’로 기재되었으나 문맥상 ‘須’를 ‘鬚’로 통일하여 ‘無鬚’로 기술한다.



잡색편대(雜色片帶) 매거리(每巨里) 1냥 2전.  
 백동은태극연죽(白銅銀太極煙竹) 매개(每箇) 7전.  
 동대(同帶) 매거리(每巨里) 1냥.  
 백동장항은삼동연죽(白銅長項銀三同煙竹) 매개 5전 8푼.  
 사선죽(紗扇竹) 매쌍가(每雙價) 4전 2푼.  
 백동상연죽(白銅常煙竹) 매개(每箇) 5전.  
 팔지영(八脂纓) 매거리가(每巨里價) 2전 5푼.  
 두석은연죽(豆錫銀煙竹) 매개(每箇) 1전 5푼.  
 망영(網纓) 매거리가(每巨里價) 1전 3푼.  
 두석은수복연죽(豆錫銀壽福煙竹) · 두석은태극연죽(豆錫銀太極煙竹) 매가(每價) 4전.  
 낭서가(囊緒價) 2전 5푼. 칼끈값[刀纓價] 2전.  
 두석은삼동연죽(豆錫銀三同煙竹) 매개가(每箇價) 1전 8푼. 향영가(香纓價) 2전 5푼.  
 두석은항연죽(豆錫銀項煙竹) 매개가(每箇價) 1전 3푼. 녹피(鹿皮)는 시가(時價)를 따  
 른다.  
 정철장항은삼동연죽(正鐵長項銀三同煙竹) 매개가 2전 5푼. 마피(馬皮) 매령가(每令  
 價) 1냥 5전.  
 관초(官綃) · 왜단(倭緞) 매촌가(每寸價) 3전.  
 서피(黍皮) 매령가 1냥 청서피(靑黍皮)는 같은 값, 자염가(紫染價) 8전, 장피(獐皮) 매령가 9  
 전 자염가(紫染價) 3전 등은 매령(每令)을 8조(條)로 만든다.  
 공단(貢緞) 매촌가(每寸價) 2전.  
 유우피(油牛皮) 매령가(每令價) 1냥 4전 4푼 4리.  
 명견(明絹) 매촌가(每寸價) 6푼.  
 장모(獐毛) 매근가(每斤價) 1전 5푼.  
 생초(生綃) 매촌가(每寸價) 5푼. 화주(禾紬) 매척가(每尺價) 4전 입염(入染) 동(同), 대  
 구피(大狗皮) 매령가(每令價) 1전 5푼, 소구피(小狗皮) 매령가(每令價) 1전 잡구피(雜  
 狗皮) 동(同) 등은 자염가(紫染價) 3전 흑염가(黑染價) 2전.  
 모단(毛緞) 매척가(每尺價) 2전 5푼 자색(紫色) 3전.  
 목화(木靴) 매부가(每部價) 3냥.  
 남면주(藍綿紬) 매척가(每尺價) 2전 5푼 송목(松木) 3전.  
 유목화(油木靴) 매부가(每部價) 2냥.  
 흑삼승(黑三升) 매척가(每尺價) 2전 5푼 백색(白色) 2전.  
 당혜(唐鞋) 매부가(每部價) 1냥 3전 아혜(兒鞋) 1냥.  
 주홍(朱紅) 매냥가(每兩價) 1냥.  
 분토혜(紛吐鞋) 매부가(每部價) 1냥 2전.  
 어교(魚膠) 매냥가(每兩價) 5푼.  
 운혜(雲鞋) 매부가(每部價) 1냥.  
 진분(眞粉) 매냥가(每兩價) 5푼.

비혜(鼻鞋) 매부가(每部價) 1냥.  
 매금(黓金) 매냥가(每兩價) 3푼.  
 대사옹(大槎瓮) 매좌가(每坐價) 4전 중(中) 2전 5푼, 소(小) 1전 5푼.

### 장감고(場監考)

대옹(大瓮) 매좌가(每坐價) 4전 중(中) 3전, 소(小) 2전.  
 오병(烏瓶) 매개가(每箇價) 5푼.  
 대증(大甑) 매좌가(每坐價) 3전 중(中) 2전 5푼, 소(小) 2전.  
 화로(火炉) 매개가(每箇價) 5푼.  
 대대어(大代於) 매좌가(每坐價) 2전 중(中) 1전 5푼, 소(小) 1전 3푼.  
 사구(沙口) 매개가(每箇價) 3푼.  
 목통(木桶) 매좌가(每坐價) 1전 7푼.  
 독시발(斗時發) 매개가(每箇價) 2푼.  
 대병(大瓶) 매개가(每箇價) 1전 5푼.  
 목통(木桶) 매좌가(每坐價) 1전 7푼.  
 벌조지(伐助只) 매개가(每箇價) 8푼.  
 성자(省子) 매개가(每箇價) 5푼.  
 사분(沙盆) · 토정(土鼎) 매좌가(每坐價) 8푼.  
 우길마(牛吉麻) 매좌가(每坐價) 3전.

### 승발(丞發)

전관미(傳關米) 매삭(每朔) 2석(石) 5두(斗)씩 수래(收來)하여 대소(大小)의 공사(公事)에 급세(給賈)토록 전치(傳置)하고 각면주인(各面主人)은 나뢰(羅牢) 중에 택차(擇差)하여 거행(舉行)한다.

### 대동색(大同色)

저치미(儲置米)는 대동부(大同夫)의 신결(新結) 중미(中米)로 상하납(上下納)하고, 영부수미(營府需米)의 마련(磨鍊)은 여조(餘條)에서 구획(區劃) 후 유청지지가미(油淸紙地價米) 50석(石)과 전세출공목태가미(田稅出公木駄價米) 일체와 함께 수봉(收捧)하여, 유청지지가미(油淸紙地價米)는 관납(官納)하고 공목가미(公木價米)는 해색(該色)이 출급하며, 재미(在米)는 진상하고, 잡물태가(雜物駄價) 및 회감(會減)한 수용(需用)은 함께 모두 차하[上下]하며 등급(等級)에 따라 영감(營勘)한다.

### 진상(進上)

왕대비전(王大妃殿) 탄일물선(誕日物膳) 백지(白紙) 2속(束) 정월 4일 봉(封). 정월 삭선(正月朔膳) 초석(草席) 12일[立], 백지(白紙) 2속(束) 6장(張) 정월 10일 봉.

세자궁(世子宮) 탄일(誕日) 백지(白紙) 2속(束), 줄바[條所] 4거리(巨里) 정월 10일 봉(封). 2월삭선(月朔膳) 백후지(白厚紙) 10장(張).

대비전(大妃殿) 탄일(誕日) 백지(白紙) 2속(束) 정월 15일 봉(封). 3월삭선(月朔膳) 백후지(白厚紙) 6장(張), 유후지(油厚紙) 6장(張) 2월 10일 봉(封). 단오물선상자(端午物膳箱子) 5부(部), 백목(白木) 3척(尺), 백후지(白厚紙) 15장(張) 4월 봉(封).

대전(大殿) 탄일물선(誕日物膳) 백목(白木) 2필(疋) 14척(尺) 7월 1일 봉(封). 8월삭선(月朔膳) 줄바[條所] 4거리(巨里) 7월 10일 봉(封).

중궁전(中宮殿) 탄일물선(誕日物膳) 백지(白紙) 2속(束), 동지물선(冬至物膳) 생치(生雉) 9수(首) 가(加) 1수(首), 줄바[條所] 5거리(巨里) 10월 일 봉(封). 12월삭선(月朔膳) 생치(生雉) 3수(首), 백지(白紙) 2속(束) 8장(張), 11월 10일 봉(封).

진상(進上)하는 생치(生雉)는 원정례(元定例)를 따지지 않고 별봉(別封)하여 발송하므로 산저면(山底面)으로 하여금 군민(軍民)에게 납봉을 재촉한 한 후 본가(本價)를 출급(出給)토록 할 것. 편포(片脯)의 진상(進上)을 근래 그만둔 지 오래되었으나 불시에 거행하게 되면 회감(會減)한다. 가미수(價米數)는 본래부터 영성(零星)하였으므로 매(每) 3좌(坐)에 첨가(添加)하여 전례대로 시복호(柴復戶) 20부(夫)씩을 획부(劃付)하였으니, 민폐를 염려하여 생치(生雉)는 해색(該色)이 무납(貿納)하고 산저면(山底面)을 따지지 말 것.

### 잡물가(雜物價)

무명[木] 매필(每疋) 미(米) 8두(斗).

백후지(白厚紙) 매장(每張) 미(米) 5승(升).

유후지(油厚紙) 매장(每張) 미(米) 2승(升) 5홉[合].

백지(白紙) 매속(每束) 미(米) 2두(斗).

황촉(黃燭) 매병(每柄) 미(米) 4승(升).

인농(勳籠) 매부(每部) 미(米) 1두(斗) 진죽인롱(箭竹勳籠) 3두(斗).

상자(箱子) 매부(每部) 미(米) 3두(斗).

초석(草席) 매잎[每立] 미(米) 1두(斗).

줄바[條所] 매거리(每巨里) 1두(斗) 5승(升).

생건치(生乾雉) 매수(每首) 미(米) 3두 4승(升).

백자(栢子) 매두(每斗) 미(米) 1두(斗) 4홉[合].

괘짖[檣子] 매부(每部) 미(米) 3두 5승(升).

진금(鎭金) 매개(每箇) 미(米) 1두(斗).

인삼(人蔘) 매전(每棧) 미(米) 6두(斗).

태가(馱價) 마(馬) 매필매식(每匹每息) 미(米) 2두(斗) 5승(升).

기마(騎馬) 매필매식(每匹每息) 미(米) 2두(斗).

부지군(負持軍) 매명매식(每名每息) 미(米) 1두(斗) 2승(升) 5홉[合].

순영아록위(巡營衙祿位) 미(米) 20석, 본부아록위(本府衙祿位) 미(米) 16석(石). 이는 학위(學位) · 역공(驛公) · 수구(須俱)와 더불어 대동부(大同夫)이지만 학위(學位) · 역공(驛公)은 원래부터 전세(田稅)의 출역(出役)에는 거론되지 않았고, 아록(衙祿) · 공수(公須)는 이미 원작부(元作夫)에 들어 처음부터 구별이 없어 세조(稅條)의 통동(通同)이라 말하는바 전세를 마련하는 부(夫)의 당연한 역(役)이므로 이로써 불감(不減)하였다. 이에 보역(補役)하는 은전(恩典)으로 위의 쌀을 전세(田稅)에 이봉(移捧)하였으니 하나는 영납(營納)이고 다른 하나는 관납(官納)이다.

### 호적색(戶籍色)

호총(戶摠) 앞에 보인다.

매식년(每式年) 인구미(人口米) 매구(每口) 4홉[合].

전관미(傳關米) 대호(大戶) 3승(升), 중호(中戶) 2승(升), 소호(小戶) 1승(升).

행적지가조(行籍紙價租) 대호(大戶) 9승(升), 중호(中戶) 6승(升), 소호(小戶) 4승(升).

서가조(書價租) 매호(每戶) 5홉[合]씩을 민렴(民斂)하여 수용(需用)하였으나, 을축년 사도(使道) 김희순(金義淳)이 임기 중에 별비(別備)한 전(錢) 1,000냥과 남창(南倉)에 대하(貸下)한 전 2,000냥을 합한 3,000냥을 각면(各面)에 분표(分俵)하고, 익년(翌年) 8월까지 3할의 이자로 불린 본리(本利)를 합한 전(錢) 3,900냥 내에서, 846냥은 정묘식(丁卯式) 초단(草單) 감채조(勘債條)로 병인년 8월 일에 차하[上下]하고, 재전(在錢) 3,054냥을 또 익년(翌年) 8월까지 취식(取殖)하여 이전(利錢) 916냥 2전을 가입(加入)한 정묘년 합전(合錢) 3,970냥 2전 내에서, 540냥은 인구미(人口米) 180석가(石價)로 앞의 적비(籍費)를 뒤에 차하[上下]하였으므로 병인년 봄에 예대(預貸)하여 환래(還來)한 것이 65석(石)이었다. 정묘년 봄에 또 100석(石)을 대하(貸下)하여 잡비(雜費)에 용입(容入)하여 때에 따라 수용(需用)하고 당년 8월에 이 가전(價錢)을 지급하니 매석(每石) 3냥씩 65석이 비축(備蓄)되고 양년(兩年)의 모조(耗租) 100석(石)이 비축(備蓄)되어 1년의 모조(耗租)를 비납하여 410냥을 환래(還來)토록 하였다. 행적조(行籍租) 410석가(石價)는 앞의 조[右租] 고마고(雇馬庫)에 봉상(捧上)하였으므로 269석(石)은 색락조(色落條)와 함께 해고(該庫)에 이송(移送)하였다. 141냥은 지지(紙地) · 서가조(書價條)이고, 적색(籍色)의 차지(次知)는 272냥 8전이며, 전관미(傳關米) 90석(石) 14두가(斗價)는 부창(府倉)에 이송하였으며, 100냥은 적색(籍色)의 요뢰조(聊賴條)이다.

매식(每式) 응하(應下)를 합한 전(錢) 2,168냥 8전에 초단감채(草單勘債)를 아우른 재전(在錢) 2,647냥 4전을 해마다 생식(生殖)하여 매식적비(每式籍費)를 예(例)에 따라 차하[上下]하고 남창전(南倉錢) 2,000냥은 을해년 까지 필보(畢報)하고, 여전(餘錢)은 병자년부터 병술년까지 한꺼번에 논을 사서 치계둔(雉鷄屯)의 예(例)에 따라 수세(收稅)하고, 그 답세(畓稅)로 적비(籍費)에 수용(需用)할 것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였다. 당년(當年)에 이르러 조(趙) 안전(案前)께서 소목[燒木]의 방급

(防給)을 염려하여 공전(公錢)을 필보(畢報)하고, 10년을 기한으로 다시 염산(斂散)하여 마침내 정유년에 비로소 매답(買畝)을 마치니 전후(前後)로 사들인 논의 본전(本錢) 합(合)이 10,718냥 9전 2푼이 되어, 그 3년의 세입(稅入)을 헤아려보니 충분히 식년(式年)의 응비(應費)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추등(秋等) 소목(燒木)의 여조(餘條)를 다음 해 무술년을 시작으로 방급(防給)하였다.

원전변(原錢邊) 이 가운데 앞서 남창(南倉)에 대래(貸來)한 전(錢) 5,000냥 및 계유년에 청득(請得)한 도시전(都試錢) 2,000냥은 차차 환납(還納)토록 하여 20년을 기한으로 무오년까지 필보(畢報)하고, 무술년 이후에 재전(在錢)이 5,000냥이 되어 각면(各面)에 분표(分俵)하고 3할의 이자로 불러 매년(每年) 이전(利錢) 1,500냥으로 각면(各面)의 민역(民役)에 방급(防給)하는 것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였다.

각사면(角四面) 연역가(煙役價) 매호(每戶) 모(牟) 1두(斗)씩, 조(租) 1두(豆) 5승(升)씩을 본창(本倉)에서 봉사하는 것이 예(例)가 되어 관용(官用)하고 그 중 반호(班戶) 및 과잔호(寡殘戶)는 함께 감급(減給)하여 조(租)가 128석, 모(牟)가 805석(石) 3두(斗)였는데, 무술년 안전 정시용(鄭始容)이 임기 중에 민장(民狀)에 따라 조(租) 12석(石), 모(牟) 6석(石) 10두(斗)씩 감급하였는데, 무신년 식전(殖錢)과 방급(防給)은 이방장(吏房掌)에 보인다.

각면의 생산(生産) · 물고(物故)는 이래이거(移來移去)하여 삭말(朔末)에 성책(成冊)하여 5월과 8월에 두 차례 수봉(收奉)하고, 10월삭(月朔)에 순영(巡營)에 수보(修報)하였으며, 감채(勘債)는 대면(大面) 1냥, 중면(中面) 7전, 소면(小面) 5전씩 수봉(收奉)하였다.

## 도서원(都書員)

결총(結摠) 앞에 보인다.

전결대장(田結大帳) 34권(卷).

행심(行審) 202권(卷).

수어둔(守禦屯) 전답(田畝) 30결(結) 79복(卜) 2속(束) 전(田) 매결(每結) 10냥, 답(畝) 매결(每結) 13냥. 합세전(合稅錢) 343냥 4푼 10월삭(月朔) 영릉(英陵) 마름[숨음] 수거(受去) 300냥 원상납(原上納), 43냥 4푼 태가(駄價) · 노자(路資). 전답(田畝) 소재(所在) 각초동(角初同). 수진궁(壽進宮) 둔세(屯稅) 전(錢) 8냥 9전 8푼, 마름 수거(受去) 전답(田畝) 소재(所在) 수현내(守縣內).

각면 화전세(火田稅) 144냥 1전 1푼 매부(每負) 1전씩. 49냥 1전 5푼 4월삭(月朔) 호조납(戶曹納), 30냥 8전 6푼 10월삭 순영납(巡營納), 재전 63냥 1전 관청(官廳)으로 이송(移送).

각사면(角四面) 탄시대(炭柴代) 전(錢) 400냥은 봄가을로 나누어 봉사차(奉上次) 성책(成冊)을 정리하여 보선고(補繕庫)에 이송(移送)하고, 임인년을 시작으로 소목이전(燒木利錢) 중에서 전액(全額) 방급(防給).

동서상(東西上) 대복(代卜) 45결(結). 신유년 사도(使道) 김이양(金履陽)이 임기 중에

별비(別備)한 전(錢) 500냥과 남창(南倉)에 대하(貸下)한 전(錢) 1,500을 합한 전(錢) 2,000냥을 각(各) 읍영주인(邑營主人)에게 분표(分俵)하고 3할의 이지로 불러 1,500냥으로 정묘년에 이르러 남창전(南倉錢)을 필납(畢納)하고, 3,150냥으로 신묘년 이후의 7년 대세(垓稅)를 방급(防給)하고, 재전(在錢) 1,550냥은 전례에 따라 생식(生殖)하여 영구히 방급(防給)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였는데, 가대(家垓)가 점점 많아지자 매양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계유년에 다시 청득(請得)한 영전(營錢) 1,000냥을 취식(取殖)에 첨부(添付)하고, 영전(營錢) 또한 정유년까지 필보(畢報)하게 되어 전후(前後)를 합한 재전(在錢)이 2,049냥 7전 2푼이 되어 본전(本錢)으로 만들고 그 이전(利錢) 640냥 9전 2푼으로 매년(每年) 대하(貸下)를 방급(防給)하였다. 그러나 병탈(病頽)이 생겨 조금씩 많아지더니 가대(家垓)가 점점 불어 지금은 60결(結) 81복(卜) 7속(束)이나 되어 전(錢)으로 세(稅)를 비교하면 매양 부족할까 염려되어, 동서부민(東西部民)의 등장(等狀)에 따라 사도(使道) 김세호(金世鎬)가 임기 중에 전(錢) 1,000냥을 출연(出捐)하고, 안전 임철수(林徹洙)가 임기 중에 결잉(結剩) 중 600냥을 전변(錢邊)에 급부(給付)하고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그 이전(利錢) 480냥으로 첨보(添補)하였다.

### 부창색(府倉色)

곡총(穀摠) 앞에 보인다. 환곡(還穀)의 취모(取耗)는 매석(每石)에 1두(斗)로 하였는데, 구계(龜溪) 서침(徐沉) 선생이 달성(達城)에 세거(世居)하였더니 세종조(世宗朝)에 그 땅을 바꾸고 논상(論賞)할 때 공(公)이 사양하였으나 할 수 없어 본읍(本邑)의 적모(糶耗)를 5승(升)으로 청(請)하자 마침내 이루어져 조가(朝家) 백대(百代)의 특별한 은전(恩典)이 되어, 대구(大邱)의 백성들이 그 덕을 그리워하고 숭상하여 구암서원(龜巖書院)을 창건하여 지금까지 봉향(奉享)하고 있다. 갑오년 사도 서희순(徐熹淳)이 임기 중에 전(錢) 8,200냥을 출연(出捐)하여 영저(營底)에 분표(分俵)하고 십삼(什三) 이식(利殖)으로 작곡(作穀)하여 각 그 면역가(面役價) 중에 해마다 첨모(添耗)하고, 계묘년을 시작으로 또 5승(升)을 감(減)하고 표급(俵給)하여 본전(本錢)을 탕감(蕩減)하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였으며, 조(租) 52석(石)의 기부(記付)가 원구(遠久)히 유래(流來)되었다.

회부목면(會付木綿) 12필(疋) 29척(尺) 8촌(寸) 6푼[분] 7리(里). 누상고(樓上庫)에 유치(留置).

생고(生羔) 124구(口) 부창(府倉) 50구(口), 남창(南倉) 74구(口).

생양(生羊) 33구(口) 부창(府倉).

생저(生猪) 172구(口) 부창(府倉) 21구(口), 해창(解倉) 40구(口), 각창(角倉) 41구(口), 남창(南倉) 30구(口), 하창(河倉) 40구(口).

저강(猪糠) · 양태(羊太) 매민부(每民夫) 8전씩 수봉(收捧)하였는데, 을유년 영문(營門)에서 견감(蠲減)하여 저강(猪糠)은 매부(每夫) 6전 4푼씩 봄가을로 분봉(分捧)하고, 양태(羊太)는 매부(每夫) 6전 4푼씩 춘초(春初)에 수봉(收捧).

비황조(備荒租) 16석(石) 매년 가록(加錄)하여 사사롭게 진휼(賑恤)하며 관비(官備). 소두(小豆) 1석(石) 10두(斗), 녹두(菽豆) 8두(斗), 참깨[眞荏] 2석(石) 4두(斗) 등은 봄가을로 나누어 영고(營庫)에 납봉하고, 소두(小豆) 4석(石) 7두(斗) 5도(刀), 녹두(綠豆) 2석(石) 6두(斗) 등은 봄가을로 나누어 보선고(補繕庫)에 납봉하며, 합본가(合本價) 조(租) 32석(石) 14두(斗) 7승(升) 5홉[合]을 각 고지기에게 출급(出給)하여 무납(貿納)시킨 후 따로 회하(會下)한다.

전관미 90석(石) 14두(斗) 대전(代錢) 272냥 8전을 매식적채(每式籍債)로 전중(錢中)에서 수래(受來)하여 작미(作米)하고 매삭(每朔) 미(米) 2석(石) 5두(斗)씩 승발(丞發)에게 출급하여 식과(式科)의 장적태가帳籍駄價)로 미(米) 3석(石) 7두(斗) 5승(升)을 또한 차하[上下]한다.

고조(雇租) 150석(石) 내에서 매석대(每石代) 1냥 2전, 35석(石)의 매석대(每石代) 1냥을 합한 대전(代錢) 173냥을 매년(每年) 방급(防給)하고 전중(錢中)에서 수래(受來)한 작조(作租)는 분급(分級)한 후 시가(時價)에 따라 작전(作錢)하여 100석가(石價)는 경주인(京主人)에게 출급하고, 5석가(石價)는 병영주인(兵營主人)에게 출급(出給)하고, 45석가(石價)는 동래주인(東萊主人)에게 출급(出給)하고, 내역가(萊役價) 부족조(不足條) 5석(石)은 분모조(分耗租) 중에서 차하[上下]한다.

하납태(下納太) 본래 전세(田稅)의 소출(所出)로 임신년 사도(使道) 김회연(金會淵)이 임기 중에 전(錢) 1,000냥을 출연(出捐)하여 전변(錢邊)에 급부(給付)하고 동(同) 십이(什二) 이전(利錢) 200냥 내에서 150냥을 매년(每年) 하납시(下納時)에 환태(換太)하여 100석(石)을 한도로 예대(預貸)하고 아울러 곡축(斛縮)을 고쳐 방급(防給)한 후에 이 이전(利錢)으로 매석대(每石代) 1냥 5전씩 상정례(詳定例)<sup>93</sup>에 따라 민부(民夫)에게 분급(分級)하여 환태(換太)를 보상하고 여전(餘錢) 50냥은 관납(官納)하였다.

승번급대조(僧番給代租) 106석(石) 5두(斗)는 가분모곡(加分耗穀) 중에 년례(年例)로 작전(作錢)하여 어영색(御營色)에게 출급(出給)하여 기한에 이르러 상납(上納)하게 하였다.

본부수미(本府需米) 435석(石).

진영수미(鎭營需米) 84석(石). 진부수미(鎭府需米)는 본래 신결미(新結米) 중 춘봉(春捧)이지만, 재전(在錢)으로 흉년에는 특별히 민은(民隱)을 슬피하여 한꺼번에 정봉(停捧)하고 대용(貸用)하여 환래(還來)한 뒤 동(同) 수미(需米)는 이로부터 년례(年例)로 추봉(秋捧)하였는데, 함께 그 전대(前貸)를 납봉하여 갚으면 당년(當年)에 결부(結夫)가 1년에 양세(兩稅)한다는 말이 되므로 수미(需米)를 형편에 따라 적부(糶簿) 중에 마련하여 앞에 갚은 소출이 저절로 돌아가 그대로 대하(貸下)하는 것이 이미 년례(年例)로 이루어졌는데, 병자년 안전 이병두(李炳斗)가 임기 중에 미(米) 1,500석을 이무(移貿)한 대전(代錢) 4,500냥을 알맞게 헤아려 채용(除用)하고, 식리(殖利)를 충본(充本)한 후 여전(餘錢)이 545냥 7전이었으므로, 관청에서 별비

93) 상정례(詳定例) : 본문의 '상정례(詳正例)'를 상정례(詳定例)로 바꾸어 해석한다.

(別備)한 전(錢) 486냥 3전과 합한 1,032냥을 전변에 급부(給付)하고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각군(各軍)의 강년채(降年債)를 당년(當年)부터 영구히 대미(代米)를 방환(防還)하고 4년째 기유년에 이르러 몰수(沒數)하여 충당(充當)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作成)하였다.

전마료미(戰馬料米) 19석(石) 5두(斗) 4도(刀) 9홉[습]. 요태(料太) 28석(石) 4두(斗) 8승(升). 동(同) 미태(米太)는 의례히 원회곡(元會穀) 중에서 차하[上下]하였는데, 태(太)는 미리 추적(秋糶) 때에 부근면(附近面)에 돌아가며 수납(輸納)하고, 미(米)는 수미(需米)에 이작(移作)하여 원수(元需)와 한가지로 수납(輸納)한다.

구폐미(揀弊米) 30석, 포축미(捕縮米) 22석을 합한 미(米) 52석을 매번 강미(江米)에 하납(下納)할 때 영감하(營勘下)에 환미(還米)하여 출급(出給)하였는데, 운납(運納)할 때에 반드시 점퇴(點退)가 생기므로 일체(一體)를 전세(田稅)에 출역(出役)한 후 추봉(秋捧)하는 환미(還米) 중에서 분수(分數)하여 감급(減給)한다.

영고이송곡(營庫移送穀) 영감(營勘)의 구획(區劃)에 의하여 내각창(內各倉) 소속(所屬) 민부(民夫)가 년례(年例)로 수납(輸納)하였는데 부창(府倉)은 모군(募軍)으로 수납(輸納), 각사면(角四面)의 경우 정도(程途)가 조금 멀어 수송(輸送)에 폐단이 있어 기묘년 가을을 시점으로 미(米) 300석(石)씩 영작례(營作例)에 의거하여 작전(作錢)하여 상송(上送)하고 비록 치가(值價)가 헐한 해에도 상정(詳定)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절목(節目)으로 작성한다.

환곡(還穀) 매석(每石)에 색(色) 1승(升), 도감요뢰(都監聊賴) 토곡(土穀) 3승(升), 창예(倉隸)는 양포락(仰哺落), 1두(斗)는 고지기(庫子)가 차지(次知)하여 원도(園徒)의 진배(進排)에 첨보(添補)하였으나,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 낙기(落器)가 점점 커지자 백성들의 고초가 심하고 달아나는 노비가 더욱 많아 고치기 어려운 증세에 이르게 되었다. 을축년 안전 정헌조(鄭憲朝)가 임기 중에 상채(償債)를 제출(除出)하고 취식(取殖)하여 전(錢) 13,689전을 그대로 본전(本錢)으로 만들어 십삼취식(什三取殖)하여 그 이조(利條) 1,863냥 및 봄가을로 분정한 본가(本價)와 원도(園徒)의 둔전(屯田) 결전(結錢) 240냥 8푼을 함께 예하(例下)하였다.

### 어영색(御營色)

정군(正軍) 91명(名). 북마군(卜馬軍) 8명(名). 4년에 1차 상번(上番)하며, 원군(元軍)에 탈(頃)이 있게 되면 관자보(官資保)<sup>94)</sup> 중에서 차차 승호(陞戶)하여 신군례(新軍例)로 전(錢) 25냥씩 예납(例納)하여 정비(情費)에 첨보(添補)하고, 정번(停番)이면 매번(每番) 11냥 4전씩 수봉(收捧)하여 상납(上納)하고 산거마감채(刪去磨勘債) 및 잡비(雜費)는 기유년 식전(殖錢)에서 첨보(添補)한다. 이방장(吏房掌)에 보인다.

자보(資保) 99명(名). 매명(每名) 1필대(疋代) 2냥씩 정군(正軍)을 봉용(捧用).

관보(官保) 336명(名) 매명(每名) 1필 절반(折半) 후전(後錢) 5전, 강보(降保) 98명

94) 관자보(官資保) : 병역에 복무하지 않고 무명 · 삼베 · 쌀을 바치던 '관보(官保)'와 자장보(資裝保)의 합칭(合稱).



(名) 매명(每名) 순전(純錢) 2냥 2전, 후전(後錢) 1전 5푼 등은 10월삭(月朔) 어영청납(御營廳納).

금보직(禁狀直) 50명(名) 매명(每名) 무명[木] 1필(疋) 절반(折半), 후전(後錢) 7전, 보충대(補充隊) 1명(名) 매명(每名) 순전(純錢) 2냥, 후전(後錢) 7전 등은 10월삭(月朔) 병조납(兵曹納).

기보병(騎步兵) 128명(名). 매명(每名) 무명[木] 1필(疋) 절반(折半), 후전(後錢) 5전은 병조납(兵曹納).

의승군(義僧軍) 8명(名). 매명(每名) 방번전(防番錢) 20냥, 태가(駄價) 2냥씩 합한 전(錢) 166냥은 매년(每年) 수어청(守禦廳)에 수납(輸納) 160냥 원전(元錢), 16냥 태가(駄價) 광주인(廣州人)이 혹 하래(下來)하면 수거(受去).

88냥 각사조(各寺條) 을사년 경관(京關)에 따라 상진조(常賑租) 88석(石)을 취식(取殖)하여 방급(防給).

22냥 용천사조(湧泉寺條) 정사년 경관(京關)에 따라 7석(石) 5두(斗) 또한 방급(防給).

66냥 각사(各寺) 전례(前例)에 따라 당납(當納).

국마(國馬) 3필(匹)을 견래(牽來)하여 외양(喂養)하다가 정사년 경관(京關)에 따라 마료(馬料) 및 용입(容入)한 잡물(雜物)을 아우른 모든 절가(折價)를 합한 전(錢) 120냥 8푼을 매년 10월 일 사복(司僕)에 수납(輸納)하였다가, 경관(京關)에 따라 순영(巡營)에 수납(輸納) 140냥 9전은 원상납(原上納), 5냥 1전은 8푼은 잡비(雜費). 14냥 4전은 태(太) 9석(石) 9두(斗), 회감(會減) 36전 조(租) 9석(石) 9두(斗), 초(草) 2,100근가(斤價). 관비(官備) 4냥, 영거색리(領去色吏) 노자조(路資條) 이청(吏廳).

9냥 각창(各倉) 창직납(倉直納).

45냥 구종조(驅從條) 각창(各倉) 고자납(庫子納).

17냥 8푼 묶는줄마조[勒條所條] 각사납(各寺納).

중학둔세전(中學屯稅田) 9냥 3전 4푼 10월삭(月朔) 중학납(中學納) 7냥 원상납(原上納), 2냥 3전 4푼 정비(情費). 전답(田畝) 소재(所在) 상수남(上守南).

충순찬(忠順贊) 위유청군(衛有廳軍) 213명(名). 무술년 경관(京關)에 따라 정액(定額) 충순출신(忠順出身) 자서제질(子壻弟侄), 찬공신자손(贊功臣子孫) 원군(元軍) 193명(名). 매명(每名) 순전(純錢) 2냥, 후전(後錢) 3전을 여군(餘軍) 20명이 정비(情費)에 첨보(添補). 합상납전(合上納錢) 386냥.

충익위(忠翊衛) 2명(名) 공명장손(功名長孫). 매명(每名) 둔전(鈍錢) 2냥씩을 당자(當者)가 충훈부(忠勳府)에 상납(上納).

## 금위색(禁衛色)

정군(正軍) 136명(名). 북마군(卜馬軍) 13명(名) 상번년한승호예전(上番年限陞戶禮錢) · 정번대전(停番代錢)은 모두 어군례(御軍例)에 따른다.

자보(資保) 149명(名). 매명(每名) 목(木) 1필대(疋代) 2냥씩으로 정군(正軍) 봉용

(捧用), 관보(官保) 460명(名) 매명(每名) 목(木) 1필(疋) 첨반(添半), 후전(後錢) 5전, 강보(降保) 184명(名) 매명(每名) 순전(純錢) 2냥 2전 후전(後錢) 1전 5푼 등을 10월삭(月朔) 금위영(禁衛營)에 납부(納付).

### 포보색(砲保色)

포보군(砲保軍) 228명(名) 매명(每名) 순목(純木) 1필(疋), 후전(後錢) 5전을 10월에 도감(都監)이 영납(營納). 각수보(刻手保) 42명(名). 매명(每名) 목(木) 1필(疋) 첨반(添半), 후전(後錢) 7전 5푼을 10월 교서관(校書館)에 납부(納付).

악공보(樂工保) 4명, 악생보(樂生保) 13명(名) 등은 매명(每名) 순목(純木) 1필(疋) 후전(後錢) 1냥과 더불어 악공노(樂工奴) 삼득(三得) 공전(貢錢) 6냥, 보(保) 3명 순전(純錢) 각 2냥 후전(後錢) 3전 등을 10월 장악원납(掌樂院納).

침선비(針線婢) 미열(美悅) 공전(貢錢) 2냥, 보(保) 2명(名) 매명(每名) 순전(純錢) 2냥 후전(後錢) 3전 등을 10월 상의원(尙衣院)에 납부(納付).

의녀(醫女) 미섬(美蟾), 보(保) 2명(名) 매명(每名) 순전(純錢) 2냥 후전(後錢) 3전, 의녀(醫女)가 봉용(捧用) 지금은 의녀(醫女) 없음.

경포수(京砲手) 1명(名). 6년에 1차(次) 포보(砲保) 중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올리면 그 대전(代錢)은 해리(該吏)가 망납(望納)하고, 만약 타인(他人)이 자원(自願)하면 원군(元軍) 중에 부실자(富實者) 3명을 초출(抄出)하여 10냥을 각봉(各捧)하며, 여군(餘軍)은 매명(每名) 1냥 2전씩 수렴(收斂)하여 300금(金)을 준급(準給)하여 자장(資裝)에 첨보(添補)하였는데, 정미년에 식전(殖錢)으로 방급(防給)하였다. 이방장(吏房掌)에 보인다.

### 속오색(束伍色)

군장(軍將) 32인(人) 별장(別將) 1인(人), 천총(千摠) 1인(人), 장관(將官) 10명(名), 과총(把摠) 1인(人), 기패관(旗牌官) 19인(人).

서기(書記) 13인(人) 원군(元軍) 병(并).

마군(馬軍) 195명(名). 몸으로 응역(應役), 경산초병(慶山哨兵).

자보(資保) 390명(名). 매명(每名) 목(木) 1필대(疋代) 2냥씩 정군(正軍) 봉용(捧用). 수솔(隨率) 41명(名).

보병(步兵) 967명(名). 북마군(卜馬軍) 35명(名) 몸으로 응역(應役)

자보(資保) 1,002명. 매명(每名) 목(木) 1필대(疋代) 2냥씩 정군(正軍) 봉용(捧用).

원군(元軍)에 탈(頤)이 생기면 습조(習操)할 때 서기배(書記輩)가 자득(自得)하여 망납(望納)하였으나, 정유년에 논보(論報)하여 각영(各營)에서 면리(面里)에 차례대로 어린작대(魚鱗作隊)하여 매년 6월에 해당 초관(哨官)에 출송(出送)하면 함께 따라간 면임(面任)이 점열(點閱)한 후 궤원(闕員)이 있으면 곧장 망보(望報)하고 전대(填代)한다. 정유년 식전(殖錢)의 방급(防給)은 이방장(吏房掌)에 보인다.

### 아병색(牙兵色)

마군(馬軍) 241명(名). 몸으로 응역(應役).

자보(資保) 482명(名). 매명(每名) 목(木) 1필대(疋代) 2냥씩.

보병(步兵) 547명(名). 북마군(卜馬軍) 33명(名) 몸으로 응역(應役).

자보(資保) 580명(名). 매명(每名) 목(木) 1필대(疋代) 2냥씩으로 정군(正軍) 봉용(捧用).

관보(官保) 259명(名). 매명(每名) 순전(純錢) 2냥, 후전(後錢) 2전씩 수봉(收捧) 내에서 2냥 2전 4푼 영납(營納), 6푼 잡비(雜費).

### 군기색(軍器色)

각색궁(各色弓) 359장(張).

통아(桶兒) 278개(箇).

환도(還刀) 95병(柄). 또 28병 추가(摠加).

전(箭) 378부(部).

장창(長鎗) 160병(柄).

엄두(掩頭) 140부(部).

엄심(掩心) 140부(部).

거마작(拒馬作) 100좌(坐). 신유년 안전 김병우(金炳愚)가 임기 중에 상채(償債).

삭조소(索條所) 30좌(坐). 전(錢) 중에서 4,000냥을 제출(除出)하여 훼손(毀損)되는 대로 수보(修補)하였는데, 무진년 안전 송태진(宋泰鎭)이 임기 중에 연름(捐廩)하여 수보(修補)하고, 계유년 안전 임철수(林徹洙)가 임기 중에 결잉(結剩) 중에서 1,595냥 7전을 또 수보(修報)하였다.

삼혈총(三穴銃) 6병(柄).

화전(火箭) 30병(柄).

능철(菱鐵) 5,900개(箇).

대로구(大炉口) 168좌(坐).

소로구(小炉口) 11좌(坐).

장막(帳幕) 104부(浮).

나팔(喇叭) 3쌍(雙).

호적(唬笛) 3쌍(雙), 또 1쌍(雙) 추가(摠加).

대쟁(大鎗) 1면(面).

슬발(鎗鉞) 2쌍(雙).

세악(細樂) 1쌍(雙).

학라(學囉) 1쌍(雙).

등의(燈衣) 160부(部).

등촉(燈燭) 159병(柄).

흑탁개(黑傘蓋) 158개(箇), 또 30개(箇) 추가(摠加).

등철(燈鉄) 159개(箇), 또 1개(箇) 추가(摠加).

남비개(南飛盖) 270부(部).

화철(火鉄) 170개(箇), 또 95개(箇) 추가(摠加).

화철석(火鉄石) 170개(箇).

이약통(耳藥桶) 270개(箇).

약되[藥升] 270개(箇).

약통(藥桶) 8,100개(箇).

화승(火繩) 130사리(沙里).

수노(手弩) 5좌(坐).

궁노(弓弩) 5좌(坐).

목표자(木瓢子) 1,239개(箇).

조총(鳥銃)

화약(火藥)

연환(鉛丸)

봉대(烽臺) 3곳[處] 각별장(各別將) 2인, 봉군(烽軍) 100명(名)씩 배번(排番)하여 수직(守直)하며 봉군(烽軍)은 4전씩 감고(監考)가 봄가을로 분봉(分捧)하여 응비(應費)에 첨보(添補)하는 것으로 정묘년에 절목(節目)을 작성하였다.

세초(歲抄)<sup>95</sup> 마감(磨勘) 군기(軍器)와 봉수집물(烽燧什物)<sup>96</sup> 및 영부(營府) 각색(各色)의 군정(軍丁)은 매(每) 세말(歲末)에 병영에 수감(修勘)하고, 정비(情費)는 봉군(烽軍) 매명(每名) 3푼씩 수봉(收捧)하고 산거마감(刪去磨勘)의 간격은 10년으로 거행(舉行)하며 정비(情費)는 발군(撥軍) 매명(每名) 1전 2푼 신묘년 군포(軍布)의 제감(除減)에 따라 조령(朝令)으로 감봉(減捧) 1푼, 봉군(烽軍) 매명(每名) 7푼씩 수봉(收捧).

유황군(硫磺軍) 48명(名) 수영납(水營納) 23석(石)과 함께 후전(後錢) 본부납(本府納), 25명(名) 후전(後錢) 없음 합전(合錢) 102냥 9전 내에서, 46냥의 23명(名) 신포대(身布代)와 12냥 4전의 진성채(陳省債) 및 정비(情費)를 6냥 9전 후전조(後錢條) 좌수영(左水營)에 납봉(納捧). 24냥은 감관(監官) 2원(員) 삭하(朔下), 윤삭(閏朔)이면 관납(官納) 중 가급(加給) 2냥. 재전(在錢) 20냥 5전은 집물(什物)<sup>97</sup> 수보차(修報次) 관납(官納).

관혁목(貫革木) 남북(南北) 공양산(公養山)에서 작취(斫取)하여 연군(煙軍)에게 운반시켰는데, 임진년 안전 조진민(趙鎭敏)이 임기 중에 구폐전(揀弊錢)을 퇴한(退限)한 이조(利條)의 여전(餘錢) 중 170냥을 동화사(桐華寺) 남북(南北) 지장사(地藏寺)에 나누어준 3할의 이자와 함께 형가목(刑枷木)을 무용(貿用)토록 하고 작목(斫木)의 일관(一款)은 영구히 혁파(革罷)하였으며, 장목(掌木)은 점한(店漢)이 전례(前例)에 따라 납부토록 하였다.

신구부쇄가(新舊扶刷價) 민부(民夫)가 당납(當納)하였으나, 지난 중년(中年)에 순영

95) 세초(歲抄) : 해마다 6월과 12월에 군대에 생긴 결원(缺員)을 보충(補充)하는 것.

96) 집물(什物) : 원문에는 변물(汙物)로 기재되었으나 의미맥락에서 집물(什物)로 바꾸어 기술한다.

97) 집물(什物) : 변물(汙物)을 집물(什物)로 바꾸어 기술한다.

(巡營)에서 무명[木] 70동(同)을 출연(出捐)하여 30필(匹)을 입마(立馬)를 하고, 정사년 안전 이협(李浹)이 입기 중에 또 18필(匹)을 입마(立馬)하였다. 민부구취전(民夫鳩聚錢)으로 답(畓) 480마지기를 사서, 말은 매필(每匹)에 각 위답(位畓) 10마지기에 분급하여 곧바로 고마고(雇馬庫)를 설치하고, 그 여전(餘錢)으로 해마다 생식(生殖)하여 부쇄(扶刷)를 방급(防給)하였으나, 재력(材力)이 거의 바닥나 다시 민렴(民斂)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계묘년 안전 홍원섭(洪元燮)이 입기 중 전(錢) 200냥을 출연(出捐)하고, 을유년에 정승대감(政丞大監) 정병모(鄭秉模)가 또 전(錢) 1,000냥을 출연(出捐)하여 함께 3할의 이자로 불리니 병오년에 이르자 본리(本利)의 합전(合錢)이 2,129냥 4전이 되어, 곧장 이자에 급부(給付)하여 같은 이자돈 638냥 8전 2푼을 이방(吏房)에게 주어 불시(不時)의 체등(遞等)에 쓰도록 하고, 만약 연말(年末)까지 체등(遞等)하는 일이 없으면 곧 논을 사서 기유년을 시점으로 치계둔(雉鷄屯)의 예(例)에 따라 수세(收稅)하였으며 상하납(上下納) 중에서 민폐가 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사년을 시점으로 교구전(矯球錢)과 함께 작목(作木)의 부족한 태가(駄價)를 방급(防給)한 후에 그 여전(餘錢)으로 차차 논을 사서 도광(道光) 경인(1830년)에 이르니 답본가(畓本價)가 3,931냥 7전이 되었다. 교구전(矯球錢) 재전(在錢)을 영부(營府)에서 차차 출연(出捐)하고 취식(取殖)하여 방역(防役)의 밑천으로 삼았는데, 신축년 방채(放債) 후에 세봉(歲捧) 십일(什一)의 7,500냥으로 5역(役)의 방급차(防給次) 전변(錢邊)에 이부(移付)하여 재전(在錢) 1,157냥 4전 9푼을 무신년부터 시작으로 논을 사서 수세(收稅)하여 한결같이 고마고둔(雇馬庫屯)의 예(例)를 따라 상하납(上下納)에 첨보(添補)하고 신연(新延) 때에 응비(應費)를 함께 차하[上下]하고 여전(餘錢)은 해마다 논을 사서, 기묘년 태가(駄價)의 마련(磨鍊)에 첨보(添補)한 후에, 수용(需用)이 점점 불어 가하(加下)가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전변전(錢邊錢) 중에서 역사(役事)를 일례(一例)로 방급(防給)하였다. 도광(道光) 경인(1830)에 이르자 답본가(畓本價)가 6,985냥 3전 7푼이 되었다. 기복마태가(騎卜馬駄價)의 첨보(添補) 읍장(邑場) 중에서 소[牛] · 포(布) · 옷[衣]의 3전세(塵稅)는 전부터 둔마청(屯馬廳)에 소속되어, 관복마(官卜馬)의 외양(喂養) 및 각양(各樣) 용비(冗費)에 보용(補用)시켰는데, 근래 수세(收稅)가 무실(無實)하고 소비(所費)로 자재(自在)할 수 있는 것이 48정액(定額)으로 십수(十數)를 넘지 않는 가운데 무마자(無馬者)와 무대자(無帶者)가 또 반(半)을 차지하였더니, 공(公)이 몰(歿)하여 한번 나가자, 관부(官府)가 소요(騷擾)하였으므로, 기묘년 안전 정시용(鄭是容)이 입기 중에 이러한 폐단을 염려하여, 1년의 전세(塵稅)를 통계(統計)하여 366냥으로 정(定)하고, 정월 · 2월 · 5월 · 6월은 매장(每場) 4냥, 그 나머지 8삭(朔)은 매장(每場) 5냥씩을 마부(馬夫) 중에 근실한 사람으로 감관(監官)을 정해 수봉(收捧)하여 이방(吏房)에게 봉수(逢授)하고, 고전(雇錢) 중 유치조(留置條) 250냥과 함께 태가(駄價) 및 대소(大小) 공역(公役)에 첨보(添補)하여 절목(節目)에 따라 차하[上下]한 후 여전(餘錢)은 그대로 본고(本庫)에 급부(給付)하고 가하(加下)하여 교구전(矯球錢)으로 보급(報給)하였다. 구둔세전(舊屯稅錢) 6냥 6푼은 년례(年例)로

가입(加入)하고 담본가(番本價) 75냥 7전 5푼 방역전변(防役錢邊) 여조(餘條) 76냥 9전은 년례(年例)로 수래(收來)하여 본고(本庫)에 첨부(添付)하였다.

신연세마(新延刷馬) 14필(匹) 반(半) 매필매식(每匹每息) 미(米) 2두(斗) 5승(升)씩, 부군(扶軍) 3명(名) 반(半) 매명매식(每名每息) 미(米) 1두(斗) 2도(刀) 5홉[습]씩을 이식(里式)에 따라 회감(會減)하였고, 부쇄가(扶刷價)는 이미 구처(區處)하여 민인(民人)에게 거두지 않아 관에서 첨보(添補)하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예(例)에 따라 작전(作錢)하여 본고(本庫)에 급부(給付)하였으나, 근년에 쇠가미(刷價米)는 경관(京關)에 따라 회감(會減)하지 않으므로, 전목(錢目)에 이부(移付)하여 자재(自在)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

행적조대(行籍租代) 269냥. 매식년적채전(每式年籍債錢) 중에서 수래(受來)하고, 색락조(色落條) 및 유래(由來)된 응하(應下)는 함께 계제(計除)한 후에 전(錢) 165냥 4전을 곧 본고(本庫)에 급부(給付) 조(租) 매식(每石) 7전씩 가입(加入).

신연쇄마(新延刷馬) 23필(匹) 경중(京中)까지 매필(每匹) 10냥씩, 부군(扶軍) 11명(名) 매명(每名) 7냥씩, 대부인(大夫人)이 행차하면 부군(扶軍) 4명 가정(加定)하며 대마채(大馬債)는 50냥.

기별채(奇別債) 5냥.

중경호장(中京戶長) 7냥.

구관쇄마(舊官刷馬) 24필(匹). 경중(京中)까지 매필(每匹) 7냥씩, 부군(扶軍) 10명 매명(每名) 6전씩, 합전(合錢) 259냥 내에서 31냥은 해유마(解由馬)의 반로(返路)에 가정(加定), 대부인(大夫人)이 행차(行次)하면 부군(扶軍)<sup>98)</sup> 4명 가정(加定), 해유마(解由馬) 1필 7냥 유리(由吏) 등 부군조(扶軍條)의 재전(在錢) 228냥.

합하전(合下錢) 656냥을 유채(留債)와 비교하면 그 부족한 것이 비록 17냥 1전 8푼이 되지만 신구관(新舊官)의 차이가 없고, 대부인이 행차하면 반드시 부족할 이치가 없으므로 여외(餘外) 별정(別定)의 부쇄가(扶刷價)는 관청에서 차하[上下]한다.

신구부쇄가(新舊扶刷價) 이미 경중(京中)까지 22식(息) 10리(里)로 항정(恒定)하였으므로, 영송(迎送)하면서 만약 근읍(近邑)에 있거나 혹 경중(京中)을 지나가게 되면 관청에서 마땅히 이식(里息)을 가감(加減)하여 차하[上下]하고, 신쇄가(新刷價)는 매(每) 10리(里)에 1전 5푼으로 하며, 구쇄가(舊刷價)는 매(每) 10리(里)에 1전으로 하며, 부군고(扶軍雇價)도 여기에 따라 지급[上下]하고 쇠가(刷價)는 기묘년을 시작으로 매필(每匹) 5냥씩을 장세(場稅)로 더하여 준다.

신연시(新延時)의 유련(留連) 3일을 넘기면 말[馬]은 매일(每日) 2전, 부군(扶軍)은 매일(每日) 1전을 관하(官下)한다. 무시(無時)의 배행(陪行)은 마료(馬料) 2전만 지급하며 도내(道內)는 따지지 않는다.

절선마(節扇馬) 5필(匹), 세찬마(歲饌馬) 5필(匹)은 매필가(每匹價) 7냥, 이 밖에 가송(加送)하면, 매필(每匹) 10냥씩 함께 관청에서 차하[上下]하며 첨보(添補)하는 때

98) 부군(扶軍) : 원문은 ‘負軍’으로 기재되었으나 ‘扶軍’으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가(馱價)는 신구쇄가례(新舊刷價例)에 따른다.

무시상경(無時上京)의 기복마(騎卜馬) 관태가(官馱價)는 10냥 외 타도(他道) 매(每) 10리 2전 5푼씩 태가(馱價) 2냥씩 첨보(添補)하여 차하하고, 도내(道內)에 이르면 매(每) 10리에 관태가(官馱價) 1전 외 태가(馱價) 5푼씩 첨보(添補)하여 차하하고 경내(境內)에서는 태가를 첨보(添補)하지 않는다.

교마(轎馬) 2필(匹). 외양전(喂養錢) 매삭(每朔) 6냥, 마식(馬飾) 등가(等價)는 춘추(春秋)로 각 5냥씩 장세전(場稅錢)으로 차하하고, 만약 개립(改立)하게 되면 마(馬) 매필가(每匹價) 100냥씩을 고전(庫錢) 중에서 출급(出給)하고 부족한 수는 마부도중(馬夫都中)에서 담당(擔當)하며, 퇴마(退馬)는 향중(鄉中)에서 간검(看儉)하여 논가(論價)하고 소봉(所捧)에 따라 본고(本庫)에 환납(還納)하였으나 향론(鄉論)에 따라 년 200냥씩 마부장무(馬夫掌務)에게 출급(出給)하여 거행(舉行)토록 한다.

둔마(屯馬) 14삭(朔)을 기한으로 개립(改立)하고 매필(每匹) 10냥씩 첨보(添補)하여 고전(雇錢) 중에 차하하였으나 기묘년을 시작으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만약 공행(公行)으로 치폐(致弊)하게 되면 본고(本庫)에서 20냥을 첨보(添補)한다.

관복마(官卜馬) 3필(匹). 관노(官奴) · 사령(使令)에게 맡겨 외양(喂養)하였으나 짐을 싣다가 치고(致故) · 실고(失故)가 많았으므로 그들이 자원하여 전(錢) 240냥을 마련하고 동(同) 전(錢)을 십사취식(什四取殖)한 이전(利錢) 96냥 및 청초전(青草錢) 중 예하조(例下條) 24냥을 합한 전(錢) 120냥을 고마부(雇馬夫)에 출급(出給)하고, 10태(馱)에 한하여 용하(用下)하였으나, 임신년 관복마(官卜馬)의 명색(名色)을 혁파(革罷)하자, 관노와 사령들이 전변(錢邊)을 자판(自辦)하여 청초가전(青草價錢)을 출급(出給)하여, 곧장 관용(官用)에 급부(給付)하고 부복(負卜)은 뇌령(牢令)들에게 전례대로 거행토록 하였다. 뇌령(牢令)의 조잔(凋殘)을 염려하여 부복(負卜) 일관(一款)도 혁파(革罷).

대동작목(大同作木) 부족태가(不足馱價) 매태(每馱) 10냥 5전 6푼, 별정잡비(別情雜費) 406냥으로 항정(恒定)하여 연례(年例) 방급(防給).

면세공작목(免稅公作木) 부족태가(不足馱價) 정비(情費)는 183냥 5전으로 항정(恒定)하여 연례(年例) 방급(防給).

하납색(下納色) 가승(加升) 무리전(無利錢)을 230냥으로 80냥은 을미년 가정(加定) 항정(恒定)하여 연례(年例) 방급(防給).

교원(校院) . 영부(營府)의 노비(奴婢) 7년 간격으로 개안(改案)하며 정전(情錢) 40냥은 을묘년을 시점으로 고전(雇錢) 중에서 지급.

## 관청(官廳)

원수미(原需米) 340석(石), 사객수미(使客需米) 95석(石) 등은 추봉(秋捧). 익년(翌年) 정월을 시작으로 배용(排用) 매삭(每朔) 36석(石) 3두(斗) 7승(升) 5홉[合].

아사수미(亞使需米) 50석(石). 춘봉(春捧) 매삭(每朔) 4석(石) 2두(斗) 5승(升). 만약 재년(災年)을 만나면 원수(原需)의 8분의 1을 감(減)하고 아사수(亞使需)도 8분의 1

을 감(減)한다.

점미(粘米) 25석(石). 매석(每石) 2석(石) 1두(斗) 2승(升) 5홉[合], 매석가(每石價) 12냥. 무술년 안전 이숙(李淑)이 임기 중에 전(錢) 1,000냥을 출연(出捐)하고 심삼취식(什三取殖)하여 본고(本庫)에서 무용(費用)하며, 민부(民夫)의 책봉(責捧)은 영구히 혁파(革罷)하였는데, 동(同) 전(錢) 1,000냥이 신축년의 방채(放債)에 들어가자 점미(粘米)는 형세상 장차 민부(民夫)에게 환출(還出)되므로 이자 중 300냥을 요역(徭役)의 일례(一例)로 방급(防給)한 후 관청 고지기에게 전례대로 무용(費用)토록 하였다.

전(錢) 120냥 각사면(角四面) 빙정대(氷丁代), 전(錢) 120냥 청초대(靑草代) 등은 전변(錢邊)에서 수래(受來), 전(錢) 140냥 동서상(東西上) 소목대(燒木代), 전(錢) 200냥 각사면 초조대(草租代) 등은 겸제고(兼濟庫)에서 가져옴, 돈 438냥 4전 9푼을 합한 돈 992냥 4전 9푼 내에서, 126냥은 영부(營府) 치계조(雉鷄條)에 이송(移送)하고 윤삭(閏朔)이면 10냥 5전을 더하여 보내고 재전(在錢)은 그대로 배삭(排朔)하였다.

영부(營府) 소용(所用)의 치계(雉鷄) 민부(民夫)에게 책봉(責捧)하였으나, 정미년 정승대감(政丞大監) 유척기(兪拓基)가 임기 중에 돈 11,900냥을 출연(出捐)하여 둔전(屯田) 1,900두락(斗落)을 설치(設置)하고 매냥(每兩) 두세조(頭稅條) 1두(斗) 2승가(升價) 8푼을 매석가(每石價)는 1냥 진고(賑庫)에서 추등(秋等) 봉상(捧上)을 기다려, 매부(每夫) 치계대(雉鷄代)는 7전씩 작정(酌定)한 후 각사면(角四面) 민부조(民夫條)는 보선고(補膳庫)로 이송(移送)하고, 화팔방(花八方) 민부조(民夫條)는 영고(營庫)로 이송(移送)하고, 그 나머지 22면(面) 민부조(民夫條)는 본부(本府)에서 수래(受來)하였다. 초조(草租)는 앞서 각사면(角四面) 민부(民夫)가 소납(所納)한 초조대(草租代)를 본고(本庫)에 이획(移劃)하여 삭곡(朔穀)으로 배정(排定)하였으나, 정해년 고초(藁草)를 방급(防給)한 후로는 대전(代錢) 200냥씩 연례(年例)로 거두었다.

### 보역물종(補易物種)

참깨[眞荏] 50석(石). 봄 20석(石) 매삭(每朔) 3석(石) 5두(斗), 가을 30석(石) 매삭(每朔) 7두(斗) 5승(升) 매석가(每石價) 6냥.

꿀[淸] 5석(石). 봄 2석(石) 매삭(每朔) 5두(斗), 가을 3석(石) 매삭(每朔) 7두(斗) 5승(升) 매두가(每斗價) 6냥.

어유(魚油) 3석(石) 7두(斗) 5도(刀). 봄 1석(石) 6두(斗) 매삭(每朔) 3두(斗) 5승(升), 가을 2석(石) 1두(斗) 5승(升) 매삭(每朔) 5두(斗) 2승(升) 5홉[合] 매두가(每斗價) 1냥 9전.

호도(胡桃) 4석(石). 봄 1석(石) 매삭(每朔) 2두(斗) 5승(升), 가을 3석(石) 매삭(每朔) 7두(斗) 5승(升) 매석가(每石價) 5냥.

대추[大棗] 5석(石). 봄 3석(石) 매삭(每朔) 5두(斗), 가을 3석(石) 매삭(每朔) 7두(斗) 5승(升) 매석가(每石價) 5냥.

곶감[乾柿] 250첩(貼). 봄 50첩(貼) 매삭(每朔) 8첩(升) 3곶(串) 3개(介) 나머지 3개(介), 가을



200첩(升) 매삭(每朔) 33첩(貼) 3곶(串) 3개(介) 나머지 3개(介) 매첩가(每貼價) 3전 5푼.

홍시(紅柿) 40첩(貼) 매첩가(每貼價) 5푼, 모과[木果] 200개(箇) 매개가(每箇價) 2푼, 석류(石榴) 400개(箇) 매개가(每箇價) 2푼 등은 추등(秋等) 가입(加入).

전복(全鰓) 60첩(貼).

숙복(熟鰓) 50첩(貼).

홍합(紅蛤) 2석(石).

해삼(海蔘) 15첩(貼).

문어(文魚) 250미(尾).

광어(廣魚) 400미(尾).

대구(大口) 800미(尾).

명태(明太) 800속(束).

가자미[加魚] 800속(束).

미역[藁] 900속(束).

다시마[多士麻] 50속(束).

김[海衣] 150첩(貼)

각종가(各種價)를 합한 전(錢) 2,000냥 7전 5푼 내에서 1,000냥을 원전(原錢)의 이변조(利邊條) 중에서 출급(出給)하였으나, 기사년에 감리(減利)한 뒤에는 관청에서 차하[上下]하였다. 봄 400냥, 가을 600냥 1,000냥 7전 5푼은 이복호(吏復戶) 64결(結)로는 각면(各面) 서원(書員)을 보복(補卜)하고, 24결(結) 24부(負)로는 인리(人吏) · 사령(使令)의 보포대(保布代) 600냥을 충급(充給)하였다. 경오년 안전 이적진(李商進)이 임기 중에 전(錢) 1,500냥을 출연(出捐)하고 십사취식(什四取殖)하여 600냥을 당급(當給)하였고, 하인(下人)의 자보(資保)는 각각 봉상(捧上)하여 쓰도록 하였는데, 신축년 방채(放債) 후에는 보포대(保布代)로 충급(充給)하였다. 경자년에 안전 정시용(鄭始容)이 임기 중에 삼반(三班)의 보포(保布)를 허물어 백골(白骨)로 귀속시키고, 본가(本價)는 전변(錢邊) 잉여(剩餘)의 관납조(官納條) 454냥 8전 6푼으로 이청(吏廳) 구폐전(掇弊錢) 중의 100냥을 이획(移劃)하였는데, 전수(前受)한 600냥은 유리조(有利條)이었으나, 지금 이획(利劃)한 전(錢)은 무리조(無利條)이므로 부족조(不足條) 45냥 1전 4푼은 해색(該色)이 충수(充數)하였다.

염평(鹽平) 30석(石). 매석가(每石價) 3냥 5전씩. 임자년 부사 이서형(李瑞亨)이 임기 중에 영전(營錢)을 청득(請得)하고 취식(取殖)하여 본전(本錢)은 환납(還納) 그 여전(餘錢) 350냥을 그대로 본전(本錢)으로 만들어 이자로 이부(移付)하고, 매년(每年) 이조(利條) 105냥을 산창색(蒜倉色)에게 출급(出給)하고 절목(節目)을 작성하여 무납(貿納)토록 하였는데, 임인년 사도(使道) 홍재철(洪在喆)이 임기 중에 영하(營下)의 각양구폐(各樣掇弊) 중 공염(公鹽)이 매석(每石) 원정가(元定價) 7냥 외에 2냥 5전을 가정(加定)한 것이 폐단의 바탕이 되는 점을 염려하여, 공염(公鹽)을 혁파(革罷)한 후에 시가(時價)를 따라 무용(貿用)하였다.

## 년례생어물(年例生魚物)

- 방어(魴魚) 30미(尾). 매미가(每尾價) 조(租) 35두(斗) 6전, 30토(吐)로 만든다.
- 연어(鱧魚) 30미(尾). 매미가(每尾價) 조(租) 2두(斗) 7승(升) 4전, 8토(吐)로 만든다.
- 송어(松魚) 100미(尾). 매미가(每尾價) 조(租) 1두(斗) 5홉[습] 2전, 4토(吐)로 만든다.
- 농어(農魚) 100미(尾). 매미가(每尾價) 조(租) 4승(升) 5홉[습] 2전, 4토(吐)로 만든다.
- 도미(道味) 100미(尾). 매미가(每尾價) 조(租) 5승(升) 5홉[습] 2전, 4토(吐)로 만든다.
- 생대구(生大口) 150미(尾). 매미가(每尾價) 조(租) 2두(斗) 2전 5푼, 5토(吐)로 만든다.
- 대구란(大口卵) 150부(部). 매부가(每部價) 조(租) 4승(升) 1전, 4토(吐)로 만든다.
- 생삼어(生三魚) 300미(尾). 매미가(每尾價) 조(租) 3승(升) 4푼, 2토(吐)로 만든다.
- 청어(靑魚) 300급(級). 매급가(每級價) 조(租) 2두(斗) 6승(升) 2전 5푼.
- 조기[石魚] 50속(束). 매속가(每束價) 조(租) 1두(斗) 3전.
- 생복(生鰓) 20첩(貼). 매첩가(每貼價) 조(租) 3두(斗) 7승(升) 5홉[습] 5전.
- 본가(本價)를 합한 조(租) 116석(石) 6두(斗)를 관청에서 내어 인리(人吏) · 사령(使令)에게 무역(貿易)토록 하였으나, 신미년 부사 송순명(宋淳明)이 임기 중에 특별히 폐해(弊害)가 될까 염려하여 돈 300냥을 체하(貼下)하고, 인리와 사령이 또 200냥을 모아 함께 4할의 이자로 불러 고지기[庫子]에게 무용(賃用)토록 하였다. 그러다가 신축년 방채(放債) 후에 전(錢) 200냥을 변통할 길이 없어, 이청(吏廳)에서 38냥을 첩보(添補)하여 사령방(使令房)에 납부하고 132냥을 관청(官廳)에서 마련하여 합한 돈 370냥을 고지기에게 내주어 전례(前例)에 따라 무용(賃用)하여 본가(本價) 조(租) 116석(石) 6두(斗)를 일체(一體) 지급하였다.
- 생리(生梨) 15첩(貼). 매첩가(每貼價) 3냥 4전을 10월에 가입(加入). 본가(本價) 조(租) 10석(石)을 관청에서 사령방(使令房)에 출급(出給)하고 무납(賃納)하게 하였는데, 사령들이 세출(歲出)을 본가(本價)에 첩보(添補)한 전(錢) 40냥을 함께 관청(官廳)에서 지급하고 조(租) 10석(石)을 관청색(官廳色)에 소속(所屬)시켜 사서 사용하였다.
- 피백자(皮栢子) 1석(石) 3두(斗). 매석가(每石價) 5냥, 추등(秋等)에 동화사(桐華寺) · 부인사(夫仁寺) 양사(兩寺) 등지(等地)에 가입(加入)하여 서부동촌(西部東村) 민정(民丁)에게 돌아가며 적취(摘取)토록 하였으나, 정해년 부사 조종순(趙鍾淳)이 임기 중에 그 폐해를 염려하여 돈 20냥을 출연(出捐)하여 관청색에 납부하고 그 3할의 이자돈으로 불린 6냥으로 사서 사용하였다.
- 생률(生栗). 해안(解顔) · 범어(凡於) 두 곳의 울전(栗田)이 결화(結禾)하면 적래(摘來)하여 8월에 가입(加入)하였으나, 근래 울전이 점점 황폐하고 소납(所納)이 영성(零星)하여 지금은 진폐(盡廢)되어 전량을 관청에서 무용(賃用)하여 매석가(每石價) 5냥씩 지급하였다.
- 오미자(五味子) 10두(斗). 용천사(湧泉寺)에서 예납(例納)하였으나 관속(官屬)으로 정사년에 감급(減給)한 후 관청에서 무용(賃用)하여 매두가(每斗價) 2냥씩 지급하였다.

은어(銀魚) 32급(級). 매급가(每級價) 1냥씩. 각면(各面) 서원(書員)이 간평(看坪)할 때 관청색(官廳色)에 예납(例納). 2인(人)은 감급(減給).

황육(黃肉) 매일세(每日稅) 쇠고기[肉] 7근(斤)씩 육직(肉直)이 예납(例納)하고 윤삭(閏朔은 따지지 않는다. 육촉(肉燭)은 관가의 일용(日用)이 방촉(房燭)뿐이므로 하기(下記)하지 않고 진배(進排)하며, 그 밖의 지응(支應)은 거개(擧皆)를 없애기로 도모(圖謀)하였으므로, 도판본전(屠板本錢) 50냥은 신연(新延) 초(初)에 관에서 출급(出給)하여 체등(遞等)까지 영하(永下)<sup>99</sup>한다. 또 시복호(柴復戶) 30부가(夫價) 및 이청(吏廳) 첨보전(添補錢) 110냥, 육색(肉色)이 자비(自備)한 전(錢) 150냥, 신구관청색(新舊官廳色) 분당전(分當錢) 20냥, 구폐전(擽弊錢) 중 200냥, 교구전(矯擽錢) 중 100냥을 함께 년례(年例)로 출급(出給)하여 거행토록 하였으며, 근래 우가(牛價)가 너무 높아 진배(進排)하기 어려우므로 향중(鄉中)에서 확실하게 갑술년을 시작으로 민고전(民庫錢) 중 900냥 및 결잉(結剩) 중 300냥으로 함께 첨보(添補)하였다.

송화(松花) 매두가(每斗價) 1냥을 이전부터 동화사(桐華寺)에서 봉용(捧用)하였으나, 승도(僧徒)들의 등장(等狀)에 따라 관청에서 무용(貿用)하고 전(錢) 13냥 5전 3푼을 하수서(下守西) 관기세(官基稅)에서 받아들임.

전(錢) 63냥 1전. 각면(各面) 화전세(火田稅)에서 받아들임.

보리[牟] 7석(石) 영(零) · 벼[租] 22석(石) 영(零) 등은 관둔전답(官屯田畓) 수세(收稅)에서 수래(受來)하며 해마다 같지 않음.

석존제(釋尊祭). 사액서원(賜額書院) 3서원(書院), 미사액(未賜額) 7원(院)의 향례시(享禮時) 소봉(所封)할 대구(大口) 213미(尾) 본가(本價) 조(租) 13석(石) 5두(斗)를 매미(每尾) 1두(斗) 관청에서 인리(人吏) · 사령(使令)에게 출급(出給)하여 미리 무납(貿納)한 것이므로, 100미(尾)는 사령(使令) 등처(等處)에서 봄가을로 분봉(分捧)하고, 100미(尾)는 이청(吏廳)에서 가전(價錢) 15냥을 첨보(添補)하여 관청색(官廳色)에게 무용(貿用)시키고, 이 밖에 추봉(追封)할 서원이 있으면 가조(價租)와 첨가(添價)를 예(例)에 따라 지급한다.

### 상정질(常定秩)

녹두(菘豆) 수미(需米)와 상환(相換)한다. 매두(每斗) 미(米) 3승(升)으로 한다.

소두(小豆) 중미(中米)와 상환(相換)한다.

당미(糖米) 수미(需米)와 상환(相換)한다.

목미(木米) 수미(需米)와 상환(相換)한다.

미식점미(味食粘米) 매두(每斗) 8승(升)으로 한다.

태(太) 매석(每石) 메주[燻造] 1석(石)으로 만들며, 참밀[眞麥] 매석(每石) 밀가루(眞末)는 9승(升)으로 만들고 밀기울(只火)은 10두(豆) 5승(升)으로 만든다. 보리[大麥]는 매석(每石) 4두(斗)를 첨감(添減)하며 콩 · 맥(麥)으로 한정(限定)한다.

99) 영하(永下) : 물건을 내어 주어 영구히 사용하게 하는 것.

30석(石)을 년례(年例)로 만들어 각사(各寺)에 출급(出給)하고 찢어서 메주를 만들어 납봉(納捧)토록 하였는데, 신축년 사도(使道) 홍재철(洪在詰)이 임기 중에 승도(僧徒)들의 폐해를 염려하여 메주는 원태(原太) 30석(石) 외에 15석을 영(營)에서 별비(別備)하고 나무[木] 180속(束)을 부(府)에서 별비(別備)한 것에서, 9석(石) 1두(斗)를 각방(各房)에 예하(例下)하고 2석(石)과 10속(束)을 진(鎭) 고지기[庫子]에게 메주 만드는 데 배정시켜 33석(石) 14두(斗)와 170속(束)을 6창(倉) 고지기에게 배급(排給)하고 17석(石)을 첨감(添減)한 16석(石) 14두(斗)만 봉상(納捧)토록 하였으며, 장비(醬婢)에게 출급(出給)한 보리방아는 원맥(原麥) 30석가(石價) 74냥 2전 5푼 별하전(別下錢) 51냥 1전 5푼을 합한 125냥 4전을 본가(本價)로 만들었으며, 참밀[眞麥] 매석가(每石價) 3냥의 6냥과 13석(石) 3두가(斗價) 79냥 2전을 고지기[庫子]에게 출급(出給)하고 밀기울[只火] 매석가(每石價) 1냥 5전의 3냥과 15석(石) 6두가(斗價) 46냥 2전을 색리(色吏)에게 출급(出給)하여 각자 무배(貿排)토록 하였으며, 또 영문(營門)에서 별비(別備)한 보리[麥] 10석(石) 내에서 6석(石)을 고지기[庫子]에게 3석(石)을 색리(色吏)에게 1석(石)을 하전(下典)에게 첨급(添給)한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였다.

밀기울[只火] 매석(每石) 3승(升)으로 만든다. 누룩[麴] 5동(同).<sup>100</sup> 매원가(每元價) 6푼. 승곡(升麴) 3원(元)<sup>101</sup>으로 두곡(斗麴) 1원(元)을 만든다.

감장(甘醬) 매석(每石) 메주(麴造) 1석(石), 소금[鹽] 9두(斗) 5승(升) 매승(每升) 3푼[分]씩 간장(良醬) 1승대(升代) 감장(甘醬) 5홉[合], 고추장[古椒醬] 1홉대[合代], 감장(甘醬) 3홉[合] 식례(式例)로 정(定)하였으나, 임진년 안전 조진민(趙鎭敏)이 임기 중에 처음으로 간장(良醬)을 고추장으로 서로 대체(代替)하여 전례(前例)에 따라 시행(施行)하였다.

마죽(馬粥) 모(牟) · 조(租)의 경우 매석(每石) 1석(石) 7두(斗) 5승(升)으로 만든다.

참깨[眞荳] 매석(每石) 즈유(汁油)<sup>102</sup> 2두(斗) 7승(升).

실생률(實生栗) 매승(每升) 피율(皮栗) 3승(升)으로 만든다.

피생률(皮生栗) 매석(每石) 피황률(皮黃栗) 9두(斗)로 만든다.

피황률(皮黃栗) 매석(每石) 실(實) 7두(斗)로 만든다.

피백자(皮栢子) · 피호도(皮胡桃) 매두(每斗) 실(實) 2승(升)으로 만든다.

약과(藥果) 1좌(坐). 밀가루[眞末] 1두(斗), 참기름[眞油] 5홉, 꿀[淸] 3승(升), 참기름[眞油] 3승,<sup>103</sup> 잣[實栢] 5홉[合], 소주(燒酒) 2호(壺), 숯[炭] 3두(斗). 대(大) 30일[立].

중계(中桂) 1(坐). 밀가루[眞末] 1두, 참기름[眞油] 7홉[合], 꿀[淸] 2승(升), 숯[炭] 2두(斗) 대(大) 50일[立].

다식(茶食) 1좌(坐). 밤가루[栗末] 2승(升), 검정참깨[黑荳] 2승(升), 꿀[淸] 6홉[合], 송화(松花) 2승(升).

여뀌꽃[蓼花] 2기(器).

100) 동(同) : 묶음으로 세는 명수사(名數詞).

101) 원(元) : 둥근 물건을 세는 단위(單位).

102) 즈유(汁油) : 원문의 '변유(汙油)'를 '즈유(汁油)'로 바꾼다.

103) 참기름[眞油]이 중복 기재되었다.

산자(散子) 2기(器).  
수미(需米) 1두(斗).  
누룩[曲子] 4원(元).  
소목(燒木) 2속(束).

### 절가질(折價送)

생숙복(生熟鮓) 매침가(每貼價) 2냥, 생문어(生文魚) 매미가(每尾價) 8전, 건민어(乾民魚) 매미가(每尾價) 4전 등은 8조(條)로 만든다.

대하(大蝦) · 게[蟹] 매개가(每箇價) 2푼.

소라(小螺) 매개가 2푼.

생광어(生廣魚) · 생상어[生沙魚] 매미가(每尾價) 4전, 8조(條)로 만든다.

생민어(生民魚). 매미가(每尾價) 2전 5푼, 5토(吐)로 만든다.

잉어[鯉魚] 매미가(每尾價) 4전, 송어[秀魚] 매미가(每尾價) 2전 등은 4토(吐)로 만든다.

준치[俊魚] 매미가(每尾價) 1전 5푼, 3토(吐)로 만든다.

황어(黃魚) · 누치[訥魚] 매미가(每尾價) 1전 2푼.

금어(錦魚) 매미가(每尾價) 1전.

붕어[附魚] 매미가(每尾價) 1전.

오화당(五花糖) 매근가(每斤價) 2냥.

설탕[雪糖] 매근가(每斤價) 8전.

왜면(倭麵) · 칩가루[葛粉] 매근가(每斤價) 3전 2푼.

감자(柑子) · 유자(柚子) 시가(時價)를 따른다.

생강(生薑) · 은행(銀杏) 매승가(每升價) 1전.

쇠고기[肉] 매근가(每斤價) 1전.

대포(大脯) 매침가(每貼價) 5전.

고등어[高同魚] 매미가(每尾價) 7푼.

웅어[葦魚] 매미가(每尾價) 4푼.

전어(箭魚) 매미가(每尾價) 3푼.

생치(生雉) 매수가(每首價) 3전 2푼, 4각(脚)으로 만든다.

묵은닭[陳鷄] 매수가(每首價) 3전 5푼, 생계(生鷄). 매수가(每首價) 3전, 산닭[活鷄]. 매수가(每首價) 2전 등은 4각(脚)으로 만든다.

연계(軟鷄) 매수가(每首價) 1전 5푼.

계란(鷄卵) 매개가(每箇價) 1푼.

하란(蝦卵) 매개가(每箇價) 1냥.

중포(中脯) 매침가(每貼價) 3전.

소포(小脯) 매침가(每貼價) 2전 5푼.

염포(鹽脯) 매침가(每貼價) 2전.

통촉(桶燭) 매병가(每柄價) 3푼.  
 행촉(行燭) 매병가(每柄價) 2푼.  
 준시(蹲柿)<sup>104</sup> 매첩가(每貼價) 8전.  
 오미자(五味子) · 표고(蓼古) 매승가(每升價) 2전.  
 소편포(小片脯) 매조(每條) 쇠고기[肉] 2근(斤)으로 만든다.  
 소좌촉(小坐燭) 매병(每柄) 통촉(桶燭) 2병(柄)으로 만든다.  
 어란(魚卵) 매부가(每部價) 4전.  
 명란(明卵) 매승가(每升價) 4전.  
 연란(鰾卵)<sup>105</sup> · 조기알[石卵] 매승가(每升價) 3전.  
 굴젓[屈鹽] 매승가(每升價) 2전 2푼.  
 홍합젓[紅蛤鹽] 매승가(每升價) 2전.  
 곤쟁이젓[甘同鹽] 매승가(每升價) 2전.  
 세하(細蝦) 매승가(每升價) 1전.  
 우두(牛頭) 매부(每部) 쇠고기[肉] 6근(斤)으로 만들며, 우근(牛筋) 매등가(每等價) 5  
 푼, 우각(牛角) 매통가(每桶價) 3푼, 우총(牛總) 매미가(每尾價) 1푼, 갈비뼈[加乙非  
 骨] 매(每) 3개가(介價) 1푼 등은 경진년에 교구(矯球).  
 갈비[加乙非] 매척(每隻) 쇠고기[肉] 6근(斤)으로 만든다.

### 예하(例下)

수미(需米) 19석(石) 3두(斗). 매삭(每朔) 1석(石) 9두(斗) 6삭(朔) 점심료(點心料) 미(米)  
 2석(石) 6두(斗) 매삭(每朔) 6두(斗).

미역[藷] 144속(束) 매삭(每朔) 12속(束), 6삭(朔) 점심료(點心料) 36속(束) 매삭(每朔) 6속  
 (束), 명태(明太) 144속(束) 매삭(每朔) 12속(束), 6삭(朔) 점심료(點心料) 36속(束) 매삭  
 (每朔) 6속, 참기름[眞油] 3두(斗) 6승(升) 매삭(每朔) 3승(升), 어유(魚油) 3두(斗) 6도  
 (刀) 매삭(每朔) 3승(升), 마죽(馬粥) 19석(石) 3두(斗) 매삭(每朔) 1석(石) 9두(斗), 마태(馬  
 太) 9석(石) 9두(斗) 매삭(每朔) 12두(斗) 등은 향청(鄉廳)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점심  
 (點心).

수미(需米) 9석(石) 9두(斗) 매삭(每朔) 12두(斗) 6삭(朔) 점심료(點心料) 1석(石) 3두  
 (斗) 매삭(每朔) 3두(斗), 마죽(馬粥) 9석(石) 9두(斗) 매삭(每朔) 12두(斗), 마태(馬太) 4석  
 (石) 12두(斗) 매삭(每朔) 6두(斗), 어유(魚油) 1두(斗) 8승(升) 매삭(每朔) 1승(升) 5홉[合]  
 등은 군관청(軍官廳).

수미(需米) 4석(石) 12두(斗) 매삭(每朔) 6두(斗) 6삭(朔) 점심료(點心料) 9두(斗) 매삭  
 (每朔) 1두(斗) 5승(升), 어유(魚油) 1두(斗) 8승(升) 매삭(每朔) 1승(升) 5홉[合], 군기  
 감관(軍器監官).

어유(魚油) 9두(斗). 매삭(每朔) 각(各) 1승(升) 5홉[合], 호장(戶長) · 이방(吏房) · 형방

104) 준시(蹲柿) : 껍질을 깎아 납작하게 눌러 말린 감.

105) 연란(鰾卵) : 원문(原文)의 '연란(鰾卵)'을 '연란(鰾卵)'으로 바꾼다.

(刑房) · 의생(醫生) · 공수(公須).

수미(需米) 4석(石). 매삭(每朔) 5두(斗), 도장(都匠).

수미(需米) 4석(石) 12두(斗) 매삭(每朔) 6두(斗).

감장(甘醬) 7두(斗) 2승(升) 매삭(每朔) 6승(升) 전(錢) 24냥 매삭(每朔) 2냥.

가자미[加魚] 72속(束). 매삭(每朔) 6속(束).

수미(需米) 2석(石) 6두(斗) 매삭(每朔) 3두(斗) 도칠장(都漆匠).

수미(需米) 2석(石) 6두(斗) 매삭(每朔) 3두(斗), 호초대(胡椒代), 소금[鹽] 1석(石)

봄가을로 나누어 차하[上下] 생어(生魚) 염차(鹽次) 등은 관창 고지기[庫子].

녹두(菘豆) 1석(石) 3두(斗) 매삭(每朔) 1두(斗) 5승(升), 태(太) 2석(石) 6두(斗) 매

삭(每朔) 3두(斗) 등은 아채차(芽菜次)<sup>106</sup>, 소금[鹽] 2석(石) 6두(斗) 매삭(每朔) 3두

(斗) 황채차(況菜次), 모(牟) 6석, 조(租) 8석(石) 하등(夏等) 동등(冬等) 차하[上下]

채소대(菜蔬代) 등은 원도한(園徒漢).

참기름[眞油] 1두(斗) 8승(升) 매삭(每朔) 1두(斗) 5홉[습], 간장(良醬) 6두(斗) 매삭

(每朔) 5승(升) 등은 자반[佐飯] 소입(所入).

밀가루[眞末] 7두(斗) 2승(升) 매삭(每朔) 각(各) 3승(升) 호말차(糊末次) 동헌(東軒) ·

진영(鎭營).

수미(需米) 2석(石) 6두(斗) 매삭(每朔) 3두, 누룩[曲子] 18동(同) 8원(元) 매삭(每

朔) 9원(元) 등은 초대(醋代), 황육(黃肉) 36근(斤) 매삭(每朔) 3근(斤) 자장차(煮醬

次), 모(牟) 1석(石) 하등(夏等) 지금. 맥아차(麥芽次) 등은 장비(醬婢).

미(米) 1두(斗), 소두(小豆) 5승(升), 참기름[眞油] 1홉[습], 명태(明太) 1속(束), 쇠고

기[肉] 1근(斤), 대추[大棗] 5홉[습], 생률(生栗) 5홉[습], 피백자(皮栢子) 5홉[습],

주가(酒價) 2푼 등은 매삭(每朔) 망당(望堂) 고사(告祀) 아무녀(衙巫女) · 세담비(洗踏婢).

모(牟) 7석(石) 하등(夏等), 조(租) 7석(石) 동등(冬等) 등은 제청(祭廳) 숙설(熟設)<sup>107</sup>

노비등(奴婢等).

메주[燻造] 6석(石) 12두(斗).

소금[鹽] 3석(石) 6두(斗).

순사도(巡使道) 도영상(到營床) 및 진지(進支) · 야물(夜物) 모두 3일 동안 거행(舉

行)하였으나, 근년에는 당일만 거행하고, 비장청(婢將廳)은 야물(夜物)이 없다.

진영(鎭營) · 중영(中營) · 심약(審藥) · 검률(檢律)의 도임상(到任床) 및 진지(進支)

모두 당일(當日)만 거행하고 야물(夜物)은 없다.

### 지소(紙所)

원지(原紙) 본전(本錢) 4,305냥 305냥<sup>108</sup>. 기사년 부사 이적진(李商進)이 임기 중의

별비(別備)에서, 이교청(吏校廳)이 동화사(桐華寺)에 분표(分俵)한 돈 2,161냥 4전

106) 아채(芽菜) : 싹 틔운 나물, 숙주나물 · 콩나물 등.

107) 숙설(熟設) : 잔치나 제사(祭祀) 등 큰일 때에 음식을 만들.

108) 305냥 : 별도의 내역(內譯)이 기재(記載)되지 않았음.

2푼을 4할의 이자로 불려 4읍영주인가(邑營主人價) 의령(宜寧) · 영양(英陽) · 경산(慶山) · 안동(安東) 1,270냥을 이청(吏廳)에 내부(來付)하고, 용천사조(湧泉寺條) 873냥 5전 8푼을 함께 3할의 이자로 불려 같은 이자돈 및 지복호가(紙復戶價)를 합한 2,059냥 6전 5푼을 내외(內外) 지소(支所)에 배분(排分)하여 부비(浮費)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경진년 부사 정시용(鄭始容)이 임기 중에 승도(僧徒)들의 조잔(凋殘)한 이자돈의 반박(班駁)을 염려하여 1,000여냥을 출연(出捐)하여 지역(紙役)을 교구(矯揉)할 것에 첨보(添補)하고 이자가 편중된 것을 1냥 줄이고, 사찰(寺刹)에 분표(分俵)하였던 돈은 영구히 환수(還收)하여 별비전(別備錢)과 함께 4읍영주인(邑營主人)을 지례(知禮) · 군위(軍威) · 산청(山淸) · 영덕(盈德) 새로 사고, 그 중 200냥을 별도로 군관청(軍官廳)에 주어 4할의 이자로 불리고, 50냥은 각사(各寺)에 당납(當納)하고, 색지염가(色紙染價)로 30냥을 방급(防給)하고, 지소(紙所) 고지기[庫子] · 도책장(都冊匠) 등의 요뢰(聊賴)를 마련(磨鍊)하여 경진년으로 시작하여 갑신년까지 돈을 불리는 방법으로 구폐(掄弊)한 것은 절목(節目)에 밝게 드러나 있다.

합지본가(合紙本價) 5,622냥 7전 7푼. 400냥을 군관청(軍官廳)에서의 십삼리(什三利)로 취식(取殖)한 120냥은 내지소(內紙所)에 추봉(秋捧).

2,252냥 7전 7푼 인리청(人吏廳)에서 3할의 이자로 불린 675냥 8전 3푼은 외지소(外紙所)에 추봉(秋捧).

2,970냥 8읍영주인가(邑營主人價)에서 3할의 이자로 불린 891냥 내에서, 481냥 · 410냥으로 지복호(紙復戶) 69결가(結價) 552냥을 내지소(內紙所)에 추봉(秋捧) 63결(結) 가봉(加捧) 1냥으로 대복결역(垚卜結役)의 부족분을 기사년부터 시작하여 첨보(添補).

합전(合錢) 2,238냥 8전 3푼.

### 외지소(外紙所)

원전(原錢) 1,016냥 1전 3푼. 147냥 순영납(巡營納), 재상지(災傷紙) 49속가(束價). 404냥 5전 7푼 4리 부지고가(浮紙雇價) 및 용입잡비(容入雜費).

재전(在錢) 464냥 5전 5푼 6리 내에서, 351냥 9전은 백저(白楮) 1,759근(斤) 8냥 가 매근가(每斤價) 2전. 42냥 2전 2푼 8리는 재[灰] 105석(石) 8두(斗) 5승(升) 5홉가[合價] 매석가(每石價) 4전. 42냥 2전 2푼 8리는 화목(花木) 211근(斤) 2냥 2전 4푼가[分價] 매근가(每斤價) 2전. 28냥 2전은 시목(柴木) 141부가(負價), 매부가(每負價) 2전.

매부(每釜) 소입(所入) 백저(白楮) 25근가(斤價) 5냥.

재[灰] 1석(石) 7두(斗) 5승가(升價) 6전.

화근(花根) 3근가(斤價) 6전.

시목(柴木) 2부가(負價) 4전.

합가전(合價錢) 6냥 6전. 숙저(熟楮) 12근(斤) 8냥을 만들. 매근가(每斤價) 5전 2푼 8리, 매냥가(每兩價) 3푼 3리.

숙저(熟楮) 879근(斤) 12냥(兩), 원백저(原白楮) 절반(折半)은 작미(作米).



97근 8냥 진상(進上) 및 유둔지(油菴紙)의 중제(重除)를 구청(求請).

실재(實在) 782근 4냥 매삭(每朔) 65근(斤) 3냥[兩]씩 춘추(春秋)로 양등(兩等)하여 각양(各樣) 지물(紙物)을 부납(浮納)하고, 매년 요미(料米) 64석(石)씩 관청에서 차하[上下]하여 종이 뜨는[浮紙] 승료(僧料)로 삼았는데, 을미년 판서대감(判書大監) 조병현(趙秉鉉)이 임기 중에 민폐(民弊)를 염려하여 각사(各寺)의 부지(浮紙) 일관(一款)을 영구히 혁파(革罷)하고 해색(該色)에게 무용(貿用)시킨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였다.

원전(原錢) 1,016냥 1전 3푼 내에서, 220냥 8전 3푼은 각양(各樣) 차하[上下], 45냥 6전 4푼은 진상(進上)하는 유둔지(油菴紙) 45장대(張代), 12냥 3전 5푼은 어람책지(御覽冊紙) 3속(束) 5장대(張代), 15냥 8전 4푼은 동지(冬至) 구청대(求請代), 147냥은 재상지(災傷紙) 49속대(束代), 193냥 7전은 정비(情費)의 차하[上下] 100냥은 해색(該色) 지필묵가(紙筆墨價), 23냥은 책장(冊匠), 35냥 7전은 무지태가(貿紙駄價), 35냥은 절선장(節扇匠).

년지(年紙) 96속(束) 매속가(每束價) 2냥 6전, 입모지(笠帽紙) 6속(束) 매속가(每束價) 8냥, 유삼지(油衫紙) 1속(束) 매장가(每張價) 5전, 여소첩지(女梳貼紙) 1속(束) 매장가(每張價) 2냥 6전, 유둔지(油菴紙) 매장가(每張價) 2냥 3전, 선자지(扇子紙) 50속(束) 매속가(每束價) 3냥 등의 합(合) 601냥 6전.

### 내지소(內紙所)

원전(原錢) 1,222냥 7전 1,077냥 7전 추봉(秋捧), 145냥 춘봉(春捧). 64냥은 진상(進上) 및 지지가(紙地價)의 구청(求請), 14냥은 순영납(巡營納)의 성균관(成均館) 책지가(冊紙價), 22냥 8전은 무지태가(貿紙駄價).

재전(在錢) 1,120냥 9전 배삭(排朔) 내에서,

장지(壯紙) 12속(束). 매삭(每朔) 1속 매속가(每束價) 2냥.

무후지(貿厚紙) 96속(束). 매삭(每朔) 8속(束) 매속가(每束價) 1냥.

공사지(公事紙) 301속(束) 15장(張). 매삭(每朔) 25속(束) 2장(束) 2절(折) 1 나머지 5장 매속가(每束價) 6전.

책지(冊紙) 210속. 매삭(每朔) 17속(束) 10장(張) 매속가(每束價) 3전.

소피지(小皮紙) 130속(束). 매삭(每朔) 5속(束) 8장(張) 나머지 4장 매속가(每束價) 4전.

합지가(合紙價) 전(錢) 409냥 5전 5푼.

전(錢) 711냥 3전 5푼. 매삭(每朔) 59냥 2전 7푼 나머지 1전 1푼 송백지(松白紙) · 들깨[水荏] 등 사서 씌.

색지염가(色紙染價) 전(錢) 50냥은 군관청(軍官廳)에서 연례(年例)로 받아옴. 경진년 교배(矯排) 나머지 돈의 이자.

절선소용(節扇所用) 아청(鴉靑) · 초록(草綠) · 금향(錦香) · 갈마(葛麻) · 운암지(雲

암지(暗紙) 매속염가(每束染價) 3냥, 회색지(灰色紙) 매속 염가(每束染價) 2냥씩을 절선소(節扇所)로 이송(移送)하여 하기(下記)하고, 만든 부채는 해마다 본고(本庫)에 가입(加入)하며 전중(錢中)에서 배삭(排朔)한다.

### 상정질(常定秩)

들깨[水荏] 매석(每石) 기름 1두(斗) 9승(升) 5홉[合], 기름 매승가(每升價) 2전 5푼 7리.

장유지(壯油紙) 매속가(每束價) 착유(着油) 8홉[合] 2냥 2전 6리.

무유지(翼油紙) 매속가(每束價) 착유(着油) 6홉[合] 1냥 1전 5푼 4리.

공유지(公油紙) 매속가(每束價) 착유(着油) 5홉[合] 7전 2푼 8리.

단유지(丹油紙) 매속가(每束價) 착유(着油) 4홉[合] 4전 2리.

년유지(年油紙) 매속가(每束價) 착유(着油) 8홉[合] 2냥 8전 6리.

송유지(松油紙) 매속가(每束價) 착유(着油) 4홉[合] 2전 8푼 4리.

유삼지(油衫紙) 매령가(每令價) 3냥 9푼 1리.

입모지(笠帽紙) 매사가(每事價) 4전 8푼 6리.

유둔(油菴) 매장가(每張價) 2냥 4전 8푼.

여소첩(女梳貼) 매사가(每事價) 2냥 8전 6리.

여함소(女函梳) 매사가(每事價) 3냥 8전 2푼 6리.

파공유지(破公油紙) 매속가(每束價) 3전 6푼 4리.

파송유지(破松油紙) 매속가(每束價) 1전 4푼 1리.

### 절가질(折價秩)

들깨[水荏] 매석가(每石價) 5냥.

두여지(斗呂紙) 매속가(每束價) 2전 2푼.

송림지(松林紙) 매속가(每束價) 1전 8푼.

백지(白紙) 매속가(每束價) 1전 2푼.

홍선지(紅扇紙) 매속(每束) 염가(染價) 3냥.

청선지(靑扇紙) 매속(每束) 염가(每束)染價) 1냥 5전.

황선지(黃扇紙) · 옥선지(玉扇紙) 매속(每束) 염가(染價) 5전.

책지(冊紙) 매속(每束) 인출가(印出價) 3푼 간지(簡紙) 매속(每束) 도침료(搗砧料) 미(米) 3승(升)씩.

책(冊) 매권(每卷) 장황가(粧黃價) 1전.

### 예하(例下)

공사지(公事紙) 6속(束) 매삭(每朔) 10장(張), 백지(白紙) 36속(束) 매삭 3속(束) 등은 향교(鄉校).

백지(白紙) 72속(束). 매삭(每朔) 6속(束) 향청(鄉廳).

백지(白紙) 18속(束). 매삭(每朔) 1속(束) 10장(張) 호장(戶長).  
 백지(白紙) 12속(束). 매삭(每朔) 1속(束) 호방(戶房).  
 공사지(公事紙) 1속(束) 4장(張) 매삭(每朔) 2장(張), 송림지(松林紙) 1속(束) 16장(張) 매삭(每朔) 3장(張), 백지(白紙) 6속(束) 12장(張) 매삭(每朔) 11장(張) 등은 형호방(刑戶房) 삭말(朔末).  
 백지(白紙) 12속(束). 매삭(每朔) 1속(束) 예방(禮房).  
 공사지(公事紙) 3속(束) 12장(張) 매삭(每朔) 6장(張), 송림지(松林紙) 12장(張) 매삭(每朔) 1장(張), 백지(白紙) 4속(束) 4장(張) 매삭(每朔) 7장(張) 등은 예방(禮房) 삭말(朔末).  
 백지(白紙) 36속(束). 매삭(每朔) 3속(束) 승발(承發).  
 백지(白紙) 7속(束) 4장. 매삭(每朔) 12장(張) 승발(承發) 삭말(朔末).  
 공사지(公事紙) 1속(束) 16장(張) 매삭(每朔) 3장, 송림지(松林紙) 1속(束) 16장(張) 매삭(每朔) 3장(張) 등은 군기색(軍器色) 삭말(朔末).  
 공사지(公事紙) 1속 4장(張) 매삭(每朔) 3장, 송림지(松林紙) 8장(長) 매삭(每朔) 1장(張) 어영색(御營色) 삭말(朔末) 8삭(朔).  
 공사지(公事紙) 16장(張). 매삭(每朔) 2장(張) 병방(兵房) 삭말(朔末).  
 공사지(公事紙) 1속(束) 12장(場) 매삭(每朔) 4장(張), 송림지(松林紙) 8장(張) 매삭(每朔) 1장(張) 등은 금위색(禁衛色) 삭말(朔末).  
 공사지(公事紙) 1속(束) 4장(張) 매삭(每朔) 2장(張), 송림지(松林紙) 1속(束) 4장(張) 매삭(每朔) 2장(張) 등은 속오색(束伍色) 삭말(朔末).  
 송유지(松油紙) 12장. 매삭(每朔) 1장(張) 진영(鎭營).  
 백지(白紙) 6속(束). 매삭망(每朔望) 각(各) 5장(張) 당고사(堂告祀) 아무녀(衙巫女) 세답비(洗踏婢).  
 백지(白紙) 43속(束). 년분도목차(年分都目次) 도서원(都書員).  
 전(錢) 69냥 9전 8푼. 년분지(年分紙) 46속(束) 13장가(張價) 10월삭(月朔) 순영납(巡營納) 16냥은 갑술년을 시작으로 가정(加定), 합 85냥 9전 8푼.  
 공사지(公事紙) 4속(束) 7장(張) 3속(束) 7장(張) 도배지(塗褙紙), 백지(白紙) 18속(束) 8장(張) 13속(束) 8장(張) 도배지(塗褙紙) 등은 향교(鄕校) 향례시(享禮時), 봄가을 같음.  
 공사지(公事紙) 15장(張), 백지(白紙) 3속(束) 등은 매서원(每書院) 향례(饗禮)할 때 봄가을. 사액(賜額) 3원(院), 미사액(未賜額) 7원(院).

### 의생(醫生)

약국(藥局) 본가(本價) 원전변(原錢邊) 중 500냥을 의생(醫生)에게 이부(移付)하고 무약(貿藥) · 설국(設局)하여 이편(利便)토록 하였으나, 기사년에 전변(錢邊)의 예(例)에 따라 마땅히 일체가 견감(蠲減)되었는데, 이것은 민부(民夫)의 염산(斂散)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곧장 십삼리(什三利)로 시행(施行)하여 관용(官用)하고 약재(藥材)는 절가(折價)에 따라 하기(下記)한 후 여전(餘錢)은 환납(還納)하였다.

## 진상(進上)

2월령(月令). 인삼(人蔘) 5전, 산약(山藥) 2냥, 적작약(赤芍藥) 3전 8푼, 천남성(天南星) 4냥, 백작약(白芍藥) 7전 5푼, 백출(白朮) 5근 8냥.

6월령(月令). 포황(蒲黃) 2냥.

10월령(月令). 인삼(人蔘) 4전 9푼 가(加) 2푼 봉화(奉化)에서 수래(受來), 구기자(枸杞子) 5냥, 적작약(赤芍藥) 1냥 5전, 천남성(天南星) 2냥, 백작약(白芍藥) 7전 5푼, 백출(白朮) 7근 6냥, 감국(甘菊) 1냥 4전, 생모과[生木果] 33개(箇), 시호(柴胡) 4냥 5전, 속수자(續隨子) 10냥, 과루인(瓜蒌仁) 6전 3푼, 백모향(白茅香) 12냥.

2월령 인삼(人蔘) 5전 내에서 8푼은 봉진(封進)하고, 나머지는 10월령 인삼(人蔘) 5전 1푼 내에서 8푼을 봉진하고 남은 것과 합한 1냥 1푼 쯤[重]의 가진(價錢) 400냥을 방역(防役)으로 전변(錢邊) 중에서 삼상(蔘商)에게 출급(出給)하여 봉진(封進)토록 하고, 가봉(加捧) 2푼가[分價] 및 양령(兩令)의 정비(情費)는 전(錢) 7냥 2전, 시복호(柴卜戶) 3부(夫)는 관청에서 획급(劃給)하고, 3등(等) 약재가(藥材價) 미(米) 10석(石) 4두(斗) 7승(升) 영(零)을 회감(會減)하여 차하[上下]하였다.

창출(蒼朮) 2근(斤), 백출(白朮) 2근(斤) 등은 봄가을로 나누어 병영(兵營)에 납봉(納捧).

창출(蒼朮) · 백출(白朮)은 서북촌면(西北村面)에서 년례(年例)로 채납(採納)하였는데, 정해년에 잣의 적채(摘採)를 혁파(革罷)한 후에 또 서부동촌(西部東村)에 3년에 한 차례만 당납(當納)토록 하여 서북촌(西北村) 민인(民人)의 책임을 벗어나게 하려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하였다.

채약(採藥) 50명(名). 매명(每名) 2냥씩 춘추(春秋)로 분봉(分捧), 절반(折半)은 영문도약직(營門都藥直)이 차지(次知)하고, 절반(折半)은 광점장무약직(廣店掌務藥直)이 차지(次知)하여 진상(進上) 및 영문(營門) 소용(所用)의 향초재(鄉草材)를 모두 당납(當納)하였다.

## 절가질(折價秩)

종시가질(從時價秩) 인삼(人蔘), 녹용(鹿茸).

매푼가[每分價] 7전질(錢秩) 당사향(唐麝香) 향약(鄉藥) 3전, 호동루(胡桐淚).

매전가(每錢價) 3푼질[分秩] 감수(甘遂), 완화(莞花), 용치(龍齒), 용골(龍骨), 담반(膽礬).

매전가(每錢價) 1푼[分] 5리질(里秩) 굴병(橘餅), 청피(靑皮), 필발(萆發), 울금(鬱金), 숙지황(熟地黃).

매전가(每錢價) 5리질(里秩) 형개(荊芥), 세신(細辛), 신곡(神曲), 오갑(鰲甲), 천초(川椒), 우황(牛黃).

매푼가[每分價] 3전(錢) 5푼질[分秩] 용뇌(龍腦).

매푼[每分] 2전질(錢秩) 응담(熊膽).

매전가(每錢價) 1냥(兩) 5전질(錢秩) 호박(琥珀), 진주(眞珠).

매전가(每錢價) 5전질(錢秩) 육두구(肉荳蔻), 쇠량(鎖良), 백복령(白茯苓) 신(神) 1푼 5리, 적(赤) 1푼 초두구(草豆蔻), 감송향(甘松香), 관동화(款冬花), 유기생(柳奇生).

매전가(每錢價) 2푼[分] 5리질(里秩) 감초(甘草), 빈랑(檳榔), 전환(電丸), 백해(白薺), 건강(乾薑), 진피(陳皮), 산약(山藥), 택안(澤鴈), 비자(檉子), 연육(蓮肉), 도인(桃仁), 삼릉(三稜), 자인(茨仁).

매전가(每錢價) 1푼질[分秩] 모과[木果], 활석(滑石), 해분(海粉), 천마(天麻), 석고(石膏), 현삼(玄蔘), 백렴(白斂), 백합(白合), 행인(杏仁).

매전가(每錢價) 3전질(錢秩) 백두구(白荳蔻) 피(皮) 1전 5푼, 지향(池香).

매전가(每錢價) 2전 5푼질[分秩] 수수꽃다리[丁香], 중주(中朱) 사주(砂朱) 2전 1푼.

매전가(每錢價) 2전질(錢秩) 포부자(砲附子), 사군자육(使君子肉), 서각(犀角), 파고지(破古紙) 일명(一名) 보골지(補骨脂), 밀타승(蜜他僧), 백개자(白芥子), 백강잠(白僵蚕), 영릉향(英陵香), 자석영(紫石英), 백자인(柏子仁), 모란피[牡丹皮].

매전가(每錢價) 2푼질[分秩] 양강(良薑), 포황(蒲黃), 마황(麻黃), 홍화(紅花), 백급(白芨), 원지(遠志), 속단(續斷), 망초(芒硝), 소목(蘇木), 고본(藁本), 귀판(龜板), 백망(白芒), 백작약(白芍藥) 적작약(赤芍藥) 같음, 천남성(天南星), 청목향(青木香), 향부자(香附子), 오미자(五味子), 백미(白薇), 토사자(免絲子), 오군자(五君子), 소뇌(小腦).

매전가(每錢價) 1전 8푼질[分秩] 영양각(羚羊角).

매전가(每錢價) 1전 5푼질[分秩] 당목향(唐木香), 왜황련(倭黃蓮) 당(唐) 8푼, 호(胡) 3푼, 향(鄉) 1푼, 자초용(紫草茸), 경분(輕粉)<sup>109</sup>, 삼록(三礫).

매전가(每錢價) 6푼질[分秩]

필발(萐發), 두충(杜冲), 지각(枳角), 오매(烏梅), 파두(芭荳), 저령(豬苓), 방이(防已), 자완(紫莞), 강황(羌黃), 단삼(丹蔘), 산수유(山茱萸), 구기자(枸杞子), 오매육(烏梅肉), 현호삭(玄胡索), 아교주동(阿膠珠同).

매전가(每錢價) 5리질(里秩) 당귀(當歸), 천궁(川芎), 반하(半夏) 반하곡(半夏曲) 같음, 후박(厚朴), 만형자(蔓荊子), 의이인(薏苡仁), 옥리인(旭李仁), 고련근(桔鍊根), 해동피(海桐皮), 초결명(草決明), 석창포(石菖蒲), 석결명(石決明).

무가질(無價秩) 창출(蒼朮), 계심(桂心) 관계(官桂)<sup>110</sup> 8푼, 계피(桂皮) 4푼 5리.

매전가(每錢價) 7푼질[分秩] 녹각교(鹿角膠) 흰가루[霜] 4푼, 시상(柿霜).

매전가(每錢價) 6푼질[分秩] 육종용(肉蓯蓉) 인갑(鱗甲)을 벗긴 것 2전 4푼, 초과인(草菓仁), 상기생(桑寄生), 전갈(全蝎).

매전가(每錢價) 5푼[分] 5리질(里秩) 무이(蕪荑), 봉출(蓬朮), 대회향(大茴香) 소회(小茴) 5리, 산조인(山棗仁), 당작설(唐雀舌), 정향피(丁香皮), 대복피(大腹皮), 오령지(五靈脂), 적석지(赤石脂), 청몽석(靑礫石), 황기[黃芪], 강활(羌活), 독활(獨活), 전호(前胡), 황금(黃芩), 지실(枳實), 방풍(防風), 대황(大黃), 사삼(沙蔘), 지모(知母), 백

109) 경분(輕粉) : 염화 제1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

110) 관계(官桂) : 품질이 가장 좋은 육계(肉桂).

출(白朮), 백편두(白扁豆), 하수오(何首烏), 흑축(黑丑), 향유(香薷), 소엽(蘇葉), 산사육(山查肉), 승마(升麻), 갈근(葛根), 나복자(蘿菔子), 석곡(石斛).

매전가(每錢價) 5푼질[分秩] 사인(砂仁), 유향(乳香), 용안육(龍眼肉), 석확황(石確黃), 송기생(松寄生).

매전가(每錢價) 4푼[分] 5리질(里秩) 광향(藿香), 사탕(砂糖), 한석수(寒石水), 노감석(蘆甘石), 밀몽석(蜜礫石), 중려화(棕栲花), 팔각향(八角香), 해금사(海金砂), 호로과(胡蘆把), 천산갑(穿山甲), 해아칠(海兒漆), 목별자(木鱉子), 길경(吉萇), 연교(連翹), 차전자(車前子), 복분자(覆盆子), 흑고약(黑膏藥) 매장가(每張價) 3푼, 자금정(紫金丁) 매정가(每丁價) 3푼, 진애(陳艾) 매급가(每級價) 4푼, 금박(金箔) 매장가(每張價) 7푼, 황칠(黃漆柒) 매봉가(每封價) 1전 3푼, 우포환(牛胞丸) · 소청환(小淸丸) · 천을환(天乙丸) 매개가(每箇價) 2전.

매전(每錢) 4푼질[分秩] 패모(貝母), 몰약(沒藥), 노회(蘆薈), 천련자(川鍊子), 양기석(陽起石), 백단향(白丹香), 익지인실(益智仁實) 피(皮) 2푼, 가자인(訶子仁) 피(皮) 2푼, 혈갈(血竭), 삼내자(三乃子), 소합유(蘇合油), 천축황(天竺黃), 조구등(釣鉤藤), 백부근(白付根) 백부자(白付子) 5리, 귤홍(橘紅), 감국(甘菊), 매미허물[蟬退], 삼엽(蓼葉), 청대(靑黛), 소합환(蘇合丸) · 담포환(膽胞丸) 매개가(每箇價) 1전 5푼, 우황고(牛黃膏) 매개가(每箇價) 2전 5푼. 청심환(淸心丸) 매개가(每箇價) 4전 5푼, 불수산(佛手散) 매첩가(每貼價) 5푼, 형패산(荊貝散), 청자육화탕(淸者六和湯) · 당귀수산(當歸鬚散) 매첩가(每貼價) 1전 1푼. 향사평위산(香砂平胃散) · 여곽탕(茹藿湯) 매첩가(每貼價) 1전 3푼.

매전가(每錢價) 3푼[分] 5리질(里秩) 오수유(烏茺萸), 과극(巴戟), 황단(黃丹),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귤핵(橘核), 광정산(藿正散) 매첩가(每貼價) 1전 2푼, 안태음(安胎飲),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매첩가(每貼價) 9푼.

### 절선소(節扇所)

절선(節扇) 본가(本價) 원래 출처(出處)가 없었으므로 경진년에 가정(加定)하여 따로 150명(名)에게 수포(收布)하여 봄가을로 번전(番錢)하여 300냥을 본소(本所)에 급부(給付)하고 죽염(竹染) 등물(等物)을 미리 무역(貿易)하였는데, 병신년 안전 조석현(曹錫玄)이 임기 중에 수포(收布)의 원수(元數)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장청(將廳)의 등소(等訴)를 따라 150명을 모두 감급(減給)한 후 본가(本價)를 관청에서 무용(貿用)하였다.

### 죽가(竹價)

30시(矢) 매병가(每柄價) 2전 4푼, 변죽염가(邊竹染價).

27시(矢) 매병가(每柄價) 2전 1푼.

25시(矢) 매병가(每柄價) 1전 9푼.

23시(矢) 매병가(每柄價) 1전 6푼.

22시(矢) 매병가(每柄價) 1전 4푼.

20시(矢) 매병가(每柄價) 1전.

18시(矢) 매병가(每柄價) 6푼.

16시(矢) 매병가(每柄價) 4푼.

12시(矢) 매병가(每柄價) 3푼.

과변피(裏邊皮) 매병가(每柄價) 1푼.

합시갑배(合矢甲陪)

오변(烏邊) · 소상변(瀟湘邊) · 울금변(鬱金邊) · 병문변(屏文邊)은 매병(每柄) 3푼.

단절(短節) · 목변(木邊) · 금향변(錦香邊) · 반오변(半烏邊) · 포도변(葡萄邊) · 낙변(烙邊)은 매병(每柄) 2푼.

### 사옥가(沙玉價)

추변(楸邊) 매병(每柄) 1푼.

두석(豆錫) 매냥(每兩) 환사옥(環沙玉) 7개(箇) 매개(每箇) 1푼. 평사옥(平沙玉) 25개(箇) 매개(每箇) 3리.

경수승두선사옥(鯨鬚僧頭扇沙玉) 매개(每箇) 2푼. 소선사옥(素扇沙玉) 매개(每箇) 1푼. 염가(染價) 1리가(里價) 1푼 3리.

30시(矢) 매병(每柄) 5푼 2리.

27시(矢) 매병(每柄) 4푼 3리.

25시(矢) 매병(每柄) 4푼 1리.

23시(矢) 매병(每柄) 3푼 2리.

22시(矢) · 층당(層唐) · 호도선(胡桃扇)은 매병(每柄) 3푼 3리.

풍월선(風月扇) 매병(每柄) 1푼 7리.

칠선(漆扇) 매병(每柄) 6푼 5리.

### 식례(式例)

변죽부골가(邊竹付骨價) 매(每) 3병(柄) 1푼.

삼대부경수가(三臺付鯨鬚價) 매병(每柄) 4푼 사삼대(絲三臺) 1푼.

도배지(塗褙紙) 30살[矢]부터 22살[矢]까지, 20살[矢]부터 12살[矢]까지, 아선(兒扇) 선지(扇紙) 매장(每張) 1병(柄),<sup>111)</sup> 매장(每張) 2병(柄), 매장(每張) 3병(柄).

가의지(家衣紙) 외후지(外厚紙) 매장(每張) 15병(柄)<sup>112)</sup>, 무후지(質厚紙) 매장(每張) 12(柄).

교말(膠末) 매(每) 100병(柄) 1되[升].

어교(魚膠) 매(每) 100병(柄) 4냥.

시탄가(柴炭價) 매(每) 100병(柄) 6전.

111) 매장(每張) 1병(柄) : 원문은 ‘매장(每張) 2병(柄)’으로 기재되었으나 다음 항과 중복되었으므로 종류별로 인식하여 ‘매장(每張) 1병(柄)’으로 바꾸어 본다.

112) 15병(柄) : 원문에는 양수사(量數詞) ‘병(柄)’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문맥상(文脈上) ‘병(柄)’으로 보완(補完)한다. 다음 항 ‘12’도 이와 같다.

장수료(匠手料)

매명(每名) 매일(每日) 중미(中米) 2승(升), 명태(明太) 1마리[尾], 미역[藷] 1일  
[立], 간장(良醬) 2홉[合], 조(租) 2승(升) 5홉[合] 공역가(功役價).  
2월부터 8월까지 점심료(點心料) 쌀[米] 매명(每名) 5홉[合] 가부(加付).